



고등군사법원
육·해·공군 군사법원

2019

군사법원 연감

[2019. 1. ~ 2019. 12.]



머리말

2017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발간하는 군사법원 연감은 지난 1년간의 군사법원 운영 현황과 통계자료를 정리·수록하여 군사법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연감은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의 인원현황, 군사법 행정의 운영 현황, 각종 통계자료 및 군사법원 주요 판례 등을 수록한 군사법원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지난해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판결서 공개 정보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8년도에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순정 군형사범인 ‘상관명예훼손 등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이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19년 6월에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군 형법상 성범죄’가 포함되어, 올해 3월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군 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의결되어 전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및 장병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이번 연감을 통해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사회 현실 및 군사법제도 개혁 추진과 병행하여 장병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사법원의 운영은 지금 우리 군사법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며,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하여는 재판 절차의 투명성, 재판 결과의 공정성, 모든 군사법원 소속원들의 직무상의



13대 고등군사법원장
준장 박종형
(2020. 1. 3. ~ 현재)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사법원 구성원들 모두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장병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군 사법의 정의 및 군기질서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군사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법원 연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연감이 군사법원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군의 모든 장병 및 국민을 위한 군사법 제도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군사법원 연감은 책자 이외에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한글파일, PDF파일) 형태로 게시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이 군사법원 연감을 보다 쉽게 접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연감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이하 각 군사법원장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자료수집, 발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준장 박종형

목 차

■ 군사법원 청사 전경	3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
○ 육군 군사법원	4
○ 해군 군사법원	5
○ 공군 군사법원	7
■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11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1
○ 육군 군사법원	12
○ 해군 군사법원	13
○ 공군 군사법원	14
■ 군사법원 부대기	17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7
○ 육군 군사법원	18
○ 해군 군사법원	19
○ 공군 군사법원	20
■ 연간 발자취[화보]	23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3
○ 육군 군사법원	32
○ 해군 군사법원	38
○ 공군 군사법원	40

■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45

■ 연간 군사법원 운영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49

49

60

68

71

■ 2019년 사건 통계현황

-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각 군 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73

77

95

111

129

147

165

■ 2019년 주요 판례

-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183

183

200

205

206

208

■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211

■ 2019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217



군사법원
청사전경



군사법원 청사 전경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청사 전면]



[대법정 내부]



[소법정 내부]

□ 육군 군사법원



[육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육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 해군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해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 해병대



[해병사 군사법원 청사 전면]



[해병사 군사법원 법정 내부]

□ 공군 군사법원



[공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공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법원장 및
주요직위자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장



12대 법원장 준장 이 동 호
(2019. 1. 1. ~ 2019. 11. 17.)

○ 주요 직위자



고등1부장
해군대령 신동욱



고등2부장
육군대령 김상환



보통부장
육군대령 이익원



재판연구부장
육군소령 정초아



국선변호부장
육군소령 이희원



행정처장
3급 양의찬

□ 육군 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장



17대 법원장 대령 서성훈
(2018. 12. 29. ~ 현재)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중령 이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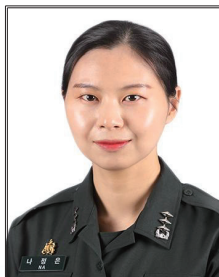
재판2부장
중령(진)김지아



재판3부장
중령 이상재



재판4부장
대령 서재중



재판연구부장
소령(진)나정은



국선번호부장
소령 이미정



행정과장
4급 유재열

□ 해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장



14대 법원장 대령 장 준 흥
(2019. 1. 2. ~ 2020. 1. 7.)

○ 재1재판부 주요 직위자



선임군판사
중령(진) 한재호



군판사
소령 이준우



영장전담군판사
소령 홍성은



국선변호부장
중위 류인제



주임원사
원사 정원덕

○ 재2재판부 주요 직위자



제2재판부장
중령 하성호



군판사
중령 김민지



군판사
소령 최은성

□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장



13대 법원장 대령 김 종 대
(2018. 1. 23. ~ 2019. 12. 23.)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공군대령 김종대



재판2부장
공군중령 이형일



선임군판사
공군소령 서대봉



국선변호부장
공군대위(진) 이일엽



행정과장
공군준위 염규중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군사법원
부대기



군사법원 부대기

□ 고등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6. 29.

○ 규 격: 163cm × 88cm

○ 표식설명

- 단순·명료한 디자인: 공명정대한 고등군사법원을 의미
- 자주빛 바탕: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을 상징
- '법원' 붉은색 글씨: 엄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표상(생명, 힘, 정열, 사랑)

□ 육군 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7. 1.
- 표식설명
 - 자주색 바탕: 법무병과 상징
 - 흰색 도안: 청렴
 - 원: 21세기 통일 한국 염원
 - 칼: 군사법 엄정함, 정의
 - 저울: 군사법원의 공정성, 형평성
 - 2000: 군사법원 창설년도

□ 해군 군사법원



- 제 정 일 자: 2008. 11.
- 창 안 자: 군판사 대위 박 성 완
- 부 대 기 설 명
 - 의의: 대한민국 해군의 법치주의 실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해군의 군법질서 유지와 지휘권 확립에 기여함을 의미함
 - 앵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군조직의 안정을 도모
 - 앵카내의 동그라미와 훗줄: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해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
 - 테두리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나가자는 의미
 - 테두리 무궁화 색깔(청색): 차가운 이성을 상징
 - 테두리 무궁화내의 칼: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
 - 앵카 동그라미 안의 저울: 엄정한 정의의 기준

□ 공군 군사법원



○ 도안 의의

- 높아진 공군의 위상에 발맞추어 법무병과로서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이 되고자 군사법원의 신념을 새긴 도안

○ 부분별 의의 및 설명

- 저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
- 하단의 법전: 법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재판
- 횃불: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정의의 등불을 밝히는 법원을 상징
- 칼: 범죄를 엄단하고 부정을 척결하여 군내 기강 확립의 의지
- 테두리의 월계수: 법질서 확립에 기반하여 공군의 영공수호에 일조하고자 하는 신념

○ 부대 임무

-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한 법질서 확립
- 군내 준법의식 고취 및 각종 범죄 엄단·예방



연간 발자취
[화 보]



연간 발자취(화보)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법무병과원 신년인사 (2019. 1. 2.)



최초 군사법정 음악회 (2019. 2. 13.)



아랍에미리트 공무 국외출장 (2019. 3. 2. ~ 9.)



공판 군검사 간담회 (2019. 3. 15.)



변호인 간담회 (2019. 3. 25.)



각 군 본부 군사법원 지도방문 (2019. 4. 17.)



법의날 기념 군사법정 개방행사 (2019. 4. 25.)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초청행사 (2019. 4. 29.)



엄마·아빠 직장체험 행사 (2019. 5. 17.)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 (2019. 5. 20. ~ 24.)



제19주년 창설기념행사 및 전반기 성과분석 회의 (2019. 7. 1.)



양형자료조사 (2019. 7. 24. ~ 26.)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2019. 9. 3. ~ 5.)



국악공연 및 법정 그림전시회 (2019. 9. 20.)



형사소송법학회·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공동학술대회 (2019. 10. 25.)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2019. 11. 8.)



전군 군판사 회의 (2019. 12. 2.)



'19년 성과분석회의 및 '20년 사업계획 보고 (2019. 12. 18.)

□ 육군 군사법원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2019. 4. 24.)



대전가정법원장 육본 군사법원 방문 (2019. 6. 26.)



2작사 지도방문 (2019. 7. 23.)



5군단 지도방문 (2019. 8. 27.)



군판사 양형토론회 (2019. 9. 5.)



국선변호 세미나 (2019. 9. 25.)



군사법원장 대전가정법원 방문 (2019. 11. 11.)



재판2부(2,8군단) 지도방문 (2019. 11. 11.)



육본 군사법원 워크숍 (2018. 11. 22.)



법원서기 직무교육 (2018. 11. 29.)



재판4부(수방사, 특전사, 7군단)지도방문 (2019. 12. 4. ~ 5.)



국군교도소 시찰 (2019. 12. 5.)

□ 해군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1재판부 속기사 임용 (2019. 7. 1.)



해군 군사법원 창설 19주년 기념 행사 (2019. 7. 1.)



'19년 해군 군판사 회의 및 법원서기 직무교육 (2019. 7. 8.)



'19년 해군 군판사 회의 및 법원서기 직무교육 (2019. 7. 8.)

□ 공군 군사법원



충청우주포럼 학술교류 행사 (2019. 1. 24.)



제19주년 법원창설 기념식 (2019. 6. 21.)



제16회 항공우주법세미나 (2019. 11. 14.)



'19년도 연간 업무분석회의 (2019. 12. 16.)



제13대 공군 군사법원장(대령 김종대) 이임 (2019. 12. 23.)



제14대 공군 군사법원장(대령진, 송가준) 취임 (2019. 12. 24.)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1월	2일 [국방부] 법무병과원 신년인사 7일 [공 군] 증인지원관 교육(법원공무원연수원) 24일 [공 군] 충청우주포럼 학술교류 행사(공군본부)
2월	13일 [국방부] 최초 군사법정 음악회 19일 [육 군] 군판사 자격심사위원회 25~28일 [육 군] 군판사 임명 전 직무교육
3월	2~9일 [국방부] 아랍에미리트 공무 국외출장 15일 [국방부] 공판군검사 간담회 19일 [육 군] 2018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 25일 [국방부] 변호인 간담회
4월	15일 [국방부] 2018년도 군사법원 연감 발간 17일 [국방부] 각군 본부 군사법원 지도방문 17일 [육 군] 행정예규 재판사무예규, 업무분장예규 개정 17일 [공 군] 고등군사법원 주관 지도방문 19일 [공 군] 충청항공우정정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교통대학교) 24일 [육 군]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24~25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작전사령부) 25일 [국방부] 법의날 기념 군사법정 개방행사 29일 [국방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초청행사
5월	2~3일 [국방부] 전반기 부대견학 및 워크숍 3일 [육 군] 국선변호장교 모범사례집 발간 17일 [국방부] 부모 직장체험 행사 20일 [공 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20~24일 [국방부]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6월	3~4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2함대사령부) 18일 [육 군] 재판 3부, 미군 19 전투지원사령부 군사법원 방문 20일 [해 군] 제2재판부 재판 지원 차량 도입 20일 [공 군] 법무서기 전문화 교육(공군본부) 24~25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1함대사령부) 26일 [국방부] 주한미군 군사법원 재판방청 26일 [육 군] 대전 가정법원장 방문

<p style="text-align: center;">7월</p>	<p>1일 [국방부] 제19주년 창설기념행사 및 전반기 성과분석회의</p> <p>1일 [해 군] 군사법원 창설 19주년 행사</p> <p>[해 군]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1재판부 속기사 임용</p> <p>1일 [공 군] 제20주년 법원창설기념 행사</p> <p>8~9일 [해 군] '19년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p> <p>23일 [육 군] 2작사 군사법원 순회간담회</p> <p>24~26일 [국방부] 양형자료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8월</p>	<p>27~28일 [육 군] 5군단 군사법원 순회간담회, 3·6사단 법정시설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9월</p>	<p>1일 [육 군] 육규 181 재판사무규정 개정</p> <p>3일 [공 군] 전군 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연수원)</p> <p>3~5일 [국방부]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p> <p>5~6일 [육 군] 군판사 양형토론회 및 성범죄세미나</p> <p>20일 [국방부] 국악공연 및 법정 그림전시회 행사</p> <p>25일 [육 군] 국선변호장교 직무교육</p>
<p style="text-align: center;">10월</p>	<p>25일 [국방부] 형사소송법학회·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공동학술대회</p> <p>31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해병1사단)</p> <p>10.31~11.1. [국방부] 후반기 부대견학 및 워크숍</p>
<p style="text-align: center;">11월</p>	<p>8일 [국방부]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p> <p>11일 [육 군] 대전 가정법원 방문</p> <p>12~13일 [육 군] 2·8군단 군사법원 순회간담회</p> <p>14일 [육 군] 공판조서작성 업무매뉴얼 발간</p> <p>14일 [공 군]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공군회관)</p> <p>14~15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해병2사단)</p> <p>20일 [육 군] 육군본부 군사법원 Workshop</p> <p>28~29일 [해 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해병대사령부)</p> <p>29일 [육 군] 법원서기 및 속기사 세미나</p>
<p style="text-align: center;">12월</p>	<p>2일 [국방부] 전군 군판사 회의</p> <p>4~5일 [육 군] 특전사, 수방사, 7군단 군사법원 순회간담회</p> <p>16일 [공 군] 연간 업무분석회의</p> <p>18일 [국방부] '19년 성과분석회의 및 '20년 사업계획 보고</p>

연간
군사법원
은영



연간 군사법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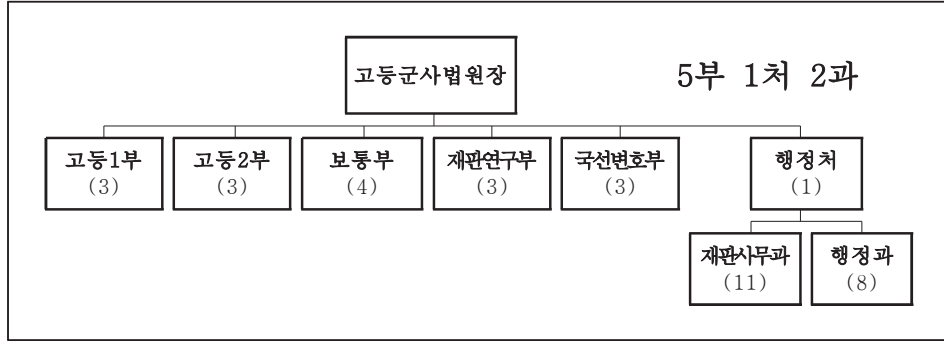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연혁

194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군 과정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특별/약식 군법회의(단심제 + 판결심사제도) ○ 국군조직법상 군법회의 설치 근거 마련
195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경비법(미 군법회의 제도) 체제하 군법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에 관한 상고사건 대법원 관할 - 군법회의 구성과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196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심제도(보통군법회의 → 고등군법회의 → 대법원) -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제도(관할관, 심판관)존치 - 소송절차는 일반 형사소송절차 반영 : 사법기관성 강화
198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칭(제9차 헌법 개정) ○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
199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통합(국방부, 육·해·공군 → 국방부) -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상 군판사 비율 상향 - 구속영장발부권: 관할관(지휘관) → 군판사
2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분리
200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중심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
2016. 1. 6. (2017. 7. 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전 시	40	20	0	8	12
평 시	37	17	0	8	12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육군준장	이 동 호	법무#60	군법11
고등1부장	해군대령	신 동 욱	해법무#20	군법13
고등2부장	육군대령	김 상 환	법무#66	군법14
보통부장	육군대령	이 익 원	법무#66	군법14
재판연구부장	육군소령	정 초 아	법무#79	
국선변호부장	육군소령	이 희 원	법무#83	
행정처장	3급	양 의 찬	'13년 임용	3사#19
재판사무과장	5급	이 도 선	'97년 임용	
행정과장	6급	김 진 영	'03년 임용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육군준장	이동호		
고등1부	부 장	해군대령	신동욱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최정윤		
	고등군판사	공군소령	방지혁		
고등2부	부 장	해군대령	김상환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이정민		
	고등군판사	해군중령	김혜리		
보통부	부 장	육군대령	이익원		
	보통군판사	육군소령	정 신		
	보통군판사	공군소령	신소열		
	영장전담군판사	육군소령	권민상		
재판연구부	부 장	육군소령	정초아		
	재판연구관	해군소령	조은영		
	외국법령연구관	육군중위	조재영		
국선연구부	부 장	육군소령	이희원		
	국선변호장교	해군대위	진동화		
	국선변호장교	공군대위	김재환		
행정처	행정처장	3급	양의찬		
	재판사무과	재판사무과장	5급	이도선	
		재판사무담당	6급	양홍승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한영식	
		군사법원서기	해군상사	서상우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강은정	
		군사법원서기	공군상사	박명균	
		군사법원서기	7급	김교성	
		사건접수담당	육군상사	김화연	
		영장담당서기	해군중사	양승진	
		속기사	8급	이영하	
		법무통합체계담당	9급	이윤희	
	행정과	행정과장	6급	김진영	
		법무행정담당	8급	홍선미	
		인사담당	9급	허은혜	
		재정담당	육군상사	손병택	
		군수/보급담당	공군중사	한진의	
		법령자료담당	7급	백숙현	
		지휘부행정담당	7급	안은영	
전산정보담당		7급	김유라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고등부

-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

- 피고인 전역 등으로 '이송'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피고인 주소지 관할 민간법원으로 이송
-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정기기일 외 증인신문 등을 위한 추가기일 지정
-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군검사가 원활하게 공판 유지를 할 수 있는 재판 진행

- '항소심판결 파기 관리'를 통해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대법원에 상고되어 판결을 받은 사건 총 189건 중 파기 사건은 4건으로 파기율 2.6%
- 대법원 파기이유 및 분기별 주요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각군 군사법원에 공유

-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를 통해 군사재판의 신뢰성 확보

- 2019년 사건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판결함으로써 형의 선고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불안감 해소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양형의 신뢰성 확보

- '재판만족도 평가'를 통한 소송관계인과 소통 활성화

- 피고인, 군검사, 변호인, 증인, 피해자, 방청객의 의견을 경청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판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
- 기존의 고객 의견함 설문 방식에 법원서기를 통한 설문지 배부 및 회수의 적극적인 방법을 추가하여 소송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 보통부

- 군사재판의 신속성 제고 및 양형기준 준수 노력

군사재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집중심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보장을 위한 '구공판 사건 150일 이내 사건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형기준 준수를 통해 군사재판의 신뢰성 및 신속성을 제고

① '집중심리제'의 정착 노력

-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하여 다툼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일 간격을 짧게 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극명히 다투는 경우 많은 증인이 신청되는데 이러한 경우 집중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짧은 기간에 연속한 증인신문으로 이전 기일에 심리한 내용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실제적 사실관계 발견에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기소하는 방산비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므로,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증인신문 및 기일지정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함
- 2019년 공판 진행한 총 37건 사건 중 3건에 대하여 집중심리 진행함

② 구공판사건 150일 이내 처리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에 대한 불안한 지위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기소된 이후 150일 이내 사건 처리할 것(2018년 대비 10일 단축한 기간임)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달성하고자 30일 이내 첫 기일 지정 및 집중심리제를 통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였음
- 2019년 선고한 구공판 사건 18건 중 13건에 대하여 150일 이내 처리하였음.

③ 양형기준 준수 노력

- 군사법원법은 형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양형기준을 존중할 것을 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준수하여 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군사법원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임
- 2019년 선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5개 사건에 대하여 5건 모두 양형기준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여 양형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도 판결서에 전부 양형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재판연구부

- 균형법상 주요 범죄유형 양형기준 마련으로 군사재판의 공정성 확보

- 재판연구부장이 2019. 7. 23.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순정 군사범죄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
- 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균형법 상 성범죄를 포함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20년 3월 최종의결 예정임.
- 균형법 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시 군사법원 판결 전수조사를 통해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양형기준안 검토 후 각 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군사법원의 의견 반영
- 향후 지속적으로 균형법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 제고에 노력할 것임

- 주기적 판례연구 및 군판사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

- 매월 1-2회 총 14회의 판례세미나를 개최하여 판례연구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과 교육을 통해 공유하여 군판사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19년에는 상습범 재심판결의 기판력, 준강간의 불능미수, 美 군사법원 배심심판제도 등의 주제로 실시하였고,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에 따른 토론주제를 선별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해외 군사법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자료 축적 및 공유
- '19. 5. 20. ~ 24. 사법연수원에서 전군 군판사 등 4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판, 형사증거법, 영장 실무, 양형 등 민간법원 실무 현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전군 군판사 회의, 각 군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및 군사법원 공보 발간으로 소통 강화

- '19. 12. 2. 전군 군판사 회의를 통해 2019년 업무 성과 및 향후 과제, 성범죄와 관련하여 군 특수성 반영한 양형인자 도출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전군 군판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내 양형인자에 대한 전군 군판사들의 심도 있는 논의 장을 마련

- '19. 4. 17. 각 군 보통군사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인적교류 강화 및 군사법원 운영 관련 개선사항 수렴을 위한 각 군 군사법원 지도방문을 통하여 전군 군사법원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재판사무 행정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군형사소송절차 준수 강조 등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공감대 형성
- 분기 단위로 군사법원(고등, 각 군) 주요판결, 재판참고자료, 각 군 주요실시 및 예정사항 등을 담은 「군사법원 공보」를 작성하여 2019년 4분기(제10호)까지 공유함으로써 최근 법령 및 판례 경향 소개를 통한 재판의 효율성 제고, 고등군사법원 및 전군 군판사 소통의 장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하여 열린 군사법원 구현

- 17개 학교 27개팀 참가
-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과 군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열린 군사법원 구현, 장기 군법무관 홍보를 통한 우수자원 지원 동기 부여

- 대외 교류활동 다양화를 통해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법원장 등 2명이 공무해외출장(3. 2. ~ 9.)을 통해 UAE 군사법기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군사법제도를 소개하고 UAE의 군사법제도 및 군 사법행정 분야에 관한 내용을 연구·분석하여 우리 군 사법제도 발전을 도모함.
- 그 외 헌법재판소장을 접견(1. 2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접견(1. 22.),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면담(1. 28.),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접견(2. 20.), 대한변협 협회장 접견(4. 11.), 사법연수원장 접견(4. 17.)을 실시하여 군사법원에 대해 널리 알림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함.

● 국선변호부

- 민간 국선변호인 명부 운영으로 피고인의 선택권 제고

- 서울 지방변호사회에 국선변호인 추천 의뢰하여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60명(군법무관 출신 12명, 사법시험 25명, 변호사시험 23명)과 국선변호부 소속 군법무관 3명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공개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시 해당 명부를 함께 제공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
- 다양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연임 기간 제한(3년)

-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변호 보장

- 재판부 평가서(50점), 피고인 평가서(50점)의 반영률을 1:1로 하여 합산된 평가 점수는 당해 연도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과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갱신 과정에서 반영
- 재판부 및 피고인 평가를 통하여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국선변호를 유도하고 부적격 국선변호인은 명부 갱신 시 배제함
-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장관 감사장 수여(연1회)
 - * 우수국선변호인에게 자긍심 고취 : '19년 우수국선변호인(변호사 박하영, 양시환)

- 국군교도소 수용자 정기 면담 실시

- 매주 2회에 걸친(화, 목) 국군교도소 화상면담 및 매월 1회 방문 면담을 통해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판결 주요 내용과 의미, 상소 여부 등 관련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 법률상담 강화

-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인트라넷, 인터넷, 전화 및 방문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즉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 인권보호에 기여
- 내담자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법률상담 홍보를 위하여 특별 법률상담 실시

● 행정처

- 군형법범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엄정한 양형기준 준수

- 군사법원법 제73조의 2, 대법원 양형기준 존중 의무 규정 신설('17. 7. 7.)
 - 대법원 양형위와 협조하여 군형법범 양형기준 마련 추진 중
 - * 재판연구부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軍 전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어 활동 중
-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양형기준 마련
 - 군 전문위원을 통해 군 특수성이 반영된 양형인자 도출 및 의견 제시
 - * 5개년도의 군사법원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해 선고형 분석, 양형위원회에 의견 제시
 - 신설된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양형기준 '19. 7. 1. 이후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추진 중
 - '19. 6. 1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군형법상 성범죄 선정
 - * 5개년도의 군사법원 판결문 전수조사 및 양형자료조사 진행('19.7.24.~26.)
 -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20. 전반기 확정 시행 예정
 - * '20.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월 공청회 예정
- 양형위원회, 매년 군사법원 판결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 분석결과를 각 군 군사법원과 공유하여 양형기준 준수 제고 노력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재판관계관 정보공유 활성화

- 군사재판 관계관 간담회
 - 일시 : 공판군검사(3.15.), 변호인(3.25.)
 - 내용 : 재판 진행 간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 * 양형편차 최소화, 신중한 증거채택, 전사소송의 활성화 등 16건 조치
- 전군 군사법원 지도방문
 - 일시/대상 : 4. 17.(수) / 육·해·공군본부 군사법원
 - 지도방문결과 후속조치
 - 증인지원관계도 관리·감독기능 강화, 군내 각종 인권보호제도와의 연계 및 업무공유 추진
 - 전군 군사법원 판결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권한 부여
 - 각 군 군사법원 판결문 및 공판조서 특수용지로 통일
- 전군 군판사 및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 일시/대상 : 군판사(5.20.~24.), 군사법원서기(9.3.~5.)
 - 내용 : 상고심에서 본 군사재판, 공판조서 작성, 하자사례 등

- 전군 군판사 회의

- 일시/대상 : 12. 2.(월) 11:00~17:00 / 법무관리관, 각 군 법무실장,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 회의주제

- '19년 군사법원 업무분석 및 '20년 발전방향 및 중점업무 논의

- 양형기준 토론

- 회의결과

- 사건분석 통계에 의하여 전년 대비 특이사항 분석

- 법원정보체계 개선 및 전자소송 대비책 마련 등 건의사항 수렴

- 군 형법상 성범죄 양형인자 식별 관련 종합 토론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결과 검토 및 향후 양형기준 설정 방향 토의

- 국선변호인명부 운영 개선을 통한 국선변호의 질 향상

- 다양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연임 기간 제한(3년)

- 충실한 변호를 통한 신속한 방어권 행사 가능하도록 국선변호인명부를 각 재판부별로 전속 운영

- *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표창(연 1회, 2명)

- **장병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군사법원**

- 군사법원 주요 판결(문) 공개(군사법원 홈페이지)

- 민간법원 재판중 이송사건에 대한 군사법원 관할 안내(5.20.)

- 최초로 열린 군사법정 음악회

- 일시/장소 : 2. 13.(수) 16:00~17:30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 참석 : 장병 및 근무원, 군사법 관계자(약 150명)

- 공연 : 피아니스트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 법의날 기념 법정 개방행사

- 일시/장소 : 4. 25.(목) 12:00~17:00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 참석 : 국방부 직원 및 장병 등(약 100명)

- 내용 : 성악·바이올린 공연, 그림전시회, 무료법률상담, 법복착용 기념사진 촬영

-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 일시/장소 : 11. 8.(금) 10:00~17:00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 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본선진출 12개팀(팀별 2~3명)

- 주관/후원 : 국방부/교육부, 각 군 본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 * 국방부장관상(서울대 버스정류장팀), 교육부장관상(서울대 박상영)

- 전군 군사법원 소통을 위한 정보관리 및 공유

- 군사법원 공보 발간(분기별)
- 군사법원 연감 발간(연 1회)
-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공유
 - 민간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사건 이송 시 관할 군사법원 안내 시행
 -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內 “전군 군사법원 연락처” 개선
 - “정보광장” 탭을 활용한 군사법 관련자료 공유 활성화
 - 매월 4개의 군사법원 주요 판결문 공개
 - * 홈페이지 활용 전군 사건검색 및 판결문 인터넷 공개서비스 제공
 - 매월 2회 판례연구회 자료 탑재
 - 최신 사건 및 군사법원 관련 법률자료 수시 탑재
 - * 업무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원 홈페이지 책임부서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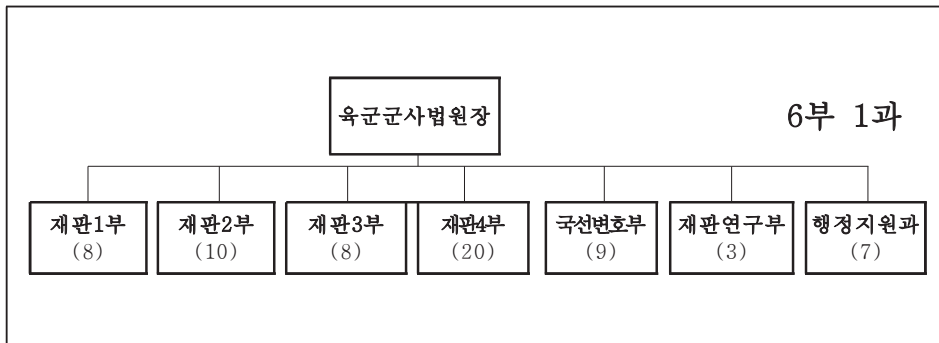
- 재판방청/법정견학 만족도 평가

- 국민과 장병들의 군사법제도 이해증진을 통한 군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군사법정 견학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 및 군법교육 효과로 군내 범죄 예방에 기여
- 법정견학 홍보를 위하여 2019년 국방일보 등 홍보기사 게재(4회) 및 국직부대 및 기관에 법정견학 홍보 공문 발송(2회),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개최 등 적극적인 법정견학 홍보 활동활동 추진
- 2019년 법정견학 총 30회 984명(2018년 총 28회 563명) 실시

□ 육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전 시	164	83	1	40	21	19
평 시	66	34	1	13	18	0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대 령	서 성 훈	법무#65	군법14
재판1부장	중 령	이 재 용	법무#68	군법16
재판2부장	(임)중령	김 지 아	법무#75	
재판3부장	중 령	이 상 재	법무#66	군법14
재판4부장	대 령	서 재 중	법무#54	군법8
국선변호부장	소 령	이 미 정	법무#80	
재판연구부장	대 위	나 정 은	법무#88	
행정지원과장	4 급	유 재 열	'86년 임용	공채

○ 직원 보직현황

● 장교 및 행정지원과

부서	직책	보직자		비고
		계급	성명	
지휘부	법원장	대령	서성훈	
재판1부	부장	중령	이재용	
	군판사	중령	양연실	
	군판사	중령(진)	한지용	
	군판사	소령	김종권	
재판2부	부장	중령(진)	김지아	
	군판사	소령	박한수	
	군판사	소령	이민화	
	군판사	소령	고혜섭	
재판3부	부장	중령	이상재	
	군판사	소령	조유리	
	군판사	소령	양보운	
	군판사	소령	박은숙	
재판4부	부장	대령	서재종	
	군판사	중령	윤현정	
	군판사	소령	김애령	
	군판사	소령	성은경	
	군판사	소령	김태홍	
	군판사	소령	석용식	
	군판사	소령	강미림	
	군판사	소령	김제훈	
	군판사	소령	이준철	
	군판사	소령	이혜경	
국선변호부	부장	소령	이미정	
	국선변호장교	대위	윤보령	
	국선변호장교	대위	최서준	
	국선변호장교	대위	진보승	
	국선변호장교	대위	윤석진	
	국선변호장교	대위	양주형	
	국선변호장교	대위	도형호	
	국선변호장교	대위	오정환	
재판연구부	부장	소령(진)	나정은	
	재판연구장교	소령(진)	윤미섭	
	재판연구장교	소령(진)	박근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4급	유재열	
	재정장교	대위	김예지	
	행정/통계담당	7급	서은희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이라리	

• 법원서기 및 속기사

부서	직책	보직자		비고
		계급	성명	
재판1부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	
	법원서기	중사	문혜림	
재판2부	법원서기	상사	장승환	
	법원서기	중사	백혁	
	법원서기	중사	송영통	
	법원서기	중사	윤준필	
	법원서기	중사	안승률	
	전자법정운영담당	8급	권윤주	
재판3부	법원서기	상사(진)	홍지희	
	법원서기	중사	김진섭	
	법원서기	하사	이찬형	
	전자법정운영담당	8급	우은채	
재판4부	법원서기	상사	이지원	
	법원서기	상사	김영화	
	법원서기	상사	박혜진	
	법원서기	중사	채소령	
	법원서기	중사	박경록	
	법원서기	중사	엄상진	
	법원서기	중사	남상욱	
	법원서기	중사	류지성	
	법원서기	중사	사혜진	
	전자법정운영담당	8급	김영일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군판사 임명

군판사 임명식은 2018년 4월 18일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2017년 이전에 임명된 군판사 1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의 군판사가 새롭게 임명되었다. 2017년과 동일하게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을 비롯하여 1군사·2작사의 재판부장들은 중령급으로 임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3군사 재판부장은 대령으로 임명하여 상급 부대 군사법원의 무게감을 더하였다.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판사는 전원 영관급 법무장교로 임명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재판 관련 법원 구성원 직무교육

- 군판사 임명 전 종합행정학교 교육

2019년 육·해·공군 군판사 보직 예정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육군 주관 하에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사재판실무반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군판사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재판 실무 강의뿐만 아니라 '민간 변호사, 군검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군사법원 재판' 등의 강의도 병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재판업무 수행 능력이 강화되는 한편 다양한 관점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군판사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고등군사법원 주관 군판사 직무교육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주관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전군 군판사들에 대해 2019년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군판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들은 주로 현직 민간법원 판사들이었으며 그 내용은 최신 형사판례의 경향, 영장실무, 형사증거법, 전자증거의 선별 압수 및 양형기준과 양형심리 등 형사법 최신경향부터 영장업무·양형기준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전반에 관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군판사들 상호간 및 민간 판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소중한 기회도 되었다.

- 육군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및 성범죄세미나

육군 군사법원 소속 전체 군판사가 모인 가운데 2019년 육군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및 성범죄 세미나를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육본 군사법원 대법정과 계룡스파텔 등지에서 개최하였다. 계룡시 성폭력상담소장(양정미)의 초빙 강연을 들었으며, 육군 피해자보호 관리장교(김지현 법무관)와 함께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충남대 병원에 설치된 대전 해바라기 센터도 방문하여 관련 교육을 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는바,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시간이었다.

- 국선변호인 직무교육

2019년 9월 25일 육본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육군 국선변호장교(총 13명 참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선변호인 직무교육을 통해 국선변호활동 간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고 국선변호제도의 발전방향 및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엇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인 최익구 변호사가 '국선변호 실무 노하우'에 대해 강의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군판사가 국선변호인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강의도 이루어졌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군사법원 법원서기·속기사 세미나

2019년 11월 29일에는 육군본부 제1분청 회의실에서 법원서기·속기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군판사와 법원서기 간 상호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지역 군사법원으로 개편될 경우의 법원서기 배치 문제(법원서기의 군무원 전환 관련 부분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 군사법원 소통강화

- 야전 지역 군사법원 순회 간담회

야전지역 군사법원요원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재판부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재판2부는 2군단과 8군단을 2019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재판3부는 2작전사령부를 7월 23일 방문하였다. 2019년에는 재판4부 지도방문에 중점을 두었는데, 8월 27일 5군단 지도방문을 시작으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수방사, 특전사, 7군단을 방문하였다. 아울러 군사법원장은 7군단을 방문한 12월 5일에 7군단 내에 있는 국군교도소를 시찰하여 교도소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순회 간담회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년을 맞이하여 법률 시행간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별 재판을 방청하고, 법원서기 간담회를 함께 하였다.

-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민간 학술행사 참여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면접위원 지원

2018년 3월 20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2019년 11월 16일 군사법원장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와같이 대전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유능한 법조 인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가정법원과의 교류**

2019년 6월 26일 법원장을 비롯한 대전가정법원 소속인원 4인이 계룡대에 방문하였고, 11월 11일에는 대전가정법원장이 법무실장과 군사법원장 등 5인을 초청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6월 26일에는 법무실장 집무실에서 가정법원장 등 4인을 초청한 가운데 법무실장, 군사법원장, 법무과장, 군판사 3인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고, 재판부장의 인솔로 육본 군사법정을 소개한 후 계룡산 천황봉을 등반하였다. 11월 11일에는 대전 가정법원장실에서 환담을 나눈 후, 대전 가정법원 각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가정법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군사법원과 민간법원 간에 사법제도 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와 공감대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 **군사법원 관련 제도 개선**

- **육군규정 181 「재판사무 규정」개정**

심판관 임명에 관하여,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1조 제1항의 요건과 맞도록 육규 제9조 제1항을 개정하였다.

-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 개정

군사법원장의 재판 1부장 겸임, 심판관제 원칙적 폐지에 따른 유동적 운영, 숙보업무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건 축소, 군검사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군사법원법에 맞는 실질적인 규율이 될 수 있도록 위 예규를 개정하였다.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 개정

군사법원장의 재판 1부장 겸임, 행정지원과 개편에 따른 담당자 수정, 지작사 창설에 따른 속기지원 수정 등의 내용으로 위 예규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율이 될 수 있도록 위 예규를 개정하였다.

- 「**국방보안업무 훈령**」 개정 소요제기

군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읽기 전용 CD를 ‘저장매체 관리대장’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이중철차를 생략하고자, 군사재판에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개정 소요제기 하였다.

- **신속한 재판 강화**

장기미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병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과 같이 월 1회 이상 공판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1년이상 지속되는 사건이 민간법원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게 되었다.

● 연구 및 발간 활동

- 「법원서기 업무 매뉴얼」 발간

2019. 11. 23. 육군본부 군사법원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가 2018년에 집필한 「법원서기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법원서기 업무 매뉴얼」은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 각종 법률을 참고하여 법원서기 업무시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한 것으로, 초임 법원서기부터 숙달된 법원서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응이 좋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원서기의 군사법원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이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만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

육·해·공군 군사법원은 군판사를 비롯한 법무병과원 및 군사법 관련자들이 재판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한 해동안 선고한 사건 중 주요 판결을 엄선하여 2019년 3월 「2018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을 발간하였다. 육군 군사법원 판결이 이 판결집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야에 중요 판결이 많았고, 판결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존중한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은 다수의 최신판결을 수록하여 군사법제도의 이해를 돕는 데에 한층 더 기여를 하고 있다.

- 「국선변호 모범사례집」 발간

국선변호 모범사례집은 2018년 한 해 동안 국선변호장교들이 실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변론 방향의 설정부터 실제 진행되었던 변론의 내용과 판결의 결과까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책자로서, 2019년 3월 29일에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증거채택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은 사건까지 예하부대 국선변호장교들이 직접 작성한 경험담을 엮어낸 점이 특징이다.

- 주요 판례연구

중요·최신 판례에 대한 연구를 2019년에도 지속하여 통하여 군판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판례연구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요판례를 재판연구부에서 선정하여 요약·편집하고 일부 설명과 분석을 추가한 것으로서, 법률가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신 중요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판례연구 자료를 군사법원 군판사들에게만 전파되었으나, 2019년 9월부터는 육본 법무실 간부 전 인원에게 공유함과 동시에 책넷 법원 참고자료로 게시하였다. 판례연구는 형사사건과 군 형사사건 전반을 다루었으며, 특히 판단이 모호한 성폭력 범죄나 무고죄의 판단기준, 사이버 성범죄의 최신경향 등을 분석·제시하여 군판사의 업무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재판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2군단 법원 신축은 2018년 예산을 반영(29억원), 2018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완공되어 2020년 1월 30일 개원식 후 명실상부 독립된 군사법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수도권 법무부 및 법원 신축은 2020년 예산편성요구안 국방부 검토결과 군사법 개혁안과 관련 5개 거점군사법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미 반영되어 '21~'25 국방중기계획 및 2021년 예산편성요구안에 재추진하였으나 '군사법 개혁안 확정 이전에 법원 신축은 불가하다.'라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수도권에서 미사용 건물 대보수 사용으로 사업 전환 추진예정이다. 육·해·공군 군사법원 신축은 '20~'24 국방중기계획에 '23년도에 반영하였던 것을 연도를 조정하여 '21년도에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21~'25 국방중기계획에 요구하였으며, 2021년 예산편성요구안을 작성하여 계통대근무지원단에 제출함과 동시 향후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법원신축에 따른 전자법정시스템 및 법정비품입비도 '21~'25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법원 신축 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반영(비품구입비 예산 2.4억원)하였다.

2020년 12건의 일반사업예산의 경우에도 '19년 예산 대비 5개 사업에 대하여 5.4% 확대된 184,514천원의 예산을 획득하였으며, 향후에도 군사법원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요구하여 원활한 재판 및 법원 운영을 위한 예산획득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재판지원 차량 확보 및 법정시설 개선운용

2019년도에는 승용차 2대를 확보하여 재판2부(8군단)와 재판4부(5군단)에 보급 지원하였으며, 해당 관할부대에서 직접 관리 및 정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였다. 향후에도 편제 대비 부족한 재판지원 차량에 대하여 매년 1~2대를 재투자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비품구입 및 법복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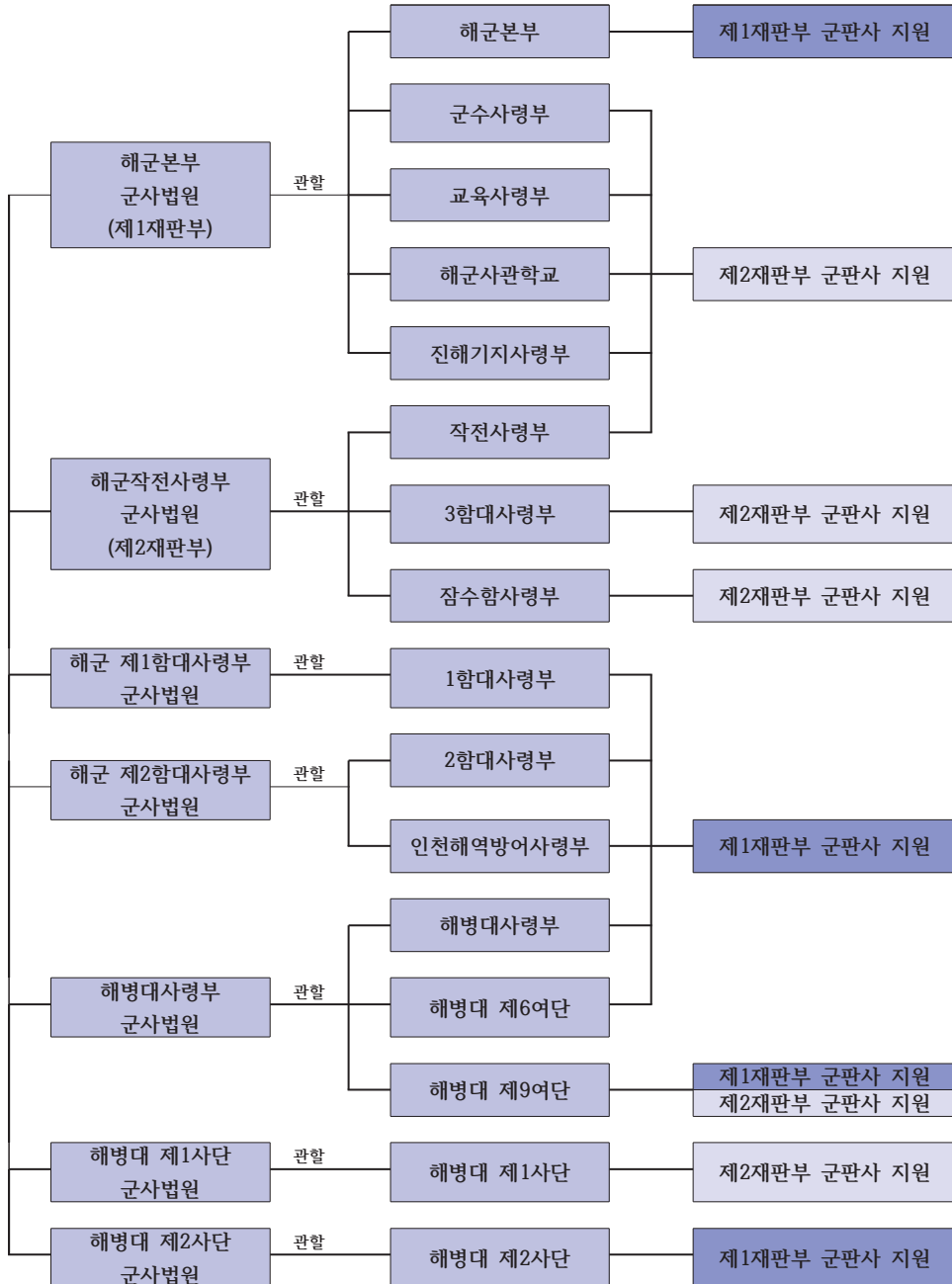
부대비품비 7,146만원 예산을 배정받아 4개 법원에 실물화상기, 5개 법원에 고속스캐너, '18년에 미보급된 4개 법원에 자동천공기, 11개 법원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보급하였으며, 노후화된 비품 교체로 1군단 1,990만원, 5군단 1,300만원, 3군단, 700만원, 지작사 680만원, 7군단 550만원, 8군단 338만원, 군수사 120만원을 재배정하였고, 2군단 법원 및 법정을 신축하여 1억 2천만원을 재배정하였다.

피복비 1,845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군판사 6벌, 법원서기 4벌, 군검사 12벌의 법복을 6월 중에 제작(단가 229,000원)하여 보급하였다. 법복과 함께 착용하는 정복 와이셔츠를 일괄 구매하여 군판사 및 법원서기, 군검사에게 각각 보급하였다. 민간법원 판사 넥타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육군군사법원 마크를 삽입하여 제작한 넥타이를 군판사에게 보급하였다.

□ 해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일반현황

부 대 명		직 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해 군 본 부	제1재판부	군사법원장	대령	장준홍	
		제1재판담당1	중령(진)	한재호	
		제1재판담당2	소령	이준우	
		영장전담군판사	소령	홍성은	
		법원서기	원사	정원덕	
		법원서기	중사(진)	이재권	
		법원서기	하사	박홍민	
		순회재판 지원서기1	상사	백대훈	
		순회재판 지원서기1	상사	정영미	
		순회재판 지원서기2	상사	하진홍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	9급	박민선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중위	류인제	
	제2재판부	제2재판부장	중령	하성호	
		제2재판담당1	중령	김민지	
제2재판담당2		소령	최은성		
순회재판 지원서기1		하사	이찬희		
작 전 사	심판부	법원서기	상사	이영주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중위	송민석	
1함대		법원서기	중사	윤지현	
2함대		법원서기	상사	안 훈	
해병대사		법원서기	원사	김인천	
1사단		법원서기	하사	유호재	
2사단		법원서기	상사	안기양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해군 군사법원 국선변호 업무분담 지침 제정('19. 4.)**

- 예하부대 법무관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업무분담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제2재판부 재판 지원 차량 확보('19. 6.)**

- 원활한 재판 지원을 위해 승합차(카니발) 1대를 확보(제2재판부 배치)

●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1재판부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사) 신규 임용('19. 7. 1.)**

- '19. 7. 1.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1재판부에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사)이 신규 임용 및 임무 수행

● **군사법원 창설 19주년 기념행사 실시('19. 7. 1.)**

- 해군본부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사법원 창설 19주년 행사를 기념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과 실무적 운영 방안, 해군 군사법원 업무 규정 개정안에 대한 토의 실시
- 실시 효과 : 국방개혁 2.0 취지에 부합하는 해군 군사법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사법원의 창설 역사를 되새기며 해군 군사법원의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

● **'19년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 시행('19. 7. 8.)**

- 해군본부 군사법정 및 법무회의실에서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을 실시
- 실시 사항 : 소송기록 작성 참고자료(실무 교본) 배부, 판결 양형자료를 분석, 증인지원관 제도의 필요성 토의

● **군사법원 실무서 발간**

도서명	목적 및 결과	비고
'19년 군사법원 주요법령 및 최신판례	- 최신판례 및 군사법원 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록 - 기존 실무자 및 신규 임용자 교육자료로 활용	2019-01-19 발간

□ 공군 군사법원

부서	직책	현보직		비고
		계(직)급	성명	
지휘부	군사법원장	대령	김종대	
재판1부	재판1부장(겸직)	대령	김종대	
	보통법원판사	소령	김현준	
	보통법원판사	임소령(진)	권미정	
	재판연구관	중위	박지수	
	단독재판사무담당	상사	이정길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재판2부	재판2부장	중령	이형일	
	보통법원판사	소령	서대봉	
	보통법원판사	소령	이용찬	
	합의재판사무담당	9급	이여진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대위(진)	이일엽	
	국선변호담당	중위	호성식	
		중위	정의선	
국선변호사무담당	원사	이현상		
행정과	행정과장	준위	염규중	
	행정담당	8급	김일환	
	속기사	8급	염혜정	
	속기사	8급	이기문	
	행정병	상병	이도엽	
	재판지원운전병	일병	장대석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재판부

- 군판사 직무 교육
 - 기간/장소 : 5. 20. ~ 24. / 사법연수원
- 법원서기 전문화 교육
 - 전군 법원서기 직무교육, 증인지원관 교육

● 장병 법률상담 등

- 법률상담
 - 장병(인트라넷, 전화, 방문) 법률상담 134건
 - 계룡시민(계룡시청 격주 2시간) 법률상담 50건
- 법률산책 인트라넷 공지 4건
 - 가동연한과 손해배상 등

●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 일자/장소 : '19. 11. 14.(목) / 공군회관
- 내용 :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 우주법 해설서 개정 발간

- 해설서 I 권 : 우주관련 국제법 및 쟁점, 우리나라의 국내법
- 해설서 II 권 : 미국, 일본, 중국의 우주관련 국내법

● 주요행사 및 조직력 강화활동

- 제19주년 군사법원 부대창설 기념행사
 - 일자/장소 : '19. 6. 21.(금) / 본부 군사법원 법정
 - 내용 : 법원창설기념 포상 및 병과장 격려사, 군사법원 운영방안 등 토론 등
- 연간 업무분석회의
 - 기간/장소 : '19. 12. 16.(월) / 본부 회의실
 - 내용 : 연간 업무분석 및 법원발전 및 재판역량 강화, 항공우주법 세미나 발전방향 등 토론



2019년
사건 통계현황

◆ 일러두기(사법연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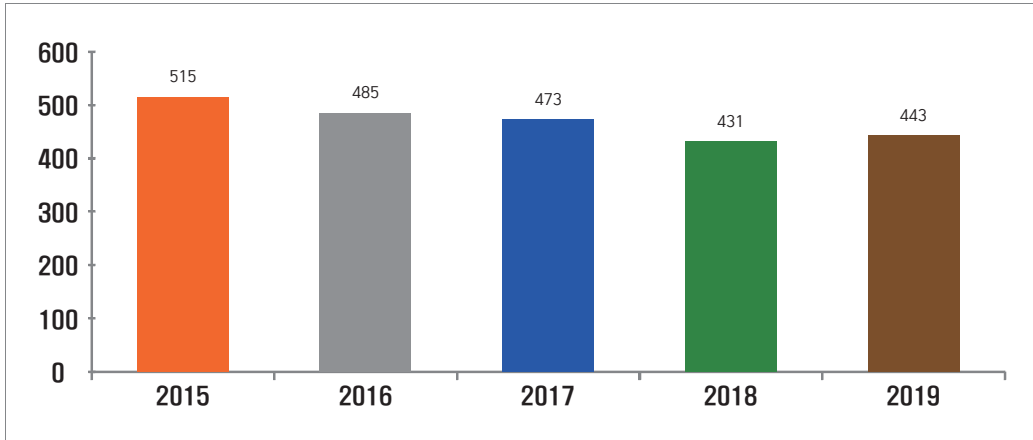
- 사건은 인원수(명)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수”는 해당 연도에 새로이 접수된 사건을 의미함
- “처리”는 이월 사건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처리한 사건을 의미함
* 단, 육군의 경우 자체 사건통계시스템상 해당 연도 접수사건 기준으로 작성됨
- 약식사건 처분별 처리결과에서 ‘기타’는 공판절차회부와 이송만 기재하고,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에 기재함
- 경합사건의 죄명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만으로 기재함
-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으로 기재함
- 기소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경우 접수에는 기소죄명을, 처리에는 처분죄명을 기준으로 각각 기재함
- 신분별 현황에서 ‘생도’는 민간인에 기재함
- 표 또는 도표 중 “기타”는 구분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수를 나타냄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명	515	485	473	431	443

○ 분석

- 2015년 이후 항소사건 접수 감소 추세
- 2019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접수 2.8% 증가

2. 2019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43 (100)	34 (7.7)	337 (76.1)	40 (9.0)	32 (7.2)

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47 (100)	164 (7.0)	1,802 (76.8)	212 (9.0)	169 (7.2)
2015년	명 (비율)	515 (100)	34 (6.6)	415 (80.6)	40 (7.8)	26 (5)
2016년	명 (비율)	485 (100)	31 (6.4)	369 (76.1)	47 (9.7)	38 (7.8)
2017년	명 (비율)	473 (100)	36 (7.6)	357 (75.5)	56 (11.8)	24 (5.1)
2018년	명 (비율)	431 (100)	29 (6.7)	324 (75.2)	29 (6.7)	49 (11.4)
2019년	명 (비율)	443 (100)	34 (7.7)	337 (76.1)	40 (9.0)	32 (7.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접수 중 육군 76.8%, 해군 9%, 공군 7.2%, 국방부 7%
- 2019년 육군 76.1%, 해군 9%, 국방부 7.7% 공군 7.2%
- 2019년 전년 대비 해군, 국방부 및 육군 사건 증가, 공군 사건 감소

3. 2019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443 (100)	167 (37.7)	128 (28.9)	148 (33.4)

3-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47 (100)	1,012 (43.1)	593 (25.3)	742 (31.6)
2015년	명 (비율)	515 (100)	257 (49.9)	109 (21.2)	149 (28.9)
2016년	명 (비율)	485 (100)	204 (42.1)	121 (24.9)	160 (33)
2017년	명 (비율)	473 (100)	219 (46.3)	115 (24.3)	139 (29.4)
2018년	명 (비율)	431 (100)	165 (38.3)	120 (27.8)	146 (33.9)
2019년	명 (비율)	443 (100)	167 (37.7)	128 (28.9)	148 (33.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피고인 항소 43.1%, 군검사 항소 25.3%, 쌍방 항소 31.6%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추세
- 2019년 항소사건 중 피고인 항소 37.7%, 군검사 항소 28.9%, 쌍방 항소 33.4%
- 2019년 전년 대비 피고인 항소율 감소, 군검사 항소율 증가, 쌍방 항소율 유사

4. 2019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43 (100)	86 (19.4)	150 (33.9)	177 (40.0)	24 (5.4)	6 (1.4)

4-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47 (100)	451 (19.2)	656 (28.0)	1,116 (47.6)	89 (3.8)	36 (1.5)
2015년	명 (비율)	515 (100)	88 (17.1)	113 (21.9)	289 (56.1)	12 (2.3)	13 (2.5)
2016년	명 (비율)	485 (100)	87 (17.9)	132 (27.2)	238 (49.1)	17 (3.5)	11 (2.3)
2017년	명 (비율)	473 (100)	99 (20.9)	114 (24.1)	238 (50.3)	20 (4.2)	2 (0.4)
2018년	명 (비율)	431 (100)	90 (20.9)	147 (34.1)	174 (40.4)	16 (3.7)	4 (0.9)
2019년	명 (비율)	443 (100)	87 (19.4)	150 (33.9)	177 (40.0)	24 (5.4)	6 (1.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47.6%, 준·부사관 28%, 장교 19.2%, 군무원 3.8%
- 연도별 분석결과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추세
- 2019년 접수 중 병 40%, 준·부사관 33.9%, 장교 19.4%, 군무원 5.4%
- 2019년 전년 대비 군무원 사건 증가, 장교, 준·부사관, 병 사건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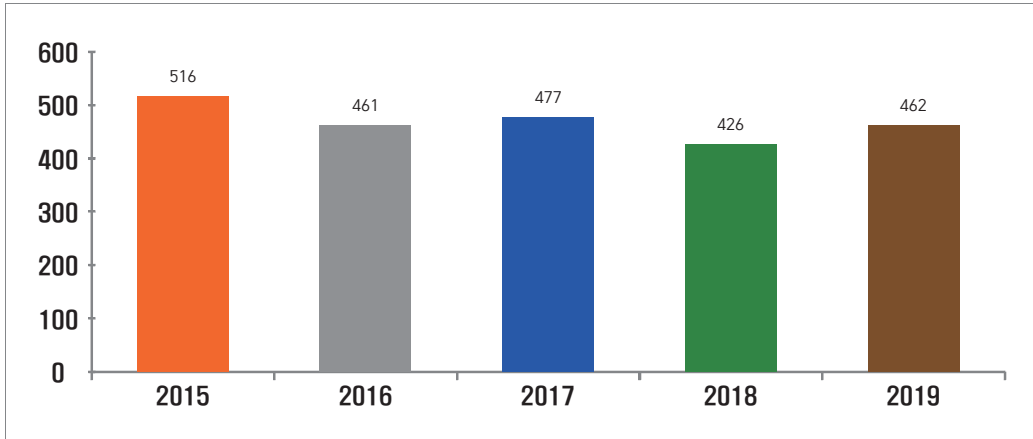
5. 2019년 항소사건 신분별·범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443	86	149	177	24	7
군형법범	간첩이적	0				
	군무이탈	9	1	3	5	
	상관에관한죄	26	4	16	6	
	군용물관련죄	9		7		2
	초병에관한죄	7			2	5
	성범죄(군인등)	60	16	26	15	3
	기타	8	2	3	2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7		5	2	
	문서인장죄	7	4	3		
	살인의죄	2			2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등의죄	10	1	3	6	
	사기횡령배임죄	35	6	8	19	2
풍속에관한죄	0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0	2	4	3	1
	도교법위반	10	1	6	2	1
	특가법(도주)	8	1	2	5	
성범죄	형법위반	52	11	11	27	3
	성폭법위반	38	6	14	14	4
	아청법위반	13	1	2	10	
	성매매특별법	7	1	4	2	
폭력범죄	상해, 폭행	37	6	12	17	2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9			9	
군사기밀보호법	2	1	1			
국가보안법	0					
기타	77	22	19	31	5	

○ 분석

- 2019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38.3%, 주요형법범 13.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3.3%, 폭력범죄 10.3%, 교통범죄 6.3%
- 신분별 주요 범죄 비율
 - 장교: 성범죄(군형법 포함) 40.6%, 주요형법범 12.7%
 - 준·부사관: 성범죄(군형법 포함) 38.2%, 군형법범 19.4%
 - 병: 성범죄(군형법 포함) 38.4%, 주요형법범 15.2%
 - 군무원: 성범죄(군형법 포함) 41.6%, 주요형법범 16.6%
 - 민간인: 군형법범 100%

6.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 결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명	516	461	477	426	462

○ 분석

- 2015년 이후 항소사건 처리 감소 추세
- 2019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처리 8.4% 증가

7. 2019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62 (100)	34 (7.4)	351 (76.0)	30 (6.5)	47 (10.2)

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42 (100)	151 (6.4)	1,816 (77.5)	205 (8.8)	170 (7.3)
2015년	명 (비율)	516 (100)	22 (4.3)	423 (82.0)	45 (8.7)	26 (5.0)
2016년	명 (비율)	461 (100)	28 (6.1)	367 (79.6)	29 (6.3)	37 (8.0)
2017년	명 (비율)	477 (100)	34 (7.1)	351 (73.6)	63 (13.2)	29 (6.1)
2018년	명 (비율)	426 (100)	33 (7.7)	324 (76.1)	38 (8.9)	31 (7.3)
2019년	명 (비율)	462 (100)	34 (7.4)	351 (76.0)	30 (6.5)	47 (10.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처리 중 육군 77.5%, 해군 8.8%, 공군 7.3%, 국방부 6.4%
- 연도별 군별 처리 비율 육군 및 공군 증가, 해군 감소 추세
- 2019년 육군 76%, 공군 10.2%, 국방부 7.4%, 해군 6.5%
- 2019년 전년 대비 육군 및 공군 사건 증가, 해군 사건 감소, 국방부 사건 유사

8. 2019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명 (비율)	462 (100)	76 (16.5)	386 (83.5)

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5년 평균을	2,342 (100)	630 (26.9)	1,712 (73.1)
2015년	516 (100)	192 (37.2)	324 (62.8)
2016년	461 (100)	148 (32.1)	313 (67.9)
2017년	477 (100)	126 (26.4)	351 (73.6)
2018년	426 (100)	88 (20.7)	338 (79.3)
2019년	462 (100)	76 (16.5)	386 (83.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 사건 26.9%, 불구속 사건 73.1%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추세
- 2019년 항소사건 중 구속 사건 16.5%, 불구속 사건 83.5%
- 2019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9. 2019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중 감경					
명 (비율)	462 (100)	182 (39.4)	53 (11.5)	35 (7.6)	94 (20.3)	192 (41.6)	16 (3.5)	72 (15.6)	60.6%

※ 1심 판결 파기율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100 [항소취하, 이송 등 제외]

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중 감경					
5년 평균을	2,342 (100)	990 (42.3)	259 (11.1)	146 (6.2)	585 (25.0)	899 (38.4)	134 (5.7)	319 (13.6)	52.4%
2015년	516 (100)	238 (46.1)	44 (8.5)	28 (5.4)	166 (32.2)	175 (33.9)	42 (8.1)	61 (11.8)	57.6%
2016년	461 (100)	175 (38)	40 (8.7)	17 (3.7)	118 (25.6)	183 (39.7)	35 (7.6)	68 (14.8)	48.9%
2017년	477 (100)	203 (42.6)	53 (11.2)	35 (7.3)	115 (24.1)	187 (39.2)	23 (4.8)	64 (13.4)	52.1%
2018년	426 (100)	192 (45.1)	69 (16.2)	31 (7.3)	92 (21.6)	162 (38)	18 (4.2)	54 (12.7)	54.2%
2019년	462 (100)	182 (39.4)	53 (11.5)	35 (7.6)	94 (20.3)	192 (41.6)	16 (3.5)	72 (15.6)	48.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1심 파기 52.4%, 항소기각 38.4%, 이송 등 13.6%, 항소취하 5.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심 파기 중 양형 가중 증가, 법리오해 및 양형 감경 감소 추세
- 2019년 항소사건 중 1심 판결 파기율 48.7%, 전년 대비 파기율 증가

10. 2019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62 (100)	103 (22.3)	154 (33.3)	178 (38.5)	21 (4.5)	6 (1.3)

10-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42 (100)	437 (18.7)	632(27.0)	1,164 (49.7)	86 (3.7)	23 (1.0)
2015년	명 (비율)	516 (100)	63 (12.2)	120 (23.3)	314 (60.9)	15 (2.9)	4 (0.8)
2016년	명 (비율)	461 (100)	99 (21.5)	99 (21.5)	249 (54)	8 (1.7)	6 (1.3)
2017년	명 (비율)	477 (100)	93 (19.5)	126 (26.4)	230 (48.2)	23 (4.8)	5 (1)
2018년	명 (비율)	426 (100)	79 (18.5)	133 (31.2)	193 (45.3)	19 (4.5)	2 (0.5)
2019년	명 (비율)	462 (100)	103 (22.3)	154 (33.3)	178 (38.5)	21 (4.5)	6 (1.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병 49.7%, 준·부사관 27%, 장교 18.7%, 군무원 3.7%, 민간인 1%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만 감소, 타 신분은 계속 변동
- 2019년 병 38.5%, 준·부사관 33.3%, 장교 22.3%, 군무원 4.5%, 민간인 1.3%
- 2019년 전년 대비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11. 2019년 항소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명 (비율)	462 (100)	51 (11.0)	57 (12.3)	29 (6.3)	173 (37.4)	54 (11.7)	3 (0.6)	95 (20.6)

11-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42 (100)	239 (10.2)	344 (14.7)	172 (7.3)	871 (37.2)	351 (15.0)	26 (1.1)	339 (14.5)
2015년	명 (비율)	516 (100)	60 (11.6)	79 (15.3)	37 (7.2)	182 (35.3)	108 (20.9)	4 (0.8)	46 (8.9)
2016년	명 (비율)	461 (100)	55 (11.9)	72 (15.6)	36 (7.8)	163 (35.4)	84 (18.2)	9 (2)	42 (9.1)
2017년	명 (비율)	477 (100)	47 (9.9)	74 (15.5)	34 (7.1)	190 (39.8)	44 (9.2)	4 (0.8)	84 (17.6)
2018년	명 (비율)	426 (100)	26 (6.1)	62 (14.6)	36 (8.5)	163 (38.3)	61 (14.3)	6 (1.4)	72 (16.9)
2019년	명 (비율)	462 (100)	51 (11.0)	57 (12.3)	29 (6.3)	173 (37.4)	54 (11.7)	3 (0.6)	95 (20.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성범죄(군형법 포함) 37.2%, 폭력범죄 15%, 주요형법범 14.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2%
- 연도별 분석결과 성범죄 증가, 주요형법범 및 폭력범죄 감소 추세
- 2019년 항소사건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37.4%, 주요형법범 12.3%, 폭력범죄 11.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1%
- 2019년 전년 대비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증가, 주요형법범 및 폭력범죄 감소, 성범죄(군형법 포함) 유사

12. 2019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62 (100)	0 (0)	56 (12.1)	108 (23.4)	135 (29.2)	20 (4.3)	53 (11.5)	90 (19.5)

※ 이송 등: 이송(72), 항소취하(16), 공소기각(2)

1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42 (100)	1 (0)	433 (18.5)	627 (26.8)	502 (21.4)	81 (3.5)	241 (10.3)	457 (19.5)
2015년	명 (비율)	516 (100)	1 (0.2)	121 (23.4)	155 (30)	80 (15.5)	18 (3.5)	38 (7.4)	103 (20)
2016년	명 (비율)	461 (100)	0 (0)	102 (22.1)	122 (26.5)	74 (16.1)	20 (4.3)	40 (8.7)	103 (22.3)
2017년	명 (비율)	477 (100)	0 (0)	91 (19.1)	127 (26.6)	104 (21.8)	16 (3.4)	52 (10.9)	87 (18.2)
2018년	명 (비율)	426 (100)	0 (0)	63 (14.8)	115 (27)	109 (25.6)	7 (1.6)	58 (13.6)	74 (17.4)
2019년	명 (비율)	462 (100)	0 (0)	56 (12.1)	108 (23.4)	135 (29.2)	20 (4.3)	53 (11.5)	90 (19.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26.8%, 재산형 21.4%, 자유형 18.5%, 무죄 10.3%, 선고유예 3.5%
- 연도별 분석결과 재산형 및 무죄 증가, 자유형 감소 추세
- 2019년 항소사건 중 재산형 29.2%, 집행유예 23.4%, 자유형 12.1%, 무죄 11.5%, 선고유예 4.3%
- 2019년 전년 대비 재산형 및 선고유예 증가,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감소

13. 2018년 항소사건 범죄별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62	0	56	108	135	20	53	90	
민사범죄	간첩이적	0							
	군무이탈	10		6	3			1	
	상관에관한죄	25			6		5	2	12
	군용물관련죄	6		2	1		2	1	
	초병에관한죄	10		1	4		2	3	
	성범죄(군인등)	65		7	36		5	7	10
	기타	7			3	3		1	
주요범죄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5		2	2			1	
	문서인장죄	6				1	2	2	1
	살인의죄	2		2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의죄	4			1	2		1	
	사기횡령배임죄	40		10	8	13	1	3	5
	풍속에관한죄	0							
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3			2	7	1	3	
	도교법위반	8			1	3	1	3	
	특가법(도주)	8		1	1	5		1	
형법위반	형법위반	57		4	13	13	2	11	14
	성폭법위반	36		9	6	14		4	3
	아청법위반	10		1	1	3		1	4
	성매매특별법	5				4		1	
폭력범죄	상해, 폭행	42		2	3	24			13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8		1	3	1	1		2
	군사기밀보호법	3		1	2				
국가보안법	0								
기타	92		7	12	42		18	13	

○ 분석

- 성범죄(군형법 포함) 37.4%,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2.5%, 주요형법범 12.3%, 폭력범죄 10.8%
- 성범죄(군형법 포함)의 경우 집행유예 32.4%, 재산형 19.6%, 무죄 13.9%, 자유형 12.1%
- 주요형법범의 경우 재산형 28%, 자유형 24.5%, 집행유예 19.2%, 무죄 8.7%

14. 2019년 항소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62	0	56	108	135	20	53	90
장교	장성	4	1	2	1			
	영관	52	6	6	25	2	10	3
	위관	48	1	17	17	2	5	6
준·부사관	153		16	34	48	13	28	14
병	178		29	40	40	3	6	60
군무원	21		2	5	4		4	6
민간인	6		1	4				1

○ 분석

- 장교 사건의 경우 재산형 41.3%, 집행유예 24%, 무죄 14.4%, 자유형 7.6%
- 준·부사관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0.8%, 재산형 24%, 무죄 15.7%, 자유형 12%
- 병 사건의 경우 재산형 31.3%, 집행유예 22.2%, 무죄 18.3%, 자유형 10.4%
- 군무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3.8%, 재산형 및 무죄 각 19%, 자유형 9.5%
- 민간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66.6%

15. 2019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56 (100)	0 (0)	0 (0)	2 (3.6)	10 (17.9)	29 (51.8)	15 (26.8)

15-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33 (100)	0 (0)	11 (2.5)	39 (9.0)	57 (13.2)	220 (50.8)	106 (24.5)
2015년 명 (비율)	121 (100)	0 (0)	7 (5.8)	10 (8.3)	13 (10.7)	61 (50.4)	30 (24.8)
2016년 명 (비율)	102 (100)	0 (0)	3 (3)	18 (18)	12 (12)	44 (44)	25 (25)
2017년 명 (비율)	91 (100)	0 (0)	0 (0)	6 (6.6)	18 (19.8)	46 (50.5)	21 (23.1)
2018년 명 (비율)	63 (100)	0 (0)	1 (1.6)	3 (4.8)	4 (6.3)	40 (63.5)	15 (23.8)
2019년 명 (비율)	56 (100)	0 (0)	0 (0)	2 (3.6)	10 (17.9)	29 (51.8)	15 (26.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50.8%, 3년 이상 24.7%, 1년 미만 24.5%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미만 증가 추세
- 2019년 1년 이상 3년 미만 51.8%, 1년 미만 26.8%, 3년 이상 21.4%
- 2019년 전년 대비 3년 이상 5년 미만 증가, 1년 이상 3년 미만 감소

16. 2019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명 (비율)	462 (100)	46 (10.0)	21 (4.5)	49 (10.6)	65 (14.1)	106 (22.9)	84 (18.2)	39 (8.4)	10 (2.2)	17 (3.7)	25 (5.4)

16-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42 (100)	295 (12.6)	170 (7.3)	273 (11.7)	446 (19.0)	457 (19.5)	339 (14.5)	155 (6.6)	86 (3.7)	60 (2.6)	61 (2.6)
2015년	명 (비율)	516 (100)	95 (18.4)	65 (12.6)	71 (13.8)	92 (17.8)	75 (14.5)	55 (10.7)	30 (5.8)	21 (4.1)	5 (1)	7 (1.4)
2016년	명 (비율)	461 (100)	60 (13)	38 (8.2)	49 (10.6)	81 (17.6)	85 (18.4)	82 (17.8)	29 (6.3)	13 (2.8)	14 (3)	10 (2.2)
2017년	명 (비율)	477 (100)	45 (9.4)	31 (6.5)	61 (12.8)	122 (25.6)	92 (19.3)	58 (12.2)	29 (6.1)	21 (4.4)	13 (2.7)	5 (1.0)
2018년	명 (비율)	426 (100)	49 (11.5)	15 (3.5)	43 (10.1)	86 (20.2)	99 (23.2)	60 (14.1)	28 (6.6)	21 (4.9)	11 (2.6)	14 (3.3)
2019년	명 (비율)	462 (100)	46 (10.0)	21 (4.5)	49 (10.6)	65 (14.1)	106 (22.9)	84 (18.2)	39 (8.4)	10 (2.2)	17 (3.7)	25 (5.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처리 중 120일 이내 31.5%,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0%, 211일 이상 15.5%
- 연도별 분석결과 120일 이내 감소, 121일 이상 증가 추세
- 2019년 처리 중 120일 이내 25.1%,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5.2%, 211일 이상 19.7%
- 2019년 전년 대비 120일 이상 210일 이내 감소, 120일 이내 동일

17. 2019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374 (100)	136 (36.4)	117 (31.3)	19 (5.1)	238 (63.6)

※ 이송 등 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889 (100)	866 (45.8)	644 (34.1)	222 (11.8)	1,023 (54.2)
2015년	명 (비율)	413 (100)	219 (53)	163 (39.5)	56 (13.6)	194 (47)
2016년	명 (비율)	358 (100)	174 (48.6)	126 (35.2)	48 (13.4)	184 (51.4)
2017년	명 (비율)	390 (100)	177 (45.4)	119 (30.5)	58 (14.9)	213 (54.6)
2018년	명 (비율)	354 (100)	160 (45.2)	119 (33.6)	41 (11.6)	194 (54.8)
2019년	명 (비율)	374 (100)	136 (36.4)	117 (31.3)	19 (5.1)	238 (63.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54.2%,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34.1%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감소 추세
- 2019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63.6%,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31.3%
- 2019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감소

18. 2019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합계	173	2	15	10	1	5	0	2	7	19	12	5	12	0	3	11	20	10	1	4	0	24	1	2	2	2	0	3	0	2	
군형법위반	65	2	11	1	2			1	2	15	12	4	4		1	2	8	10	1	4	0	7	1	2	2			1	1		
형법위반	54		4	2		3			1	3	1	4	1	5	2	1	8	4	1	2		9			2			1			
성폭법위반	37			6						2	3	7		2		7	3	2		1		2						1	1		
아청법위반	12			1												1	1	2		1		6									
기타	5			1							1		1					2													

1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기
5년 평균율	합계	871	23	56	36	1	26	0	10	36	78	42	18	38	1	19	114	138	55	5	29	0	126	1	7	4	1	5	0	2	
	군형법위반	297	14	42	0	1	11	0	6	13	59	0	16	14	1	6	13	46	0	1	1	0	44	1	5	0	1	1	0	1	
	형법위반	257	5	11	8	0	8	0	1	9	9	14	2	18	0	8	25	52	25	3	11	0	42	0	1	2	0	3	0	0	
	성폭법위반	211	4	2	22	0	4	0	2	12	8	19	0	4	0	1	54	25	17	1	7	0	25	0	1	1	0	1	0	1	
	아청법위반	90	0	0	5	0	1	0	0	2	2	5	0	1	0	4	22	15	9	0	10	0	14	0	0	0	0	0	0	0	
	기타	16	0	1	1	0	2	0	1	0	0	4	0	1	0	0	0	0	4	0	0	0	1	0	0	0	1	0	0	0	
2015년	소계	182	6	5	5		7			12	17	3	3	2	1	5	38	41	8	1	7		17		2	1		1			
	군형법위반	69	3	4			3			6	13		3		1	3	4	16			1		11		1						
	형법위반	42	3		1		1			1	1	1		1	1	1	8	11	3	1	3		4		1			1			
	성폭법위반	41		1	3		1			4	1	1					16	9	3				2								
	아청법위반	26			1					1	2			1	1	1	10	5	2		3								1		
	기타	4					2					1																1			
2016년	소계	163	4	15	6		5		1	8	11	7	6	5	1	28	23	5		8		29						1			
	군형법위반	56	4	11			3		1	3	10		5	1		2	7					9									
	형법위반	44		3	1					1		2	1	3		4	10	2		2		14						1			
	성폭법위반	42			4		2			3	1	3		1		17	5	1		1	1	4									
	아청법위반	20			1					1		2			1	5	1	2		5		2									
	기타	1																													
2017년	소계	190	6	13	10		6		5	5	18	8	1	10	3	19	26	14	2	7		34		3							
	군형법위반	59	2	9			1		2		16		1	5	1	1	9			1		9		2							
	형법위반	58	2	3	3		3			3	1	2		4	2	5	9	6	1	3		11									
	성폭법위반	53	2	1	5		1		2	2	1	4		1		9	5	4		4		11		1							
	아청법위반	18			2		1					2				4	3	3				3									
	기타	2								1																					
2018년	소계	163	5	8	5		3		2	4	13	12	3	9	7	18	28	18	1	3		22					1	1			
	군형법위반	48	3	7			2		2	2	5		3	4	1	4	6					8						1			
	형법위반	59		1	1		1			1	6	5		5	3	7	14	10		1		4									
	성폭법위반	38	2		4					1	2	4			1	5	3	7	1	1		6					1				
	아청법위반	14										1			2	2	5			1		3									
	기타	4										2										1									
2019년	소계	173	2	15	10	1	5	0	2	7	19	12	5	12	0	3	11	20	10	1	4	0	24	1	2	2	0	3	0	2	
	군형법위반	65	2	11		1	2		1	2	15		4	4	1	2	8					7	1	2				1	1		
	형법위반	54		4	2		3		1	3	1	4	1	5	2	1	8	4	1	2		9				2		1			
	성폭법위반	37			6					2	3	7		2		7	3	2		1		2						1	1		
	아청법위반	12			1											1	1	2		1		6									
	기타	5			1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4.1%, 아청법위반 10.3%, 신분별 병 53.6%, 준·부사관 26.6%, 장교 17.5%, 군무원 2.3%, 처분별 집행유예 32%, 자유형 20%, 재산형 15.7%, 무죄 11.2%
- 연도별 분석결과 범죄별 군형법위반 증가, 아청법위반 감소 추세, 신분별 준·부사관 증가, 병 감소 추세, 처분별 집행유예·재산형·무죄 증가, 자유형 감소 추세
- 2019년 군형법위반 37.6%, 아청법위반 6.9%, 전년 대비 군형법위반 증가
- 2019년 병 40.5%, 준·부사관 33.5%, 장교 20.2%, 전년 대비 준·부사관 증가, 장교 및 병 감소
- 2019년 집행유예 32.3%, 재산형 19.6%, 자유형 12.1%, 무죄 13.9%, 전년 대비 집행유예 및 무죄 증가, 자유형 및 재산형 감소

19. 2019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6 (100)	1 (16.7)	4 (66.7)	0 (0)	0 (0)	0 (0)	1 (16.6)

1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 (100)	4 (17.4)	13 (56.5)	0 (0)	0 (0)	2 (8.7)	4 (17.4)
2015년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0 (0)	0 (0)	2 (50)
2016년	명 (비율)	6 (100)	1 (16.7)	5 (83.3)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5 (100)	2 (40)	1 (20)	0 (0)	0 (0)	2 (40)	0 (0)
2018년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2019년	명 (비율)	6 (100)	1 (16.7)	4 (66.7)	0 (0)	0 (0)	0 (0)	1 (16.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56.5%, 자유형 17.4%, 무죄 8.7%
- 2019년 집행유예 66.7%, 자유형 16.7%
- 2019년 전년 대비 민간인 사건 증가

20. 2019년 항소사건 무죄 선고 현황(16명)

사건번호	계급	죄명	1심 선고결과	2심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18노191	중사	준강제추행	벌금300만원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다소 의심이 있고, 달리 군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2019. 8. 9. 상고기각
2018노231	소령	군인등강제추행(일부 인죄 성폭범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추행) 등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무단이탈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함	진행중
2018노236	대위(진)	준강제추행	벌금300만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진술은 일부 착각이나 오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움	2019. 10. 17. 상고기각
2018노256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이 부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진행중
2018노264	상병	준강간	징역2년6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외관상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함	2019. 5. 30. 상고기각
2018노272	중사	상관명예훼손 등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2019. 7. 11. 상고기각
2018노289	상사	강제추행 등	벌금500만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2019. 8. 30. 상고기각
2018노371	중령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이라도 각 공소사실 기재에 나타난 행위 태양 및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고 보이지 않음	진행중

사건번호	계급	죄명	1심 선고결과	2심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18노390	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50만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019. 9. 25. 상고기각
2018노415	상사	협박 등	벌금100만원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거나 발언 자체가 실질적인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그 증명이 부족함	2019. 10. 17. 상고기각
2019노41	중위	모욕	벌금50만원	피고인의 "목을 떠다"는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9. 10. 18. 상고기각
2019노70	중사	특수협박 등	벌금500만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란한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진행중
2019노198	소령	사문서위조 등	벌금100만원	이혼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시킨 행위는 합치된 이혼의사에 따라 이혼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진행중
2019노222	가군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250만원	이 사건 사진 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19노233	상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선고유예	피고인에게 공문서의 허위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각 서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함	-
2019노238	상사	강제추행	벌금2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들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1. 2018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명	374	204	54.5

21-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5년 평균율	1,889	845	44.7
2015년	413	128	31
2016년	358	168	46.9
2017년	390	172	44.1
2018년	354	173	48.9
2019년	374	204	54.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대법원 상고율 44.7%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율 증가 추세
- 2019년 대법원 상고율 54.5%, 전년 대비 상고율 증가

22. 2019년 상고사건 처리 결과

구분	합계	판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기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상고기각			
명 (비율)	198 (100)	5 (2.5)	4 (2)	0 (0)	1 (0.5)	184 (93)	9 (4.5)	0 (0)	2.6

※ 2심 판결 파기율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100 [상고취하, 기타 제외]

22-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처리 현황

구분	합계	판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기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상고기각			
5년 평균율	858 (100)	24 (2.9)	23 (2.8)	0 (0)	1 (0.1)	734 (85.5)	99 (11.5)	0 (0)	3.3
2015년	168 (100)	11 (6.5)	11 (6.5)	0 (0)	0 (0)	130 (77.4)	27 (16.1)	0 (0)	7.8
2016년	158 (100)	4 (2.5)	4 (2.5)	0 (0)	0 (0)	134 (84.8)	20 (12.7)	0 (0)	2.9
2017년	168 (100)	1 (0.6)	1 (0.6)	0 (0)	0 (0)	139 (82.7)	28 (16.7)	0 (0)	0.7
2018년	166 (100)	4 (2.4)	4 (2.4)	0 (0)	0 (0)	147 (88.6)	15 (9)	0 (0)	2.6
2019년	198 (100)	5 (2.5)	4 (2)	0 (0)	1 (0.5)	184 (93)	9 (4.5)	0 (0)	2.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상고기각 85.5%, 파기 3.3%, 상고취하 11.5%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파기율 계속 5% 이상 되다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
- 2019년 2심 판결 파기율 2.6%(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파기환송 1건 포함), 전년과 동일
- 2019년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 4.5%, 전년 대비 감소

23. 2019년 상고심 파기 환송 등 현황

사건번호	계 급	죄 명	처 분 결 과	파 기 사유
2018노192	육군준위	성폭범위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 징역 8년, 성폭력치료 160시간 - 2심 : 항소기각 - 3심 : 파기환송 - 환송후 :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 일부 무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p>군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p>
2018노237	육군중령	폭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 무죄 - 2심 : 벌금 2,000,000원 - 3심 : 파기환송 - 환송후 : 벌금 2,000,000원 	<p>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하였으나,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이 이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2심(고등군사법원) 판결이 정당함</p>
2018노382	육군중사	초병수소이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심 : 항소기각결정 - 3심 : 파기환송 - 환송후 : 선고유예 ※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p>항소장에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하기에 피고인은 다시 선고받기 위해 이 사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한 사실 만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한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부적법 하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재항고인의 항소 제기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 해당함</p>
2018노361	육군상사	강제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 벌금 2,000,000원 - 2심 : 항소기각 - 3심 : 파기환송 - 환송후 : 무죄 	<p>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들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p>

※ 법리오해: 4건

24. 2019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명 (비율)	136 (100)	97 (71.3)	8 (5.9)	14 (10.3)	17 (12.5)

24-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91 (100)	360 (73.3)	44 (9.0)	34 (6.9)	53 (10.8)
2015년	명 (비율)	83 (100)	55 (66.3)	11 (13.3)	6 (7.2)	11 (13.2)
2016년	명 (비율)	72 (100)	53 (73.6)	10 (13.9)	2 (2.8)	7 (9.7)
2017년	명 (비율)	101 (100)	87 (86)	4 (4)	5 (5)	5 (5)
2018년	명 (비율)	99 (100)	68 (68.7)	11 (11.1)	7 (7.1)	13 (13.1)
2019년	명 (비율)	136 (100)	97 (71.3)	8 (5.9)	14 (10.3)	17 (12.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73.3%, 보석청구 9%, 형사보상청구 6.9%
- 2019년 재정신청 71.3%, 형사보상청구 10.3%, 보석청구 5.9%
- 2019년 전년대비 재정신청 및 형사보상청구 증가, 보석청구 감소

25. 2019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112	1	91	20	10	0	10	13	11	2	0	16	1	12	3

25-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5년평균	368	4	331	33	44	4	40	34	29	4	1	50	4	41	5
2015년	76	0	76	0	11	1	10	7	6	1	0	10	0	10	0
2016년	61	1	60	0	10	2	8	4	4	0	0	6	0	6	0
2017년	49	0	40	9	4	0	4	5	4	0	1	6	0	5	1
2018년	70	2	64	4	9	1	8	5	4	1	0	12	3	8	1
2019년	112	1	91	20	10	0	10	13	11	2	0	16	1	12	3

○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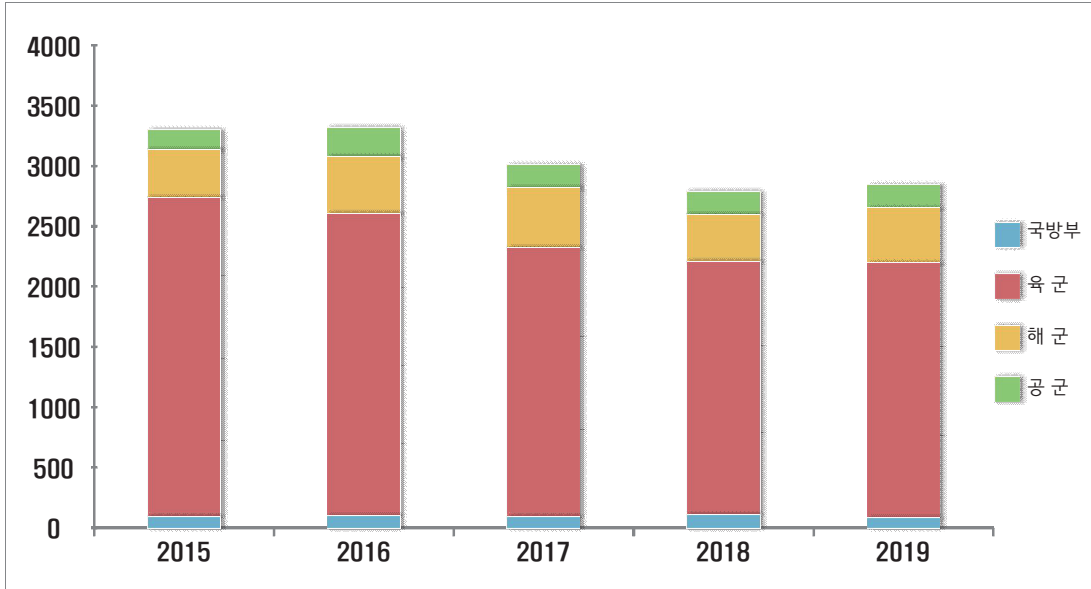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1%, 보석청구 허가율 9%,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11.7%
- 2019년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0.8%, 재정신청 이송률 17.8%(대법원 2016도1891 결정), 보석청구 허가율 0%,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15%
- 2019년 전년 대비 재정신청 기각율, 보석청구 기각율,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증가



보통군사법원 종합

□ 국방부/각 군 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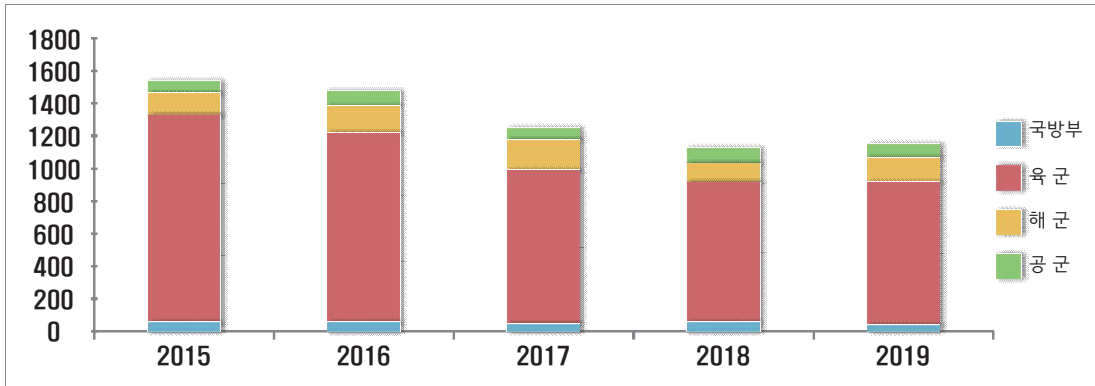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5,226 (100)		463 (3)		11,584 (76)		2,208 (15)		971 (6)	
	공판 약식	6,539 (100)	8,687 (100)	246 (4)	217 (3)	5,114 (78)	6,470 (74)	756 (12)	1,452 (17)	423 (6)	548 (6)
2015년	명 (비율)	3,292 (100)		91 (3)		2,644 (80)		391 (12)		166 (5)	
	공판 약식	1,538 (100)	1,754 (100)	54 (4)	37 (2)	1,270 (82)	1,374 (79)	139 (9)	252 (14)	75 (5)	91 (5)
2016년	명 (비율)	3,308 (100)		97 (3)		2,499 (76)		474 (14)		238 (7)	
	공판 약식	1,479 (100)	1,829 (100)	54 (4)	43 (2)	1,162 (79)	1,337 (73)	171 (11)	303 (17)	92 (6)	146 (8)
2017년	명 (비율)	3,006 (100)		88 (3)		2,231 (74)		494 (17)		193 (6)	
	공판 약식	1,248 (100)	1,758 (100)	45 (3)	43 (2)	945 (76)	1,286 (73)	184 (15)	310 (18)	74 (6)	119 (7)
2018년	명 (비율)	2,780 (100)		105 (4)		2,096 (75)		393 (14)		186 (7)	
	공판 약식	1,126 (100)	1,654 (100)	55 (5)	50 (3)	859 (77)	1,237 (75)	115 (10)	278 (17)	97 (8)	89 (5)
2019년	명 (비율)	2,840 (100)		82 (3)		2,114 (74)		456 (16)		188 (7)	
	공판 약식	1,148 (100)	1,692 (100)	38 (3)	44 (3)	878 (77)	1,236 (73)	147 (13)	309 (18)	85 (7)	103 (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6%, 해군 15%, 공군 6%, 국방부 3%
- 전체 형사사건 감소하던 중 2019년 소폭 증가

2.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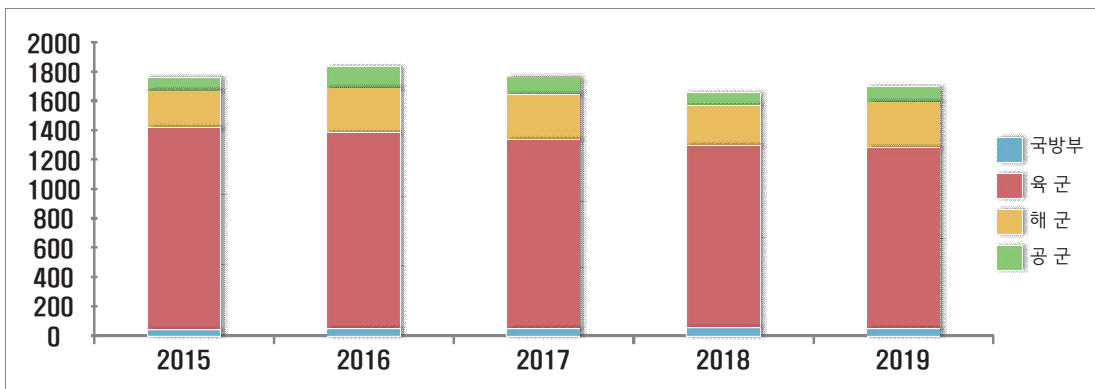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6,539 (100)	246 (4)	5,114 (78)	756 (12)	423 (6)
2015년	명 (비율)	1,538 (100)	54 (4)	1,270 (82)	139 (9)	75 (5)
2016년	명 (비율)	1,479 (100)	54 (4)	1,162 (79)	171 (11)	92 (6)
2017년	명 (비율)	1,248 (100)	45 (3)	945 (76)	184 (15)	74 (6)
2018년	명 (비율)	1,126 (100)	55 (5)	859 (77)	115 (10)	97 (8)
2019년	명 (비율)	1,148 (100)	38 (3)	878 (77)	147 (13)	85 (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8%, 해군 12%, 공군 6%, 국방부 4%
- 전체 공판사건 감소하던 중 2019년 소폭 증가

3.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8,687 (100)	217 (3)	6,470 (74)	1,452 (17)	548 (6)
2015년	명 (비율)	1,754 (100)	37 (2)	1,374 (79)	252 (14)	91 (5)
2016년	명 (비율)	1,829 (100)	43 (2)	1,337 (73)	303 (17)	146 (8)
2017년	명 (비율)	1,758 (100)	43 (2)	1,286 (73)	310 (18)	119 (7)
2018년	명 (비율)	1,654 (100)	50 (3)	1,237 (75)	278 (17)	89 (5)
2019년	명 (비율)	1,692 (100)	44 (3)	1,236 (73)	309 (18)	103 (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약식사건 중 육군 74%, 해군 17%, 공군 6%, 국방부 3%
- 전체 약식사건 감소하던 중 2019년 소폭 증가

4.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2,840 (100)	343 (12)	814 (29)	1,611 (57)	63 (2)	9 (=0)
국방부 (비율)	82 (100)	33 (40)	18 (22)	18 (22)	13 (16)	0 (0)
육 군 (비율)	2,114 (100)	221 (10)	555 (26)	1,301 (62)	31 (2)	6 (=0)
해 군 (비율)	456 (100)	50 (11)	159 (35)	235 (52)	11 (2)	1 (=0)
공 군 (비율)	188 (100)	39 (21)	82 (44)	57 (30)	8 (4)	2 (1)

○ 분석

- 2019년 전체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중 병 57%, 준·부사관 29%, 장교 12%, 군무원 2%
- 국방부 장교 40%, 육군 병 62%, 해군 병 52%, 공군 준·부사관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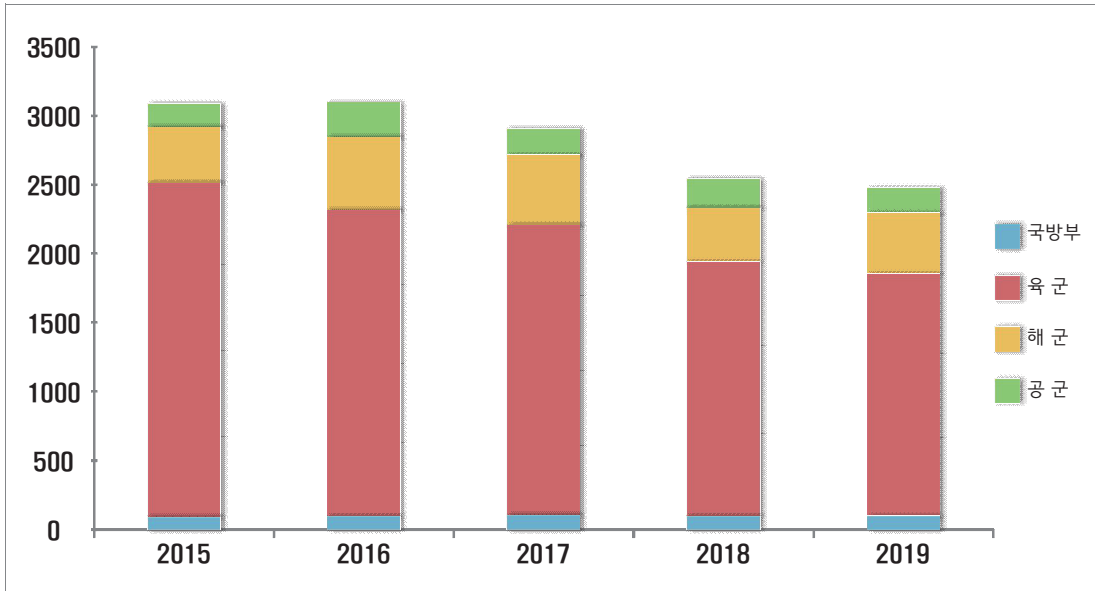
5.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범죄별 접수 현황

구 분	죄 명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2,840	343	814	1,611	63	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227	29	55	134	2	7
	주요 형법범	379	37	71	264	7	0
	교통범죄	709	139	386	151	33	0
	성범죄(군형법 포함)	415	49	108	252	5	1
	폭력범죄	447	21	77	344	5	0
	군기법/국보법	2	1	1	0	0	0
	기타법률위반	661	67	116	466	11	1
국방부	소계	82	33	18	18	13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7	2	3	1	1	
	주요 형법범	26	14	4	5	3	
	교통범죄	27	6	9	3	9	
	성범죄(군형법 포함)	3		2	1		
	폭력범죄	5			5		
	군기법/국보법	0					
	기타법률위반	14	11		3		
육 군	소계	2,114	221	555	1,301	31	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46	17	27	97	0	5
	주요 형법범	245	9	34	200	2	0
	교통범죄	488	95	256	122	15	0
	성범죄(군형법 포함)	318	33	77	203	5	0
	폭력범죄	325	18	58	247	2	0
	군기법/국보법	1	0	1	0	0	0
	기타법률위반	591	49	102	432	7	1
해 군	소계	456	50	159	235	11	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52	3	14	33	1	1
	주요 형법범	70	3	21	44	2	
	교통범죄	140	27	85	22	6	
	성범죄(군형법 포함)	58	8	14	36		
	폭력범죄	95	3	13	79		
	군기법/국보법	1	1				
	기타법률위반	40	5	12	21	2	
공 군	소계	188	39	82	57	8	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22	7	11	3		1
	주요 형법범	38	11	12	15		
	교통범죄	54	11	36	4	3	
	성범죄(군형법 포함)	36	8	15	12		1
	폭력범죄	22		6	13	3	
	군기법/국보법	0					
	기타법률위반	16	2	2	10	2	

○ 분석

- 2019년 전체 형사사건 범죄별 접수 중 교통범죄 25%, 폭력범죄 16%, 성범죄(군형법 포함) 15%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국방부 4%, 육군 69%, 해군 20%, 공군 7%
-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국방부 1%, 육군 73%, 해군 21%, 공군 5%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국방부 1%, 육군 77%, 해군 14%, 공군 8%

6.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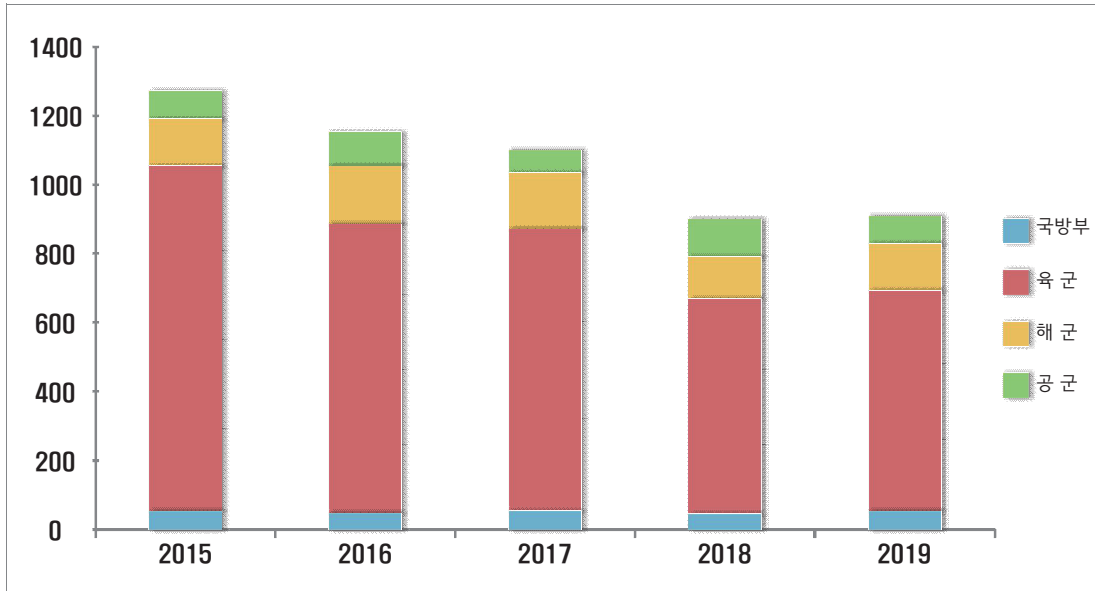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4,099 (100)		463 (3)		10,352 (74)		2,276 (16)		1,008 (7)	
	공판 약식	5,330 (100)	8,767 (100)	247 (5)	216 (2)	3,919 (73)	6,433 (74)	726 (14)	1,550 (18)	438 (8)	568 (6)
2015년	명 (비율)	3,086 (100)		84 (3)		2,423 (79)		407 (13)		172 (5)	
	공판 약식	1,271 (100)	1,815 (100)	51 (4)	33 (2)	1,003 (79)	1,420 (78)	136 (11)	271 (15)	81 (6)	91 (5)
2016년	명 (비율)	3,093 (100)		92 (3)		2,220 (72)		530 (17)		251 (8)	
	공판 약식	1,153 (100)	1,940 (100)	46 (4)	46 (2)	838 (73)	1,382 (71)	168 (14)	362 (19)	101 (9)	150 (8)
2017년	명 (비율)	2,901 (100)		98 (3)		2,107 (73)		509 (18)		187 (6)	
	공판 약식	1,099 (100)	1,802 (100)	55 (5)	43 (2)	815 (74)	1,292 (72)	164 (15)	345 (19)	65 (6)	122 (7)
2018년	명 (비율)	2,540 (100)		93 (4)		1,847 (73)		386 (15)		214 (8)	
	공판 약식	899 (100)	1,641 (100)	44 (5)	49 (3)	624 (70)	1,223 (75)	121 (13)	265 (16)	110 (12)	104 (6)
2019년	명 (비율)	2,479 (100)		96 (4)		1,755 (71)		444 (18)		184 (7)	
	공판 약식	908 (100)	1,569 (100)	51 (6)	45 (3)	639 (70)	1,116 (71)	137 (15)	307 (20)	81 (9)	101 (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4%, 해군 16%, 공군 7%, 국방부 3%
- 2019년 전년 대비 국방부·해군 사건 증가, 육군·공군 사건 감소

7.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330 (100)	247 (5)	3,919 (73)	726 (14)	438 (8)
2015년	명 (비율)	1,271 (100)	51 (4)	1,003 (79)	136 (11)	81 (6)
2016년	명 (비율)	1,153 (100)	46 (4)	838 (73)	168 (14)	101 (9)
2017년	명 (비율)	1,099 (100)	55 (5)	815 (74)	164 (15)	65 (6)
2018년	명 (비율)	899 (100)	44 (5)	624 (70)	121 (13)	110 (12)
2019년	명 (비율)	908 (100)	51 (6)	639 (70)	137 (15)	81 (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3%, 해군 14%, 공군 8%, 국방부 5%
- 2019년 전년 대비 국방부·육군·해군 사건 증가, 공군 사건 감소

8. 2019년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908 (100)	124 (13)	226 (25)	525 (58)	25 (3)	8 (1)
국방부 (비율)	51 (100)	27 (53)	10 (20)	5 (10)	9 (17)	0 (0)
육 군 (비율)	639 (100)	68 (11)	137 (21)	421 (66)	8 (1)	5 (1)
해 군 (비율)	137 (100)	15 (11)	49 (36)	67 (49)	5 (3)	1 (1)
공 군 (비율)	81 (100)	14 (17)	30 (37)	32 (40)	3 (4)	2 (2)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중 병 58%, 준·부사관 25%, 장교 13%, 군무원 3%
- 국방부 장교 53%, 육군 병 66%, 해군 병 49%, 공군 병 40%

9. 2019년 공판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 타
합계 (비율)	908 (100)	166 (18)	160 (18)	65 (7)	243 (27)	127 (14)	3 (=0)	144 (16)
국방부 (비율)	51 (100)	5 (10)	25 (49)	5 (10)	6 (12)	3 (5)	1 (2)	6 (12)
육 군 (비율)	639 (100)	112 (17)	102 (16)	45 (7)	166 (26)	94 (15)	1 (1)	119 (18)
해 군 (비율)	137 (100)	35 (25)	22 (16)	7 (5)	43 (31)	20 (15)	1 (1)	9 (7)
공 군 (비율)	81 (100)	14 (17)	11 (14)	8 (10)	28 (35)	10 (12)	0 (0)	10 (12)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범죄별 처리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2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8%, 폭력범죄 14%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68%, 해군 18%, 공군 12%
- 전체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사건 중 국방부 3%, 육군 68%, 해군 21%, 공군 8%
-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74%, 해군 16%, 공군 8%

10. 2019년 공판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합계	합계	908	0	66	259	275	67	72	16	152	1	
	장 교	장성	6	0	1	2	0	0	3	0	0	0
		영관	50	0	2	8	26	3	8	1	2	0
		위관	68	0	3	19	18	9	6	4	9	0
	준·부사관	226	0	13	71	87	22	23	3	6	1	
	병	525	0	46	150	134	31	26	7	131	0	
	군무원	25	0	1	5	9	0	6	1	3	0	
민간인	8	0	0	4	1	2	0	0	1	0		
국방부	소계	51		5	9	21	1	9		6		
	장 교	장성	6		1	2			3			
		영관	20			4	10	1	3		2	
		위관	1				1					
	준·부사관	10		3	2	4		1				
	병	5				3				2		
	군무원	9		1	1	3		2		2		
민간인												
육 군	소계	639		49	178	185	35	51	12	129		
	장 교	장성										
		영관	21		1	3	12	1	3	1		
		위관	47		2	13	9	5	6	4	8	
	준·부사관	137		7	43	54	9	17	1	6		
	병	421		39	114	106	19	23	6	114		
	군무원	8			2	3		2		1		
민간인	5			3	1	1						
해 군	소계	137		10	50	41	18	7	4	7		
	장 교	장성										
		영관	7			1	3	1	2			
		위관	8		1	2	2	2			1	
	준·부사관	49		2	15	18	9	3	2			
	병	67		7	31	16	5	1	1	6		
	군무원	5			1	2		1	1			
민간인	1					1						
공 군	소계	81		2	22	28	13	5		10	1	
	장 교	장성										
		영관	2		1		1					
		위관	12			4	6	2				
	준·부사관	30		1	11	11	4	2			1	
	병	32			5	9	7	2		9		
	군무원	3			1	1		1				
민간인	2			1					1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처분별 처리 중 재산형 30%, 집행유예 28%, 무죄 8%, 선고유예 7%, 자유형 7%, 이송 17%
- 국방부 처분별 재산형 41%, 신분별 장교의 경우 재산형 41%, 집행유예·무죄 각 22%
- 육군 처분별 재산형 29%, 신분별 병의 경우 집행유예 27%, 이송 27%
- 해군 처분별 집행유예 36%, 신분별 병의 경우 집행유예 46%, 이송 9%
- 공군 처분별 재산형 34%, 신분별 병의 경우 재산형 28%, 이송 28%

11. 2019년 공판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합계	908	388	240	115	71	45	25	4	3	5	12
	구 속	91	36	23	13	8	9	2	0	0	0	0
	불구속	817	352	217	102	63	36	23	4	3	5	12
국방부	소 계	51	10	4	5	6	3	8	1		4	10
	구 속	3			1	1	1					
	불구속	48	10	4	4	5	2	8	1		4	10
육 군	소 계	639	274	186	85	49	29	14	2			
	구 속	58	20	19	10	3	4	2				
	불구속	581	254	167	75	46	25	12	2			
해 군	소 계	137	61	31	13	10	12	3	1	3	1	2
	구 속	22	9	4	2	3	4					
	불구속	115	52	27	11	7	8	3	1	3	1	2
공 군	소 계	81	43	19	12	6	1					
	구 속	8	7			1						
	불구속	73	36	19	12	5	1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처리일수 중 120일 이내 처리 82%(구속 79%, 불구속 82%)
- 120일 이내 처리 국방부 37%, 육군 85%, 해군 77%, 공군 91%

12. 2019년 공판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계 (비율)	66 (100)	0 (0)	2 (3)	5 (8)	11 (17)	26 (39)	22 (33)
국방부 (비율)	5 (100)	0 (0)	0 (0)	0 (0)	3 (60)	2 (40)	0 (0)
육 군 (비율)	49 (100)	0 (0)	1 (2)	4 (8)	8 (16)	15 (31)	21 (43)
해 군 (비율)	10 (100)	0 (0)	1 (10)	1 (10)	0 (0)	7 (70)	1 (10)
공 군 (비율)	2 (100)	0 (0)	0 (0)	0 (0)	0 (0)	2 (100)	0 (0)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39%, 1년 미만 33%, 3년 이상 28%
-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국방부 40%, 육군 31%, 해군 70%, 공군 100%
- 자유형 처리 중 3년 이상 국방부 60%, 육군 26%, 해군 20%, 공군 0%

13. 2019년 공판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합계	239	4	9	8	1	5	1	2	8	24	17	7	6	1	2	17	39	24	4	11	0	42	0	1	2	0	3	0	1	
	군형법위반	80	2	6	2	1	2	0	1	0	15	2	5	4	0	1	3	17	0	3	0	0	15	0	0	0	0	1	0	0	
	형법위반	69	0	2	3	0	2	1	0	3	3	4	1	1	0	0	7	8	9	0	6	0	16	0	0	1	0	2	0	0	
	성폭법위반	64	1	1	2	0	1	0	1	5	4	9	0	0	1	0	6	8	12	0	3	0	7	0	1	1	0	0	0	1	
	아청법위반	23	1	0	1	0	0	0	0	0	2	2	1	1	0	0	1	5	2	1	2	0	4	0	0	0	0	0	0	0	
	기타	3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국방부	소계	6									1							1				1		2		1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3									1								1						1						
	아청법위반	0																													
	기타	0																													
육 군	소계	163	2	5	5	0	3	1	2	5	16	6	2	6	2	14	26	18	2	10		35		1			1		1		
	군형법위반	49	1	2	1		1		1	11	1	1	4		1	2	11		1			11									
	형법위반	58		2	2		2	1		2	3	2	1	1		6	6	9		6		14					1				
	성폭법위반	34		1	1				1	3	1	3				5	3	6		2		6		1						1	
	아청법위반	19	1		1					1				1		1	5	2	1	2		4									
	기타	3													1		1	1													
해 군	소계	43	1	2	2		2			2	4	4	4	1		3	12	2	1		2						1				
	군형법위반	19		2	1		1			3		3				1	5		1		1						1				
	형법위반	8			1				1		2					1	2				1										
	성폭법위반	15	1				1		1	1	2			1		1	5	2													
	아청법위반	1											1																		
	기타																														
공 군	소계	27	1	2	1	1				1	4	6	1			1	3	1	1		4										
	군형법위반	11	1	2		1				1	1	1				1		1			2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2			1				1	2	3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 분석

- 2019년 전체 성범죄 처리 중 신분별 병 57%, 준·부사관 27%, 장교 13%, 군무원 3%, 처분별 집행유예 30%, 재산형 21%, 자유형 12%
- 국방부 재산형 67%, 육군 집행유예 29%, 재산형 18%, 이송 25%, 해군 집행유예 42%, 재산형 19%, 공군 재산형 37%, 집행유예 26%, 이송 15%

14. 2019년 공판사건 무죄 현황

구 분	범죄유형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72	17	23	26	6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4	1	3	0	0	0
	주요 형법범	14	5	4	5	0	0
	교통범죄	5	0	5	0	0	0
	성범죄(군형법 포함)	28	7	6	12	3	0
	폭력범죄	5	1	2	1	1	0
	군기법/국보법	0	0	0	0	0	0
기타법률위반	16	3	3	8	2	0	
국방부	소계	9	6	1		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6	5	1			
	교통범죄						
	성범죄(군형법 포함)	1				1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기타법률위반	2	1			1		
육 군	소계	51	9	17	23	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4	1	3			
	주요 형법범	7		3	4		
	교통범죄	3		3			
	성범죄(군형법 포함)	23	5	6	11	1	
	폭력범죄	4	1	1	1	1	
	군기법/국보법						
기타법률위반	10	2	1	7			
해 군	소계	7	2	3	1	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1			1		
	교통범죄	2		2			
	성범죄(군형법 포함)	3	2			1	
	폭력범죄	1		1			
	군기법/국보법						
기타법률위반							
공 군	소계	5		2	2	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군형법 포함)	1			1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기타법률위반	4		2	1	1		

○ 분석

- 2019년 전체 무죄 판결 중 신분별 병 36%, 준·부사관 32%, 장교 24%, 군무원 8%, 범죄별 성범죄(군형법 포함) 3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6%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육군 82%, 해군 11%, 국방부·공군 각 4%

15. 2019년 공판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합계 (비율)	897 (100)	305 (34)	440 (49)	152 (17)
국방부 (비율)	51 (100)	38 (74)	7 (14)	6 (12)
육 군 (비율)	628 (100)	194 (31)	305 (49)	129 (20)
해 군 (비율)	137 (100)	44 (32)	86 (63)	7 (5)
공 군 (비율)	81 (100)	29 (36)	42 (52)	10 (12)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중 1심 확정 49%, 항소 34%(이송 제외한 항소율 41%)
- 이송 제외한 항소율 국방부 84%, 육군 39%, 해군 34%, 공군 41%

16. 2019년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합계 (비율)	297 (100)	108 (36)	80 (27)	109 (37)
국방부 (비율)	38 (100)	12 (32)	8 (21)	18 (47)
육 군 (비율)	194 (100)	79 (41)	59 (30)	56 (29)
해 군 (비율)	44 (100)	8 (18)	10 (23)	26 (59)
공 군 (비율)	21 (100)	9 (43)	3 (14)	9 (43)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피고인 항소 36%, 군검사 항소 27%, 쌍방 항소 37%
- 피고인의 항소율 국방부 79%, 육군 70%, 해군 77%, 공군 86%

17. 2019년 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합계 (비율)	730 (100)	457 (63)	119 (16)	338 (47)	273 (37)
국방부 (비율)	44 (100)	11 (25)	3 (7)	8 (18)	33 (75)
육 군 (비율)	485 (100)	327 (67)	83 (17)	244 (50)	158 (33)
해 군 (비율)	130 (100)	82 (63)	23 (18)	59 (45)	48 (37)
공 군 (비율)	71 (100)	37 (52)	10 (14)	27 (38)	34 (48)

○ 분석

- 2019년 전체 공판사건 변호인 현황 국선 63%, 사선 37%
- 사선변호인 선임률 국방부 75%, 육군 33%, 해군 37%, 공군 48%
- 국선변호인 중 변호사 선정률 국방부 27%, 육군 25%, 해군 28%, 공군 27%

18. 2019년 약식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1,569 (100)	171 (11)	481 (31)	878 (56)	39 (2)	0 (0)
국방부 (비율)	45 (100)	13 (29)	11 (24)	12 (27)	9 (20)	0 (0)
육 군 (비율)	1,116 (100)	105 (9)	317 (28)	676 (61)	18 (2)	0 (0)
해 군 (비율)	307 (100)	32 (10)	107 (35)	160 (52)	8 (3)	0 (0)
공 군 (비율)	101 (100)	21 (21)	46 (45)	30 (30)	4 (4)	0 (0)

○ 분석

- 2019년 전체 약식사건 신분별 병 56%, 준·부사관 31%, 장교 11%, 군무원 2%
- 국방부 장교 29%, 육군 병 61%, 해군 병 52%, 공군 준·부사관 45%

19. 2019년 약식사건 범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법률
합계 (비율)	1,569 (100)	35 (2)	180 (11)	577 (37)	76 (5)	274 (18)	0 (0)	427 (27)
국방부 (비율)	45 (100)	2 (4)	7 (16)	23 (51)	1 (2)	3 (7)	0 (0)	9 (20)
육 군 (비율)	1,116 (100)	10 (1)	107 (10)	386 (34)	54 (5)	182 (16)	0 (0)	377 (34)
해 군 (비율)	307 (100)	19 (6)	44 (14)	128 (42)	14 (5)	75 (24)	0 (0)	27 (9)
공 군 (비율)	101 (100)	4 (4)	22 (22)	40 (39)	7 (7)	14 (14)	0 (0)	14 (14)

○ 분석

- 2019년 전체 약식사건 범죄별 교통범죄 37%, 폭력범죄 18%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국방부 4%, 육군 67%, 해군 22%, 공군 7%

20. 2019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합계 (비율)	1,569 (100)	1,420 (90)	108 (7)	41 (3)
국방부 (비율)	45 (100)	35 (78)	8 (18)	2 (4)
육 군 (비율)	1,116 (100)	989 (89)	89 (8)	38 (3)
해 군 (비율)	307 (100)	304 (99)	2 (1)	1 (=0)
공 군 (비율)	101 (100)	92 (91)	9 (9)	0 (0)

○ 분석

- 2019년 전체 약식사건 중 약식명령 90%, 공판절차 회부 7%, 이송 3%
- 2019년 이송 제외한 공판절차 회부율 국방부 19%, 육군 8%, 해군 1%, 공군 9%

21. 2019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 구속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12	6 (50)	175	115 (65)	30	23 (77)	13	8 (62)	230	152 (66)

○ 분석

- 2019년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6%
- 구속영장 발부율 국방부 50%, 육군 65%, 해군 77%, 공군 62%

■ 체포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0	0 (0)	26	21 (81)	12	11 (92)	2	2 (100)	40	34 (85)

○ 분석

- 2019년 전체 체포영장 발부율 85%
- 체포영장 발부율 육군 81%, 해군 92%, 공군 100%

■ 압수·수색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141	129 (91)	369	340 (92)	115	110 (96)	46	41 (89)	671	620 (92)

○ 분석

- 2019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
-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국방부 91%, 육군 92%, 해군 96%, 공군 89%

22. 2019년 구속 관련 신청사건 처리 현황

■ 보석허가청구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2	1 (50)	11	5 (46)	3	2 (67)	1	0 (0)	17	8 (47)

○ 분석

- 2019년 전체 보석허가청구 인용률 47%
- 보석허가청구 인용률 국방부 50%, 육군 46%, 해군 67%, 공군 0%

■ 구속적부심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2	0 (0)	14	2 (14)	2	0 (0)	2	0 (0)	20	2 (10)

○ 분석

- 2019년 전체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10%
-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육군 14%, 국방부·해군·공군 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 2019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82 (100)	38 (46.3)	44 (53.6)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63 (100)	246 (53.1)	217 (46.8)
2015년	명 (비율)	91 (100)	54 (59.3)	37 (40.7)
2016년	명 (비율)	97 (100)	54 (55.7)	43 (44.3)
2017년	명 (비율)	88 (100)	45 (51.1)	43 (48.8)
2018년	명 (비율)	105 (100)	55 (52.3)	50 (47.6)
2019년	명 (비율)	82 (100)	38 (46.3)	44 (53.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53%, 약식 사건 47%
- 전년 대비 공판 및 약식 사건 비율 감소

2.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38	44	20	13	7	11	6	12	5	8		
민간인	간접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1							1			
	군용물에관한죄	2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1						1				
	기타	1	2	1			2					
주요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5		3		1			1			
	문서인장죄	3	2	2	2	1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철도강도이죄											
	사기공갈죄	1		1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9	6	4	2	1	1	2	3	2		
특별범죄	교통법위반	2	5			1	2	1	1	2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3	17	2	4	1	5	2		6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중범죄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2	1			1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법외범죄	상해, 폭행죄	1	3					1	3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법률위반	6	8	6	5				3				

○ 분석

- 2019년 접수 중 교통범죄 33%, 주요형법범 3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7%, 폭력범죄 6%, 성범죄(군형법 포함) 5%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1%

3. 2019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82 (100)	33 (40.2)	18 (21.9)	18 (21.9)	13 (15.8)	0 (0)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63 (100)	223 (48.1)	83 (17.9)	71 (15.3)	84 (18.1)	2 (0.4)
2015년	명 (비율)	91 (100)	48 (52.7)	13 (14.2)	17 (18.6)	13 (14.2)	0 (0)
2016년	명 (비율)	97 (100)	47 (48.4)	19 (19.5)	11 (11.3)	19 (19.5)	1 (1)
2017년	명 (비율)	88 (100)	38 (43.1)	15 (17)	13 (14.7)	21 (23.8)	1 (1.1)
2018년	명 (비율)	105 (100)	57 (54.2)	18 (17.1)	12 (11.4)	18 (17.1)	0 (0)
2019년	명 (비율)	82 (100)	33 (40.2)	18 (21.9)	18 (21.9)	13 (15.8)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48%, 군무원 18%, 준·부사관 18%, 병 15%
- 2019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 소폭 감소 및 병 사건 소폭 증가
- 2019년 접수 중 장교 **40%**, 준·부사관 및 병 각 22%, 군무원 16%
- 2019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22% 감소

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38 (100)	20 (52.6)	7 (18.4)	6 (15.7)	5 (13.1)	0 (0)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46 (100)	136 (55.2)	35 (14.2)	37 (15)	36 (14.6)	2 (0.8)
2015년	명 (비율)	54 (100)	33 (61.1)	4 (7.4)	13 (24)	4 (7.4)	0 (0)
2016년	명 (비율)	54 (100)	27 (50)	9 (16.6)	8 (14.8)	9 (16.6)	1 (1.8)
2017년	명 (비율)	45 (100)	20 (44.4)	7 (15.5)	7 (15.5)	10 (22.2)	1 (2.2)
2018년	명 (비율)	55 (100)	36 (65.4)	8 (14.5)	3 (5.4)	8 (14.5)	0 (0)
2019년	명 (비율)	38 (100)	20 (52.6)	7 (18.4)	6 (15.7)	5 (13.1)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55%, 병 15%, 군무원 15%, 준·부사관 14%, 민간인 1%
- 연도별 각 신분별 접수 현황은 계속 변동
- 2019년 접수 중 장교 **53%**, 준·부사관 18%, 병 16%, 군무원 13%
- 2019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31% 감소

5.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96 (100)	51 (53.1)	27 (28.1)	10 (10.4)	5 (5.2)	9 (9.3)	0 (0)	45 (46.8)	13 (13.5)	11 (11.4)	12 (12.5)	9 (9.3)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63 (100)	247 (53.3)	132 (28.5)	35 (7.5)	39 (8.4)	38 (8.2)	3 (0.6)	216 (46.6)	86 (18.5)	47 (10.1)	34 (7.3)	49 (10.5)	0 (0)
2015년	명 (비율)	84 (100)	51 (60.7)	28 (33.3)	3 (3.5)	13 (15.4)	6 (7.1)	1 (1.1)	33 (39.2)	14 (16.6)	7 (8.3)	4 (4.7)	8 (9.5)	0 (0)
2016년	명 (비율)	92 (100)	46 (50)	28 (30.4)	3 (3.2)	9 (9.7)	5 (5.4)	1 (1)	46 (50)	21 (22.8)	11 (11.9)	3 (3.2)	11 (11.9)	0 (0)
2017년	명 (비율)	98 (100)	55 (56.1)	22 (22.4)	13 (13.2)	9 (9.1)	11 (11.2)	0 (0)	43 (43.8)	18 (18.3)	8 (8.1)	5 (5.1)	12 (12.2)	0 (0)
2018년	명 (비율)	93 (100)	44 (47.3)	27 (29)	6 (6.4)	3 (3.2)	7 (7.5)	1 (0)	49 (52.7)	20 (21.6)	10 (10.7)	10 (10.7)	9 (9.7)	0 (0)
2019년	명 (비율)	96 (100)	51 (53.1)	27 (28.1)	10 (10.4)	5 (5.2)	9 (9.3)	0 (0)	45 (46.8)	13 (13.5)	11 (11.4)	12 (12.5)	9 (9.3)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2019년 처리 사건 중 장교 42%, 준·부사관 22%, 군무원 19%, 병 18%
- 2019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처리 비율 27% 감소

6. 2019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96 (100)	51 (53.1)	0 (0)	5 (5.2)	9 (9.3)	21 (21.8)	1 (1)	9 (9.3)	0 (0)	6 (6.2)	0 (0)	45 (46.8)	35 (36.4)	10 (10.4)

* 약식 기타: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등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63 (100)	247 (53.3)	0 (0)	59 (12.7)	54 (11.7)	65 (26.3)	6 (1.3)	31 (6.7)	1 (0.2)	31 (6.7)	0 (0)	216 (46.8)	195 (42.2)	21 (4.5)
2015년	명 (비율)	84 (100)	51 (60.7)	0 (0)	16 (19)	17 (20.2)	9 (10.7)	1 (1.1)	6 (7.1)	0 (0)	2 (2.3)	0 (0)	33 (39.3)	30 (35.7)	3 (3.5)
2016년	명 (비율)	92 (100)	46 (50)	0 (0)	14 (15.3)	12 (13.1)	11 (11.9)	3 (3.3)	1 (1)	1 (1)	4 (4.4)	0 (0)	46 (50)	43 (46.8)	3 (3.2)
2017년	명 (비율)	98 (100)	55 (56.1)	0 (0)	11 (11.2)	11 (11.2)	15 (15.3)	1 (1)	8 (8.1)	0 (0)	9 (9.1)	0 (0)	43 (43.8)	41 (41.8)	2 (2)
2018년	명 (비율)	93 (100)	44 (47.3)	0 (0)	13 (13.9)	5 (5.3)	9 (9.6)	0 (0)	7 (7.5)	0 (0)	10 (10.7)	0 (0)	49 (52.7)	46 (49.5)	3 (3.2)
2019년	명 (비율)	96 (100)	51 (53.1)	0 (0)	5 (5.2)	9 (9.3)	21 (21.8)	1 (1)	9 (9.3)	0 (0)	6 (6.2)	0 (0)	45 (46.8)	35 (36.4)	10 (10.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 처리 비율 중 공판사건이 소폭 많음,
공판 사건 중 재산형 26%, 자유형 13%, 집행유예 12%, 무죄 7%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무죄 증가, 선고유예 감소 추세
- 2019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5.2%, 재산형 22%, 무죄 및 집행유예 각 9%
- 2019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증가, 실형 감소

7.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96	51		5	9	21	1	9	0	6		45	35	10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1	1							1				
	군용물에관한죄	2	2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1	1								1			
	기타	4	2			1		1				2	2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2	2			1					1			
	문서인장죄	7	6			2			4			1		1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1	1						1					
	사기공갈죄	3	3		2		1							
	횡령배임죄	3	3				2		1					
	성풍속에관한죄													
기타	16	10		1	2	2		2		3	6	4	2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1	5			1	4					6	5	1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17										17	16	1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범죄	형법위반	2	2				1		1					
	성폭법위반	4	3				3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범죄	상해,폭행죄	5	2				2					3	2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1	1				1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기타 법률위반	15	6			1	5					9	5	4	

○ 분석

- 주요형법범 33%, 교통범죄 29%, 성범죄(군형법 포함) 7%, 폭력범죄 6%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51%

8.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96	51	0	5	9	21	1	9	0	6	0	45	35	10
장 교	장성	6	6	1	2			3				0		
	영관	29	20		4	10	1	3		2		9	5	4
	위관	5	1			1						4	3	1
준·부사관	21	10		3	2	4		1				11	8	3
병	17	5				3				2		12	10	2
군무원	18	9		1	1	3		2		2		9	9	
민간인														

○ 분석

-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10%, 재산형은 41%, 무죄 및 집행유예 각 18%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2%, 무죄 12%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6%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6%

9.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51	10	4	5	6	3	8	1	0	4	10
구 속	3			1	1	1					
불구속	48	10	4	4	5	2	8	1		4	10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6%, 불구속 사건 94%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33%, 121일 이상 180일 이내 67% 처리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35%, 121일 이상 210일 이내 29%, 211일 이상 29% 처리

10. 2019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51	27	10	5	9	
확 정	소계					
	유죄	6	3	1	2	
	무죄	1		1		
	면소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상 소	소계	38	22	8	1	7
	쌍방향소	18	13	3		2
	피고인항소	15	6	5	1	3
	군검사항소	5	3			2
이송	6	2		2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14%, 상소율 75%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12%
- 신분별 상소율 장교 58%, 준·부사관 21%, 군무원 19%, 병 3%

11.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5 (100)	0 (0)	0 (0)	0 (0)	3 (60)	2 (40)	0 (0)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9 (100)	0 (0)	0 (0)	7 (11.8)	11 (18.6)	35 (59.3)	6 (10.1)
2015년	명 (비율)	16 (100)	0 (0)	0 (0)	2 (12.5)	5 (31.3)	9 (56.2)	0 (0)
2016년	명 (비율)	14 (100)	0 (0)	0 (0)	1 (7.1)	2 (14.3)	10 (71.5)	1 (7.1)
2017년	명 (비율)	11 (100)	0 (0)	0 (0)	2 (18.1)	0 (0)	6 (54.5)	3 (27.2)
2018년	명 (비율)	13 (100)	0 (0)	0 (0)	2 (15.4)	1 (7.7)	8 (61.5)	2 (15.4)
2019년	명 (비율)	5 (100)	0 (0)	0 (0)	0 (0)	3 (60)	2 (4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19%, 1년 이상 3년 미만 59%, 1년 미만 10%
- 2019년 자유형 처리 중 3년 이상 60%, 1년 이상 3년 미만 40%

12.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44 (100)	0 (0)	3 (6.8)	8 (18.1)	33 (75)

※ 이송, 정재취하 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12 (100)	42 (19.8)	10 (4.7)	32 (15)	170 (80.1)
2015년	명 (비율)	48 (100)	10 (20.8)	4 (8.3)	6 (12.5)	38 (79.1)
2016년	명 (비율)	40 (100)	9 (22.5)	0 (0)	9 (22.5)	31 (77.5)
2017년	명 (비율)	46 (100)	6 (13.1)	1 (2.2)	5 (10.9)	40 (86.9)
2018년	명 (비율)	34 (100)	6 (17.6)	2 (5.9)	4 (11.7)	28 (82.4)
2019년	명 (비율)	44 (100)	11 (25)	3 (6.8)	8 (18.1)	33 (7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80%,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5%
- 2019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75%,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18%
- 2019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소폭 하락

13.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6										1						1								2							1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2																																	
성폭법위반	3									1							1								1							1		
아청법위반	0																																	
기타	0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34	0	1	3	0	0	0	1	4	2	0	1	0	0	1	1	4	2	0	1	4	3	2	3	0	1	0	0
	군형법위반	10	0	1	0	0	0	0	1	2	0	0	1	0	0	0	1	0	0	0	0	3	1	0	0	0	0	0	0
	형법위반	7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2	0	0	0	0	0	1	1	0	1	0	0
	성폭법위반	12	0	0	2	0	0	0	0	0	2	0	0	0	0	0	0	3	0	0	0	2	0	2	1	0	0	0	0
	아청법위반	5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1	0	1	0	1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년	소계	9	0	1	1	0	0	0	0	1	0	0	0	0	0	0	0	2	0	1	0	2	0	1	0	0	0	0	
	군형법위반	2		1						1															1				
	형법위반	2															1												
	성폭법위반	4			1												1				2								
	아청법위반	1																	1										
2016년	소계	8	0	0	1	0	0	0	0	2	0	0	0	0	1	1	1	0	0	0	2	0	0	0	0	0	0		
	군형법위반	4								1							1				2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2																	1										
	아청법위반	2								1									1										
2017년	소계	6	0	0	1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1	1	1	0	0	0	0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0																											
	성폭법위반	4			1						1								1						1				
	아청법위반	1																			1								
2018년	소계	5	0	0	0	0	0	0	1	1	0	0	1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군형법위반	2								1			1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1									1																		
2019년	소계	6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1	0	0	2	0	1	0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2																											
	성폭법위반	3									1								1						1		1		
	아청법위반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성폭법위반 35%, 군형법위반 29%,
병 38%, 준·부사관 24%, 군무원 24% 차지, 장교 12%
재산형 35%, 집행유예 24%, 자유형 15%, 무죄 6%
- 연도별 분석결과 신분별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19년 성폭법위반 50%, 형법 33%, 군형법위반 17%
- 2019년 준·부사관 33%, 병 및 군무원 50%
- 2019년 재산형 83%, 무죄 17%

1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비율)	3 (100)	1 (33.3)	2 (66.6)	0 (0)	0 (0)	0 (0)	0 (0)
2015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1 (100)	1 (100)	0 (0)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2019년	명 (비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67%, 자유형 33%

15.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51 (100)	38 (74.5)	7 (13.7)	6 (11.7)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7 (100)	173 (70)	41 (16.5)	33 (13.3)
2015년	명 (비율)	51 (100)	37 (72.5)	11 (21.6)	3 (5.9)
2016년	명 (비율)	46 (100)	31 (67.3)	10 (21.7)	5 (11)
2017년	명 (비율)	55 (100)	36 (65.5)	10 (18.2)	9 (16.3)
2018년	명 (비율)	44 (100)	31 (70.5)	3 (6.8)	10 (22.7)
2019년	명 (비율)	51 (100)	38 (74.5)	7 (13.7)	6 (11.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70%, 확정 17%, 이송 13%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비율 소폭 증가
- 2019년 항소 75%, 확정 14%, 이송 12%
- 2019년 전년 대비 항소 및 확정 비율 소폭 증가

16.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38 (100)	12 (31.5)	8 (21)	18 (47.3)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73 (100)	55 (31.7)	30 (17.3)	88 (50.8)
2015년	명 (비율)	37 (100)	17 (46)	6 (16.2)	14 (37.8)
2016년	명 (비율)	31 (100)	14 (45.2)	0 (0)	17 (54.8)
2017년	명 (비율)	36 (100)	10 (27.7)	9 (25)	17 (47.2)
2018년	명 (비율)	31 (100)	2 (6.4)	7 (22.5)	22 (70.9)
2019년	명 (비율)	38 (100)	12 (31.5)	8 (21)	18 (47.3)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83%, 군검사의 항소율 68%
- 2019년 피고인의 항소율 79%, 군검사의 항소율 68%
- 2019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증가, 군검사의 항소율 감소

17. 2019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45 (100)	35 (77.7)	8 (17.7)	2 (4.4)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16 (100)	195 (90.2)	18 (8.3)	3 (1.3)
2015년	명 (비율)	33 (100)	30 (90.9)	3 (9.1)	0 (0)
2016년	명 (비율)	46 (100)	43 (93.5)	2 (4.3)	1 (2.2)
2017년	명 (비율)	43 (100)	41 (95.3)	2 (4.7)	0 (0)
2018년	명 (비율)	49 (100)	46 (93.9)	3 (6.1)	0 (0)
2019년	명 (비율)	45 (100)	35 (77.7)	8 (17.7)	2 (4.4)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0%, 공판절차 회부 8%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연도별 계속 변동
- 2019년 약식명령 78%, 공판절차 회부 18%, 전년 대비 공판절차 회부 건수 대폭 증가

18. 2019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2	6	6	50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141	129	12	91.4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92	77	15	83.6
	체포영장	31	30	1	96.7
	압수·수색영장	848	804	44	94.8
2015년	구속영장	28	26	2	92.8
	체포영장	21	21		100
	압수·수색영장	138	137	1	99.2
2016년	구속영장	28	23	5	82
	체포영장	9	9		100
	압수·수색영장	184	180	4	97.8
2017년	구속영장	8	8		100
	체포영장				0
	압수·수색영장	189	180	9	95.2
2018년	구속영장	16	14	2	87.5
	체포영장	1	1		0
	압수·수색영장	196	178	18	90.8
2019년	구속영장	12	6	6	50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141	129	12	91.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4%, 체포영장 97%, 압수·수색영장 95%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매년 증가하다 2019년 감소 추세
- 2019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50%, 압수·수색영장 91%,
전년 대비 구속영장 청구 건수 소폭 감소

19. 2019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2	2	8	2	6	6
장교	6		6		4	2
준·부사관	4		2	2	2	2
병	2	2			0	2
군무원						
기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92	21	65	6	75	17
	장교	56	7	47	2	49	7
	준·부사관	14	4	8	2	11	3
	병	10	8	1	1	5	5
	군무원	12	2	9	1	10	2
	민간인						
2015년	소계	28	7	21		26	2
	장교	22	3	19		20	2
	준·부사관	2	2			2	
	병	2	2			2	
	군무원	2		2		2	
	민간인						
2016년	소계	28	9	16	3	21	7
	장교	12	4	7	1	10	2
	준·부사관	4		4		4	
	병	6	4	1	1	3	3
	군무원	6	1	4	1	4	2
	민간인						
2017년	소계	8		8		8	
	장교	4		4		4	
	준·부사관	1		1		1	
	병						
	군무원	3		3		3	
	민간인						
2018년	소계	16	3	12	1	14	2
	장교	12		11	1	11	1
	준·부사관	3	2	1		2	1
	병						
	군무원	1	1			1	
	민간인			8	2	6	6
2019년	소계	12	2	8	2	6	6
	장교	6		6		4	2
	준·부사관	4		2	2	2	2
	병	2	2			0	2
	군무원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61%, 준·부사관 15%, 군무원 13%, 병 11%, 발부율 장교 88%, 준·부사관 79%, 병 50%, 군무원 83%
- 2019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소폭 감소

20. 2019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2	0	2	0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2	1	1	50

※ 기타: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35	12	21	34.2
	구속적부심	14	2	12	14.2
	형사보상청구	7	6	1	85.7
	기 타	37	27	10	72.9
2015년	보석청구	18	9	9	50
	구속적부심	6	2	4	33.3
	형사보상청구				
	기 타	8	6	2	75
2016년	보석청구	6	1	5	16.7
	구속적부심	3		3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1	6	5	54.5
2017년	보석청구	3	1	2	33.3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3	3		100
	기 타	9	7	2	77.7
2018년	보석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7	7		100
2019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2	1	1	5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34%, 구속적부심 인용률 14%,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86%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허가율 증가, 구속적부심 2015년 2건 인용 그 외 기각
- 2019년 기타 신청사건 감소

21. 2019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1	20	15	13	13	
원판결확인	61	20	15	13	13	
원판결 확인율	100	32.7	24.5	21.3	21.3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258	125	47	34	51	1
	원판결확인	258	125	47	34	51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5년	소계	55	29	8	8	10	0
	원판결확인	55	29	8	8	10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소계	68	35	12	7	13	1
	원판결확인	68	35	12	7	13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67	29	15	8	15	0
	원판결확인	67	29	15	8	15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68	32	12	11	13	0
	원판결확인	68	32	12	11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소계	61	20	15	13	13	0
	원판결확인	61	20	15	13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9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9	6	1		2	
관 면 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기타					
주 요 형 면 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4	4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1		1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1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교 통 면 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상 면 죄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 력 면 죄	상해,폭행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법률위반	2	1			1	

23. 2019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19조1	해병상병	죄물손괴	벌금 25,000원



육군 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1. 2019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2,114 (100)	878 (42)	1,236 (58)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1,584 (100)	5,114 (44)	6,470 (56)
2015년	명 (비율)	2,644 (100)	1,270 (48)	1,374 (52)
2016년	명 (비율)	2,499 (100)	1,162 (46.4)	1,337 (53.6)
2017년	명 (비율)	2,231 (100)	945 (42.4)	1,286 (57.6)
2018년	명 (비율)	2,096 (100)	859 (41)	1,237 (59)
2019년	명 (비율)	2,114 (100)	878 (42)	1,236 (5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4%, 약식사건 58%
- 사건접수 계속 감소하던 중 2019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19년 접수 중 공판사건 42%, 전년 대비 공판사건 비율 유사

2.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878	1,236	101	120	200	355	560	741	11	20	6	0
면포양양단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38		3		4		31				
	상관에관한죄	57		7		15		35				
	군용물에관한죄	9	2	1		2	1	5	1			1
	초병에관한죄	19	2	1	1	1	1	13				4
	성범죄(군인등)	70		10		32		27		1		
	기타	13	6	3	1	1	2	9	3			
면포양양단-주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3		1		2						
	문서인장죄	10	2	1		3		6	2			
	살인죄	1						1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죄	32	16	1	1	4	2	27	13			
	사기공갈죄	70	88	1		10	6	59	80		2	
	횡령배임죄	6	9	1	2	1	1	4	6			
	성중속에관한죄	5	2	1		3	1	1	1			
	기타											
전포에단	교통법위반	16	79	2	17	10	37	4	19		6	
	도교법위반	8	35	2	4	1	14	4	16	1	1	
	도교법위반(음주)	22	303	1	68	15	167	5	62	1	6	
	특가법위반(도주)	15	10	1		5	7	9	3			
	특가법위반(치사상)											
전포소	형법위반	95	19	12		18	1	64	18	1		
	성폭법위반	59	33	8	1	10	5	39	26	2	1	
	아청법위반	34	3	2		7	1	25	2			
	성매매특별법위반	3	2			1	2	2				
	기타											
전포포포포	상해, 폭행죄	98	164	15	3	17	38	65	122	1	1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27	36				3	27	33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기타 법률위반	166	425	27	22	36	66	98	334	4	3	1	

○ 분석

- 2019년 접수 중 교통범죄 23%, 성범죄(군형법 포함) 및 폭력범죄 각 15%, 주요형법범 1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7%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87.5%

3. 2019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114 (100)	221 (10.4)	555 (26.2)	1,301 (61.5)	31 (1.5)	6 (0.3)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1,591 (100)	1,131 (10)	3,128 (27)	7,067 (61)	227 (2)	38 (=0)
2015년	명 (비율)	2,644 (100)	240 (9.1)	680 (25.7)	1,665 (63)	50 (1.9)	9 (0.3)
2016년	명 (비율)	2,506 (100)	252 (10.1)	664 (26.5)	1,528 (61)	54 (2.2)	8 (0.3)
2017년	명 (비율)	2,231 (100)	213 (9.5)	644 (28.8)	1,327 (59.4)	39 (1.7)	8 (0.3)
2018년	명 (비율)	2,096 (100)	205 (9.8)	585 (27.9)	1,246 (59.4)	53 (2.5)	7 (0.3)
2019년	명 (비율)	2,114 (100)	221 (10.4)	555 (26.2)	1,301 (61.5)	31 (1.5)	6 (0.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10%, 준·부사관 27%, 병 61% 군무원 2%
- 연도별 분석결과 신분별 비율 유사
- 2019년 접수 중 장교 10.4%, 준·부사관 26.2%, 병 61.5%, 군무원 1.5%

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878 (100)	101 (11.5)	200 (22.8)	560 (63.8)	11 (1.3)	6 (0.7)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102 (100)	474 (9)	992 (19)	3,536 (69)	64 (2)	36 (1)
2015년	명 (비율)	1,270 (100)	106 (8.3)	228 (18)	915 (72)	12 (0.9)	9 (0.7)
2016년	명 (비율)	1,150 (100)	99 (8.6)	201 (17.4)	826 (71.8)	15 (1.3)	9 (0.8)
2017년	명 (비율)	945 (100)	91 (9.6)	187 (19.7)	649 (68.6)	12 (1.2)	6 (0.6)
2018년	명 (비율)	859 (100)	77 (9)	176 (20.5)	586 (68.2)	14 (1.6)	6 (0.7)
2019년	명 (비율)	878 (100)	101 (11.5)	200 (22.8)	560 (63.8)	11 (1.3)	6 (0.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9%, 준·부사관 19%, 병 69%, 군무원 2%, 민간인 1%
- 연도별 분석결과 간부사건 비율 증가, 병사사건 비율 감소 추세
- 2019년 접수 중 장교 11.5%, 준·부사관 22.8%, 병 63.8%, 군무원 1.3%, 민간인 0.7%
- 2019년 전년 대비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군무원 사건 유사

5.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755 (100)	639 (36.4)	68 (3.9)	137 (7.8)	421 (24)	8 (0.4)	5 (0.3)	1,116 (63.6)	105 (6)	317 (18.1)	676 (38.5)	18 (1)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0,352 (100)	3,919 (38)	343 (4)	750 (7)	2,756 (27)	43 (=0)	27 (=0)	6,433 (62)	659 (6)	2,062 (20)	3,554 (34)	155 (2)	3 (=0)
2015년	명 (비율)	2,423 (100)	1,003 (41.4)	83 (3.4)	191 (7.9)	715 (29.5)	7 (0.3)	7 (0.3)	1,420 (58.6)	142 (5.9)	459 (18.9)	781 (32.2)	38 (1.6)	0 (0)
2016년	명 (비율)	2,220 (100)	838 (37.7)	63 (2.8)	148 (6.7)	609 (27.4)	12 (0.5)	6 (0.3)	1,382 (62.3)	151 (6.8)	458 (20.7)	735 (33.1)	37 (1.7)	1 (=0)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76 (3.6)	155 (7.4)	569 (27)	10 (0.5)	5 (0.2)	1,292 (61.3)	134 (6.4)	435 (20.6)	696 (33)	25 (1.3)	2 (=0)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53 (2.9)	119 (6.5)	442 (23.9)	6 (0.3)	4 (0.2)	1,223 (66.2)	127 (6.9)	393 (21.3)	666 (36)	37 (2)	0 (0)
2019년	명 (비율)	1,755 (100)	639 (36.4)	68 (3.9)	137 (7.8)	421 (24)	8 (0.4)	5 (0.3)	1,116 (63.6)	105 (6)	317 (18.1)	676 (38.5)	18 (1)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사건 수 감소 추세
- 2019년 처리 사건 중 장교 9.9%, 준·부사관 25.9%, 병 62.5%, 군무원 1.4%, 민간인 0.3%

6. 2019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1,755 (100)	639 (36.4)	0 (0)	49 (2.8)	178 (10.1)	185 (10.5)	35 (2)	51 (2.9)	12 (0.7)	129 (7.4)	0 (0)	1,116 (63.6)	1,080 (61.5)	36 (2.1)

* 약식 기타: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등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0,352 (100)	3,919 (38)	0 (0)	347 (3)	1,333 (13)	1,150 (11)	264 (3)	237 (2)	58 (1)	530 (5)	0 (0)	6,433 (62)	5,892 (57)	541 (5)
2015년	명 (비율)	2,423 (100)	1,003 (41.4)	0 (0)	100 (4.1)	373 (15.4)	273 (11.2)	99 (4.1)	53 (2.2)	14 (0.6)	91 (3.8)	0 (0)	1,420 (58.6)	1,276 (52.7)	144 (5.9)
2016년	명 (비율)	2,220 (100)	838 (37.7)	0 (0)	76 (3.4)	295 (13.3)	263 (11.8)	37 (1.7)	53 (2.4)	13 (0.6)	101 (4.5)	0 (0)	1,382 (62.3)	1,248 (56.2)	134 (6.1)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0 (0)	83 (3.9)	282 (13.4)	221 (10.5)	57 (2.7)	54 (2.6)	7 (0.3)	111 (5.3)	0 (0)	1,292 (61.3)	1,169 (55.5)	123 (5.8)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0 (0)	39 (2.1)	205 (11.1)	208 (11.3)	36 (1.9)	26 (1.4)	12 (0.7)	98 (5.3)	0 (0)	1,223 (66.2)	1,119 (60.6)	104 (5.6)
2019년	명 (비율)	1,755 (100)	639 (36.4)	0 (0)	49 (2.8)	178 (10.1)	185 (10.5)	35 (2)	51 (2.9)	12 (0.7)	129 (7.4)	0 (0)	1,116 (63.6)	1,080 (61.5)	36 (2.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과 약식사건 처리 비율 38:62,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 34%, 재산형 29%, 자유형 9%, 무죄 6%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의 처리 비율 및 처분 유형 비율 유사
- 2019년 공판사건 중 재산형 29%, 집행유예 28%, 무죄 8%, 자유형 8%, 선고유예 5%
- 2019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중 자유형·무죄 증가, 집행유예·재산형 감소

7.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755	639		49	178	185	35	51	12	129		1,116	1,080	36
군형법 범법	간첩이적죄	0	0											
	군무이탈죄	33	33		6	18		3		6				
	상관에관한죄	45	45		1	22		7	3	12				
	군용물에관한죄	9	7			3	1		1	2		2	2	
	초병에관한죄	18	16			11	1	4				2	2	
	성범죄(군인등)	50	50		3	24	2	2	6		13			
	기타	17	11			3	5				3	6	6	
주요형법 범법	내란소요죄	0	0											
	뇌물에관한죄	1	1			1								
	문서인장죄	10	8		1	3	2		1	1		2	2	
	살인죄	1	1		1									
	과실치사상죄	0	0											
	절도강도죄	41	27		1	9	4	3	3	7		14	14	
	사기공갈죄	137	56		6	12	22		3	13		81	76	5
	횡령배임죄	13	5		1	1	1	1		1		8	8	
	성폭속에관한죄	6	4		1		3					2	2	
기타	0	0												
교통 범법	교통법위반	84	13			1	6			1	5	71	71	
	도교법위반	40	7			1	3	1	1		1	33	33	
	도교법위반(음주)	286	14			2	9		2		1	272	271	1
	특가법위반(도주)	21	11		2	3	5				1	10	9	1
	특가법위반(치사상)	0	0											
성법 범법	형법위반	77	60		8	11	13	1	12	1	14	17	17	
	성폭법위반	66	34		8	6	10		2		8	32	32	
	아청법위반	22	19		2	6	3	1	3		4	3	3	
	성매매특별법위반	5	3			1	1				1	2	2	
	기타	0	0											
폭력 범법	상해,폭행죄	72	72		1	9	34	4	3	8	13	151	142	9
	상해등치사	151	0											
	폭처법위반	53	22		5	8	7		1		1	31	28	3
국가보안법위반	0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기타 법률위반	496	119		2	22	53	8	10	2	22	377	360	17	

○ 분석

- 교통범죄 25%, 성범죄(군형법 포함) 13%, 주요형법범 1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7%
- 군형법범 중 성범죄 29%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0%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48%

8.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755	639	0	49	178	185	35	51	12	129	0	1,116	1,080	36
장교	장성	0										0		
	영관	42	21		1	3	12	1	3	1		21	21	
	위관	131	47		2	13	9	5	6	4	8	84	84	
준·부사관	454	137		7	43	54	9	17	1	6		317	317	
병	1,097	421		39	114	106	19	23	6	114		676	641	35
군무원	26	8			2	3		2		1		18	17	1
민간인	5	5			3	1	1					0		

○ 분석

- 장교 공판사건 재산형 31%, 집행유예 24%, 무죄 13%, 선고유예 9%
- 준·부사관 공판사건 재산형 39%, 집행유예 31%, 무죄 12%, 선고유예 7%
- 병 공판사건 집행유예 27%, 재산형 25%, 자유형 9%, 무죄 5%
- 군무원 공판사건 재산형 38%, 집행유예·무죄 각 25%
- 민간인 공판사건 집행유예 60%, 재산형·선고유예 각 20%

9.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639	274	186	85	49	29	14	2	0	0	0
구 속	58	20	19	10	3	4	2				
불구속	581	254	167	75	46	25	12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9%, 불구속 사건 91%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4%, 121일 이상 210일 이내 16%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5%, 121일 이상 15% 차지

10. 2019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28	64	135	416	8	5	
확정	소계	305	22	65	212	2	4
	유죄	285	16	64	199	2	4
	무죄	9	1	1	7		
	면소						
	공소기각판결	5	2		3		
	공소기각결정	6	3		3		
상소	소계	194	34	64	90	5	1
	쌍방향상소	56	13	18	23	1	1
	피고인항소	79	14	25	38	2	
	군검사항소	59	7	21	29	2	
이송	129	8	6	114	1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49%, 상소율 31%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3%
- 신분별 상소율 장교 53%, 준·부사관 47%, 병 22%, 군무원 63%, 민간인 20%

11.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49 (100)	0 (0)	1 (2)	4 (8.2)	8 (16.3)	15 (30.6)	21 (42.9)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47 (100)	0 (0)	4 (1)	22 (6)	53 (15)	152 (44)	116 (34)
2015년	명 (비율)	100 (100)	0 (0)	2 (2.0)	7 (7.0)	9 (9.0)	43 (43.0)	39 (39.0)
2016년	명 (비율)	76 (100)	0 (0)	0 (0)	5 (6.6)	15 (19.7)	34 (44.7)	22 (28.9)
2017년	명 (비율)	83 (100)	0 (0)	1 (1.2)	4 (4.8)	16 (19.3)	40 (48.2)	22 (26.5)
2018년	명 (비율)	39 (100)	0 (0)	0 (0)	2 (5.1)	5 (12.8)	20 (51.3)	12 (30.8)
2019년	명 (비율)	49 (100)	0 (0)	1 (2)	4 (8.2)	8 (16.3)	15 (30.6)	21 (42.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2%, 1년 이상 3년 미만 44%, 1년 미만 34%
- 연도별 분석결과 단기자유형 감소하던 중 2018년부터 증가
- 2019년 3년 이상 26.5%, 1년 이상 3년 미만 30.6%, 1년 미만 42.9%

12.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485 (100)	327 (67.4)	83 (17.1)	244 (50.3)	158 (32.6)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3,200 (100)	2,422 (76)	394 (12)	2,028 (64)	777 (24)
2015년	명 (비율)	871 (100)	702 (80.6)	87 (10)	615 (70.6)	169 (19.4)
2016년	명 (비율)	678 (100)	530 (78.2)	73 (10.8)	457 (67.4)	148 (21.8)
2017년	명 (비율)	655 (100)	479 (73.1)	64 (9.8)	415 (63.4)	175 (26.7)
2018년	명 (비율)	511 (100)	384 (75.1)	87 (17)	297 (58.1)	127 (24.9)
2019년	명 (비율)	485 (100)	327 (67.4)	83 (17.1)	244 (50.3)	158 (32.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24%,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16%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추세
- 2019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32.6%,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75%
- 2019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및 민간 국선변호인 선정률 증가

13.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163	2	5	5	0	3	1	2	5	16	6	2	6	2	14	26	18	2	10			35	1				1		
군형법위반	49	1	2	1		1		1	11	1	1	4		1	2	11		1				11							
형법위반	58		2	2		2	1		2	3	2	1	1		6	6	9		6			14				1			
성폭법위반	34		1	1				1	3	1	3				5	3	6		2			6	1					1	
아청법위반	19	1		1									1		1	5	2	1	2			4							
기타	3													1	1	1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1,144	17	36	36	7	10	4	23	77	51	12	17	2	10	98	322	151	38	41	1	185	0	1	1	0	2	0	1
	군형법위반	432	11	25	1	6	5	0	3	5	60	1	8	8	1	3	22	169	0	23	4	0	76	0	0	0	0	1	0
	형법위반	334	2	7	12	0	4	1	0	8	11	21	2	7	0	1	31	72	70	5	18	0	61	0	0	0	0	1	0
	성폭법위반	248	3	3	17	1	0	0	1	8	4	20	2	1	1	3	35	44	59	6	10	1	26	0	1	1	0	0	0
	기타	12	0	1	0	0	0	0	0	0	0	1	0	0	0	1	0	3	5	0	0	0	1	0	0	0	0	0	0
2015년	소계	292	6	5	11	3	2	0	1	7	19	17	5	1	0	2	27	83	47	18	10	1	26	0	0	1	0	0	0
	군형법위반	102	5	2		2	2		1	4	14		3			8	40		10			11							
	형법위반	79	1	2	3					1	2	6	1	1			6	19	22	2	4		9						
	성폭법위반	70			6	1				2	2	8	1			1	11	9	18	4	3	1	2			1			
	기타	39			2					1	3					1	2	15	6	2	3		4						
2016년	소계	277	3	12	5	0	2	0	0	5	20	12	2	4	1	1	20	87	39	10	10	0	44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17	2	8						1	17		2	2	1		6	51		8	1		18						
	형법위반	79		3	2		1			2	3	4		2			5	16	18	1	5		17						
	성폭법위반	59	1	1	2					1	6						6	14	18		3		7						
	기타	22			1		1			1	2					1	3	6	3	1	1		2						
2017년	소계	241	5	7	10	4	0	0	1	4	15	5	0	4	0	4	23	78	22	7	6	0	46	0	0	0	0	0	0
	군형법위반	96	2	6		4			1		11			1	1	3	42		3	2		20							
	형법위반	61	1		3					1	3	2		2	1	8	19	8	2	1		10							
	성폭법위반	55	2	1	6					2	1	1		1	2	9	10	8	2	2		8							
	기타	25			1					1	2					3	6	4		1		7							
2018년	소계	171	1	7	5	0	3	0	0	2	7	11	3	2	1	1	14	48	25	1	5	0	34	0	0	0	0	1	0
	군형법위반	68	1	7			2				7		2	1	1	3	25		1	1		16						1	
	형법위반	57			2		1			2		7		1			6	12	13		2		11						
	성폭법위반	30			2							2	1		1		4	8	9				3						
	기타	13			1							1					1	2	2		2		4						
2019년	소계	163	2	5	5	0	3	1	2	5	16	6	2	6	0	2	14	26	18	2	10	0	35	0	1	0	0	1	0
	군형법위반	49	1	2	1		1		1		11	1	1	4		1	2	11		1			11						
	형법위반	58		2	2		2	1		2	3	2	1	1			6	6	9		6		14				1		
	성폭법위반	34		1	1			1		3	1	3					5	3	6		2		6	1					1
	기타	19	1		1						1			1		1	5	2	1	2		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8%, 아청법위반 10%, 병 73%, 준·부사관 17%, 장교 9.6%, 군무원 0.4%, 집행유예 38%, 재산형 21%, 자유형 12%, 무죄 6%
- 2019년 형법위반 36%, 군형법위반 30%
- 2019년 병 64%, 준·부사관 23%, 장교 11%, 군무원 2%
- 2019년 집행유예 29%, 재산형 18%, 자유형 13%, 무죄 12%
- 2019년 전년 대비 자유형·무죄 증가, 집행유예·재산형 감소

1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5 (100)	0 (0)	3 (60)	1 (20)	1 (20)	0 (0)	0 (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7 (100)	1 (4)	19 (71)	2 (7)	2 (7)	2 (7)	1 (4)
2015년	명 (비율)	7 (100)	0 (0)	6 (85.7)	1(14.3)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6 (100)	1 (16.7)	3 (50)	0 (0)	0 (0)	2 (33.3)	0 (0)
2017년	명 (비율)	5 (100)	0 (0)	5 (100)	0 (0)	0 (0)	0 (0)	0 (0)
2018년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1 (25)	0 (0)	1 (25)
2019년	명 (비율)	5 (100)	0 (0)	3 (60)	1 (20)	1 (20)	0 (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71%, 자유형 4%
- 2019년 민간인 처리 5명(집행유예 3명, 선고유예 1명, 재산형 1명)

15.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628 (100)	194 (30.9)	305 (48.6)	129 (20.5)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834 (100)	1,027 (27)	2,277 (59)	530 (14)
2015년	명 (비율)	978 (100)	242 (24.7)	645 (66.0)	91 (9.3)
2016년	명 (비율)	819 (100)	223 (27.2)	495 (60.4)	101 (12.3)
2017년	명 (비율)	785 (100)	205 (26.1)	469 (59.7)	111 (14.1)
2018년	명 (비율)	624 (100)	163 (26.1)	363 (58.2)	98 (15.7)
2019년	명 (비율)	628 (100)	194 (30.9)	305 (48.6)	129 (20.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중 항소 27%, 확정 59%, 이송 14%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증가 추세
- 2019년 항소 30.9%, 확정 48.6%, 이송 20.5%
- 2019년 전년 대비 확정 비율 감소, 이송 비율 증가

16.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194 (100)	79 (40.7)	59 (30.4)	56 (28.9)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027 (100)	518 (50)	226 (22)	283 (28)
2015년	명 (비율)	242 (100)	132 (54.5)	45 (18.6)	65 (26.9)
2016년	명 (비율)	223 (100)	110 (49.3)	51 (22.9)	62 (27.8)
2017년	명 (비율)	205 (100)	119 (58)	34 (16.6)	52 (25.4)
2018년	명 (비율)	163 (100)	78 (47.9)	37 (22.7)	48 (29.4)
2019년	명 (비율)	194 (100)	79 (40.7)	59 (30.4)	56 (28.9)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8%, 군검사 항소율의 50%
- 2019년 피고인의 항소율 70%, 군검사의 항소율 59%
- 2019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17. 2019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1,116 (100)	989 (88.6)	89 (8)	38 (3.4)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433 (100)	5,801 (90)	451 (7)	181 (3)
2015년	명 (비율)	1,420 (100)	1,276 (89.9)	116 (8.1)	28 (2)
2016년	명 (비율)	1,382 (100)	1,248 (90.3)	100 (7.2)	34 (2.5)
2017년	명 (비율)	1,292 (100)	1,169 (90.5)	83 (6.4)	40 (3.1)
2018년	명 (비율)	1,223 (100)	1,119 (91.5)	63 (5.1)	41 (3.4)
2019년	명 (비율)	1,116 (100)	989 (88.6)	89 (8)	38 (3.4)

○ 분석

- 최근 5년 약식사건 중 약식명령 90%, 공판절차 회부 7%
- 2019년 약식명령 88.6%, 공판절차 회부 8%

18. 2019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76	115	45	65.3
체포영장	26	21	5	80.8
압수·수색영장	369	340	29	92.1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1,502	1,151	314	77
	체포영장	269	238	31	88
	압수·수색영장	1,944	1,798	146	92
2015년	구속영장	515	412	103	80
	체포영장	109	99	10	90.8
	압수·수색영장	569	530	39	93.1
2016년	구속영장	375	297	78	79.2
	체포영장	64	57	7	89.1
	압수·수색영장	432	397	35	91.9
2017년	구속영장	272	213	50	78.3
	체포영장	43	37	6	86
	압수·수색영장	291	264	27	90.7
2018년	구속영장	164	114	38	69.5
	체포영장	27	24	3	88.9
	압수·수색영장	283	267	16	94.3
2019년	구속영장	176	115	45	65.3
	체포영장	26	21	5	80.8
	압수·수색영장	369	340	29	92.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7%,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2%
- 연도별 분석결과 각종 영장 청구 건수 감소하던 중 2019년 증가, 영장 발부율은 압수·수색영장 외 영장 지속 감소
- 2019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65.3%, 체포영장 80.8%, 압수·수색영장 92.1%
- 2019년 전년 대비 각종 영장 발부율 감소

19. 2019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76	141	5	30	115	45	
장 교	16	12	2	2	12	3	
준·부사관	33	29	1	3	19	13	
병	125	100	2	23	83	29	
군무원	1			1			
기 타	1			1	1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1,522	1,244	119	159	1,151	314
	장 교	126	106	11	9	90	33
	준·부사관	249	206	25	18	162	79
	병	1,133	926	78	129	890	198
	군무원	10	4	4	2	7	2
	민간인	4	2	1	1	2	2
2015년	소계	522	444	43	35	412	103
	장 교	30	29	1		18	12
	준·부사관	76	65	6	5	56	19
	병	409	347	32	30	334	69
	군무원	4	1	3		3	1
	민간인	3	2	1		1	2
2016년	소계	388	315	37	36	297	78
	장 교	38	32	3	3	31	6
	준·부사관	61	49	9	3	43	16
	병	287	234	24	29	221	56
	군무원	2		1	1	2	
	민간인						
2017년	소계	272	213	25	34	213	50
	장 교	28	22	3	3	21	7
	준·부사관	49	39	7	3	31	15
	병	193	150	15	28	160	27
	군무원	2	2			1	1
	민간인						
2018년	소계	164	131	9	24	114	38
	장 교	14	11	2	1	8	5
	준·부사관	30	24	2	4	13	16
	병	119	95	5	19	92	17
	군무원	1	1			1	
	민간인						
2019년	소계	176	141	5	30	115	45
	장 교	16	12	2	2	12	3
	준·부사관	33	29	1	3	19	13
	병	125	100	2	23	83	29
	군무원	1			1		
	민간인	1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8%, 준·부사관 16%, 병 74%,
발부율 장교 71%, 준·부사관 65%, 병 79%, 군무원 70%, 민간인 50%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영장 발부율 감소 추세
- 2019년 영장 발부율 65%, 전년 대비 영장 발부율 감소

20. 2019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1	5	6	45.5
구속적부심	14	2	12	14.3
형사보상청구	4	4		100
기 타	34	4	19	11.8

※ 기타: 구속집행정지,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 청구=인용+기각-기타(이송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97	41	56	42
	구속적부심	120	19	101	16
	형사보상청구	13	8	5	62
	기 타	153	57	85	37
2015년	보석청구	40	12	28	30
	구속적부심	38	8	30	21.1
	형사보상청구				
	기 타	37	16	21	43.2
2016년	보석청구	21	12	9	57.1
	구속적부심	34	6	28	17.6
	형사보상청구	4	1	3	25
	기 타	40	27	13	67.5
2017년	보석청구	20	11	9	55
	구속적부심	23	2	21	8.7
	형사보상청구	3	2	1	66.7
	기 타	20	6	14	30
2018년	보석청구	5	1	4	20
	구속적부심	11	1	10	9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22	4	18	18.2
2019년	보석청구	11	5	6	45.5
	구속적부심	14	2	12	14.3
	형사보상청구	4	4		100
	기 타	34	4	19	11.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2%, 구속적부심 인용률 16%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 및 구속적부심 청구 감소하던 중 2019년 증가
- 2019년 보석청구 허가율 45.5%,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증가

21. 2019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46	15	39	91	1	0
원판결확인	146	15	39	91	1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706	72	215	403	16	0
	원판결확인	706	72	215	403	16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5년	소계	194	24	63	103	4	0
	원판결확인	194	24	63	103	4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소계	115	8	37	67	3	0
	원판결확인	115	8	37	67	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134	13	43	74	4	0
	원판결확인	134	13	43	74	4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117	12	33	68	4	0
	원판결확인	117	12	33	68	4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소계	146	15	39	91	1	0
	원판결확인	146	15	39	91	1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9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51	9	17	23	2	0
범표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3	1	2		
	군용물에관한죄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6	2	4		
	기타					
주요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1		1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3			3	
	사기공갈죄	3		2	1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교통범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1		1		
	도교법위반(음주)	2		2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범	형법위반	12	3	1	7	1
	성폭법위반	2			2	
	아청법위반	3		1	2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배우범	상해,폭행죄	3	1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10	2	1	7		

23. 2019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19-001	일병	경범죄처벌법위반	청구기각
2019-001	상병(상근)	절도	벌금 100,000원
2019-001	이병	장물취득	청구기각
2019-002	준위	절도	벌금 100,000원
2019-003	상병	절도	벌금 50,000원



해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1. 2019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456 (100)	147 (32.2)	309 (67.8)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08 (100)	1,452 (65.8)
2015년	명 (비율)	391 (100)	252 (64.5)
2016년	명 (비율)	474 (100)	303 (63.9)
2017년	명 (비율)	494 (100)	310 (63)
2018년	명 (비율)	393 (100)	278 (70.7)
2019년	명 (비율)	456 (100)	309 (67.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4.2%, 약식 사건 65.8%
- 2019년 전년 대비 사건 수 16% 증가

2.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147	309	18	32	47	112	78	157	3	8	1	1
민간인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11		1		5		5				
	상관에관한죄	9		1		5		3				
	군용물에관한죄	2	1			1	1	1				
	초병에관한죄	9						8				1
	성범죄(군인등)	21		5		6		10				
	기타	5	15		1	1	1	3	13	1		
주요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1							1			
	문서인장죄	1	1		1			1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철도강도죄	2	5			1		1	5			
	사기공갈죄	10	11		1	4	1	6	9			
	횡령배임죄		2					1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2	25	1		7	7	4	17		1		
범죄위반	교통법위반	1	28		7		14	1	2		5	
	도교법위반	1	5	1			4		1			
	도교법위반(음주)	2	98		19	1	62	1	16		1	
	특가법위반(도주)	3	2			3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범죄위반	형법위반	8	5	1				7	5			
	성폭법위반	14	8	2		4	3	8	5			
	아청법위반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범죄위반	상해, 폭행죄	14	54	1	2	3	9	10	43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6	21			1		5	21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기타 법률위반	12	28	4	1	4	8	3	18	1	1		

○ 분석

- 2019년 접수 중 교통범죄 30.7%, 폭력범죄 20.8%, 주요형법범 13.2%, 성범죄(군형법 포함) 12.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1.4%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95%

3. 2019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56 (100)	50 (11)	159 (34.9)	235 (51.5)	11 (2.4)	1 (0.2)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08 (100)	220 (10)	1,016 (46)	903 (40.9)	65 (2.9)	4 (0.2)
2015년	명 (비율)	391 (100)	34 (8.7)	180 (46)	162 (41.4)	14 (3.6)	1 (0.3)
2016년	명 (비율)	474 (100)	49 (10.3)	245 (51.7)	163 (34.4)	17 (3.6)	
2017년	명 (비율)	494 (100)	49 (9.9)	259 (52.5)	173 (35.1)	12 (2.4)	1 (0.1)
2018년	명 (비율)	393 (100)	38 (9.7)	173 (44)	170 (43.3)	11 (2.8)	1 (0.2)
2019년	명 (비율)	456 (100)	50 (11)	159 (34.9)	235 (51.5)	11 (2.4)	1 (0.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6%, 병 40.9%, 장교 10%, 군무원 2.9%
- 2019년 접수 중 병 51.5%, 준·부사관 34.9%, 장교 11%, 군무원 0.2%

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계	147 (100)	18 (12.2)	47 (32)	78 (53.1)	3 (2)	1 (0.7)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56 (100)	70 (9.3)	277 (36.7)	388 (51.3)	17 (2.2)	4 (0.5)
2015년	명 (비율)	139 (100)	10 (7.3)	41 (29.5)	85 (61.1)	2 (1.4)	1 (0.7)
2016년	명 (비율)	171 (100)	15 (8.8)	68 (39.8)	82 (48)	6 (3.4)	
2017년	명 (비율)	184 (100)	14 (7.6)	83 (45.1)	82 (44.6)	4 (2.2)	1 (0.5)
2018년	명 (비율)	115 (100)	13 (11.3)	38 (33)	61 (53.1)	2 (1.7)	1 (0.9)
2019년	명 (비율)	147 (100)	18 (12.2)	47 (32)	78 (53.1)	3 (2)	1 (0.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1.3%, 준·부사관 36.7%, 장교 9.3%, 군무원 2.2%
- 2019년 접수 중 병 53.1%, 준·부사관 32%, 장교 12.2%, 군무원 2%
- 2019년 전년 대비 민간인을 제외한 전 신분별 사건 증가

5.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44 (100)	137 (30.9)	15 (3.4)	49 (11.1)	67 (15.1)	5 (1.1)	1 (0.2)	307 (69.1)	32 (7.2)	107 (24.1)	160 (36)	8 (1.8)	

※ 참고: 2019년 접수 456건 중 미제 사건 12건 이월(공판 10건, 약식 2건)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명 (비율)	2,276 (100)	726 (31.9)	69 (3)	271 (11.9)	363 (16)	19 (0.8)	4 (0.2)	1,550 (68.1)	167 (7.3)	752 (33.1)	578 (25.4)	53 (2.3)	0 (0)
2015년 명 (비율)	407 (100)	136 (33.4)	11 (2.7)	44 (10.8)	78 (19.2)	2 (0.5)	1 (0.2)	271 (66.6)	27 (6.6)	142 (34.9)	90 (22.1)	12 (3)	0 (0)
2016년 명 (비율)	530 (100)	168 (31.7)	14 (2.6)	64 (12.1)	84 (15.9)	6 (1.1)	0 (0)	362 (68.3)	41 (7.7)	194 (36.6)	112 (21.2)	15 (2.8)	0 (0)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14 (2.8)	73 (14.3)	72 (14.1)	4 (0.8)	1 (0.2)	345 (67.8)	40 (7.8)	183 (36)	113 (22.2)	9 (1.8)	0 (0)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15 (3.9)	41 (10.6)	62 (16.1)	2 (0.5)	1 (0.2)	265 (68.7)	27 (7)	126 (32.7)	103 (26.7)	9 (2.3)	0 (0)
2019년 명 (비율)	444 (100)	137 (30.9)	15 (3.4)	49 (11.1)	67 (15.1)	5 (1.1)	1 (0.2)	307 (69.1)	32 (7.2)	107 (24.1)	160 (36)	8 (1.8)	0 (0)

○ 분석

- 2019년 처리 사건 중 병 51.1%, 준·부사관 35.2%, 장교 10.6%, 군무원 2.9%

6. 2019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444 (100)	137 (30.9)		10 (2.2)	50 (11.3)	41 (9.2)	18 (4.1)	7 (1.6)	4 (0.9)	7 (1.6)		307 (69.1)	296 (66.7)	11 (2.4)

* 약식 기타: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등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을 명 (비율)	2,276 (100)	726 (31.9)		59 (2.6)	205 (9)	266 (11.7)	98 (4.3)	40 (1.8)	19 (0.8)	39 (1.7)		1,550 (69.1)	1,415 (62.2)	135 (6.9)
2015년 명 (비율)	407 (100)	136 (33.4)		9 (2.2)	46 (11.3)	37 (9.1)	27 (6.6)	9 (2.2)	1 (0.3)	7 (1.7)		271 (66.6)	260 (63.9)	11 (2.7)
2016년 명 (비율)	530 (100)	168 (31.7)		18 (3.4)	23 (4.3)	73 (13.8)	28 (5.3)	9 (1.7)	6 (1.1)	11 (2.1)		362 (68.3)	314 (59.2)	48 (9.1)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8 (1.6)	44 (8.4)	68 (13.4)	20 (3.9)	7 (1.4)	5 (1)	12 (2.3)		345 (67.8)	294 (57.8)	51 (10)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14 (3.6)	42 (10.9)	47 (12.2)	5 (1.3)	8 (2)	3 (0.8)	2 (0.5)		265 (68.7)	251 (65)	14 (3.7)
2019년 명 (비율)	444 (100)	137 (30.9)		10 (2.2)	50 (11.3)	41 (9.2)	18 (4.1)	7 (1.6)	4 (0.9)	7 (1.6)		307 (69.1)	296 (66.7)	11 (2.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1.9%, 약식 사건 69.1% 처리
- 최근 5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11.7%, 집행유예 9%, 자유형 2.6%, 무죄 1.8%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재산형 감소 추세
- 2019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11.3%, 재산형 9.2%, 선고유예 4.1%, 자유형 2.2%
- 2019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선고유예 증가, 자유형·재산형 감소

7.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444	137	0	10	50	41	18	7	4	7	0	307	296	11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11	11		7		4							
	상관에관한죄	7	7		4		2			1				
	군용물에관한죄	3	2			1	1					1	1	
	초병에관한죄	10	10		7		3							
	성범죄(군인등)	19	19		1	10	1	4	2		1			
	기타	23	5			3	1				1		18	15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1	1			1								
	문서인장죄	4	3				2			1		1	1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6	1			1						5	4	1
	사기공갈죄	20	9		3	2	3		1			11	10	1
	횡령배임죄	2										2	2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33	8				6			1	1	25	24	1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28	3		1	1		1				25	24	1
	도교법위반	5	1							1		4	4	
	도교법위반(음주)	98										98	98	
	특가법위반(도주)	4	3		1	1		1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범죄	형법위반	13	8		2	2	3			1		5	5	
	성폭법위반	24	15		3	6	4		1	1		9	8	1
	아청법위반	1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범죄	상해,폭행죄	68	14		4	8		1	1			54	52	2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27	6		3	3						21	20	1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기타 법률위반	36	9		1	0	7			1			27	27	

○ 분석

- 교통범죄 30.4%, 주요형법범 14.9%, 성범죄(군형법 포함) 12.8%,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2.2%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4.8%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52.6%

8.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444	137	0	10	50	41	18	7	4	7	0	307	296	11
장 교	장성	0										0		
	영관	18	7		1	3	1	2				11	11	
	위관	29	8	1	2	2	2			1		21	21	
준·부사관	156	49		2	15	18	9	3	2			107	106	1
병	227	67		7	31	16	5	1	1	6		160	150	10
군무원	13	5			1	2		1	1			8	8	
민간인	1	1					1					0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3.3%, 집행유예·선고유예 20%, 무죄 13.3%, 자유형 6.7%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6.7%, 집행유예 30.6%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6.2%, 재산형 23.9%

9.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137	61	31	13	10	12	3	1	3	1	2
구 속	22	9	4	2	3	4					
불구속	115	52	27	11	7	8	3	1	3	1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6.1%, 불구속 사건 83.9%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68.2%, 121일 이상 31.8%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78.3%, 121일 이상 120일 이내 21.7%

10. 2019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37	15	49	67	5	1	
확정	소계	86	4	30	48	3	1
	유죄	80	4	27	47	1	1
	무죄	3		2		1	
	면소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3		1	1	1	
상소	소계	44	10	19	13	2	
	쌍방항소	26	6	13	6	1	
	피고인항소	8	1	2	4	1	
	군검사항소	10	3	4	3		
이송	7	1		6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62.8%, 상소율 32.1%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3%
- 신분별 상소율 준·부사관 43.2%, 병 29.5%, 장교 22.7%, 군무원 4.5%

11.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0 (100)		1 (10)	1 (10)		7 (70)	1 (10)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9 (100)		3 (5.1)	4 (6.8)	10 (16.9)	27 (45.8)	15 (25.4)
2015년 명 (비율)	9 (100)			1 (11)	4 (45)	1 (11)	3 (33)
2016년 명 (비율)	18 (100)				2 (15)	10 (55)	6 (30)
2017년 명 (비율)	8 (100)		1 (11.1)		2 (33.3)	3 (33.3)	2 (22.3)
2018년 명 (비율)	14 (100)		1 (7.1)	2 (14.3)	2 (14.3)	6 (42.9)	3 (21.4)
2019년 명 (비율)	10 (100)		1 (10)	1 (10)		7 (70)	1 (1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8.8%, 1년 이상 3년 미만 45.8%, 1년 미만 25.4%
- 2019년 징역 5년 이상 2명(징역 13년 1명, 징역 7년 1명)

12.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130 (100)	82 (63.1)	23 (17.7)	59 (45.4)	48 (36.9)

※ 이송사건(7명)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88 (100)	456 (66.3)	100 (14.5)	356 (51.8)	232 (33.7)
2015년	명 (비율)	144 (100)	100 (69)	20 (14)	80 (55)	44 (31)
2016년	명 (비율)	169 (100)	111 (65.7)	25 (14.8)	86 (50.9)	58 (34.3)
2017년	명 (비율)	160 (100)	105 (65.6)	26 (16.3)	79 (49.3)	55 (34.4)
2018년	명 (비율)	85 (100)	58 (68.2)	6 (7)	52 (61.2)	27 (31.8)
2019년	명 (비율)	130 (100)	82 (63.1)	23 (17.7)	59 (45.4)	48 (36.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3.7%, 국선변호인 중 민간변호사 선정률 21.9%
- 2019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36.9%, 국선변호인 중 군법무관 선정률 72%
- 2019년 전년 대비 사건수의 증가로 국선 및 사선변호인 선임률 모두 증가

13. 2018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계	43	1	2	2	2			2	4	4	4		1		3	12	2	1					1	
군형법위반	19		2	1	1				3		3				1	5		1					1	
형법위반	8			1				1		2					1	2								
성폭법위반	15	1			1			1	1	2			1		1	5	2							
아청법위반	1										1													
기타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승					
5년 평균	합계	197	6	8	7	1	6		6	17	32	7	5	1	1	10	43	26	6	2		9			3	1	
	군형법위반	60	3	6	2	2				10		5				2	21	1	3			4				1	
	형법위반	65	1		1	2			2	4	10	1	3		1	5	11	18	1	1		3			1		
	성폭법위반	60	2	2	4	1	2		4	3	16		2	1		2	9	7	2	1					2		
	아청법위반	12										6	1			1	2					2					
	기타																										
2015년	소계	34		2	1	1	2		1	3	5	1			2	8	3	3			2						
	군형법위반	10		1		1				1	1	1				4	1				1						
	형법위반	11				1			1		2				1	3	2	1									
	성폭법위반	11		1	1	1				2	2				1	1	1	1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2016년	소계	52	1	2	2		1		4	13	1	1		1	1	4	14	1	1		4				1		
	군형법위반	5		1					1		1					1	1				1						
	형법위반	25	1			1			3	2	1			1	1	2	11				2						
	성폭법위반	18		1	2					8		1				1	2	1	1						1		
	아청법위반	4									3											1					
	기타																										
2017년	소계	38	1	1	2		1		3	4	3	1	2		3	10	2	1	1		1				2		
	군형법위반	15		1	1					3		1			1	6		1			1						
	형법위반	10								1	1		2		1	2	1		1						1		
	성폭법위반	11	1		1	1			3		1					2	1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2018년	소계	30	3	1					2	7		2			1	9	5										
	군형법위반	11	3	1						2						5											
	형법위반	11									3		1		1	2	4										
	성폭법위반	5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2019년	소계	43	1	2	2		2		2	4	4	4		1	3	12	2	1			2				1		
	군형법위반	19		2	1	1				3		3			1	5		1			1				1		
	형법위반	8			1				1		2				1	2					1						
	성폭법위반	15	1			1			1	1	2			1	1	5	2										
	아청법위반	1										1															
	기타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일반형법위반 33%, 성폭법위반·군형법위반 각 30.5%, 병 48.7%, 준·부사관 35%, 장교 14.2%, 군무원 2%, 재산형·집행유예 각 34.5%, 자유형 11.2%, 무죄·선고유예 각 7.1%
- 2019년 군형법위반 44.2%, 성폭법위반 34.9% 차지, 전년 대비 군형법위반 증가
- 2019년 병 46.5%, 준·부사관 34.9%, 장교 16.3%
- 2019년 집행유예·재산형 각 41.9%, 자유형 14%

1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1 (100)			1 (10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 (100)		2 (50)	2 (50)			
2015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6년	명 (비율)							
2017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8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9년	명 (비율)	1 (100)			1 (100)			

○ 분석

- 최근 5년 민간인 처리 4건
 - * 2015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2년
 - * 2017년 초병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2년(예비역)
 - * 2018년 군용물손괴로 선고유예(예비역)
 - * 2019년 초병특수폭행 등으로 선고유예(예비역)

15.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137 (100)	44 (32.1)	86 (62.8)	7 (5.1)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26 (100)	244 (33.6)	443 (61)	39 (5.4)
2015년	명 (비율)	136 (100)	41 (30.1)	88 (64.7)	7 (5.2)
2016년	명 (비율)	168 (100)	63 (37.5)	94 (56)	11 (6.5)
2017년	명 (비율)	164 (100)	65 (39.6)	87 (53.1)	12 (7.3)
2018년	명 (비율)	121 (100)	31 (25.6)	88 (72.7)	2 (1.7)
2019년	명 (비율)	137 (100)	44 (32.1)	86 (62.8)	7 (5.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33.6%, 확정 61%, 이송 5.4%
- 2019년 항소 32.1%, 확정 62.8%, 이송 5.1%
- 2019년 전년 대비 항소율 증가

16.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44 (100)	8 (18.2)	10 (22.7)	26 (59.1)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4 (100)	108 (44.3)	52 (21.3)	84 (34.4)
2015년	명 (비율)	41 (100)	26 (63)	9 (22)	6 (15)
2016년	명 (비율)	63 (100)	27 (42.9)	14 (22.2)	22 (34.9)
2017년	명 (비율)	65 (100)	33 (50.8)	13 (20)	19 (29.2)
2018년	명 (비율)	31 (100)	14 (45.2)	6 (19.3)	11 (35.5)
2019년	명 (비율)	44 (100)	8 (18.2)	10 (22.7)	26 (59.1)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9%, 군검사의 항소율 56%
- 2019년 피고인의 항소율 77%, 군검사의 항소율 82%
- 2019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17. 2019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310 (100)	307 (99)	2 (0.7)	1 (0.3)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550 (100)	1,423 (91.8)	86 (5.6)	41 (2.6)
2015년	명 (비율)	271 (100)	260 (96)	7 (2.5)	4 (1.5)
2016년	명 (비율)	362 (100)	314 (86.8)	29 (8)	19 (5.2)
2017년	명 (비율)	345 (100)	294 (85.2)	40 (11.6)	11 (3.2)
2018년	명 (비율)	265 (100)	251 (94.7)	8 (3)	6 (2.3)
2019년	명 (비율)	307 (100)	304 (99)	2 (0.7)	1 (0.3)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1.8%, 공판절차 회부 5.6%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절차 회부, 이송사건 감소 추세임
- 2019년 약식명령 99%, 공판절차 회부 0.7%, 전년 대비 약식명령률 증가, 공판절차 회부 감소

18. 2019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30	23	7	76
체포영장	12	11	1	91
압수·수색영장	115	110	5	95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210	174	36	83
	체포영장	46	39	7	85
	압수·수색영장	441	410	31	94
2015년	구속영장	64	58	6	91
	체포영장	14	11	3	79
	압수·수색영장	63	63		100
2016년	구속영장	46	38	8	83
	체포영장	10	7	3	70
	압수·수색영장	64	54	10	84
2017년	구속영장	36	31	5	8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5	12	87
2018년	구속영장	34	24	10	70.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2	98	4	96.1
2019년	구속영장	30	23	7	76
	체포영장	12	11	1	91
	압수·수색영장	115	110	5	95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증가, 구속영장 청구 감소 추세
- 2019년 전년 대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증가

19. 2019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합계	30	23	7
장 교	4	4	
준·부사관	11	9	2
병	15	10	5
군무원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5년 평균율	합 계	210	174	36
	장 교	23	18	5
	준·부사관	74	63	11
	병	110	90	20
	군무원 민간인	3	3	
2015년	소계	64	58	6
	장 교	4	2	2
	준·부사관	27	25	2
	병	33	31	2
	군무원 민간인			
2016년	소계	46	38	8
	장 교	4	3	1
	준·부사관	13	10	3
	병	26	22	4
	군무원 민간인	3	3	
2017년	소계	36	31	5
	장 교	7	5	2
	준·부사관	11	10	1
	병	18	16	2
	군무원 민간인			
2018년	소계	34	24	10
	장 교	4	4	
	준·부사관	12	9	3
	병	18	11	7
	군무원 민간인			
2019년	소계	30	23	7
	장 교	4	4	
	준·부사관	11	9	2
	병	15	10	5
	군무원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11%, 준·부사관 35.2%, 병 52.4%, 군무원 1.4%, 발부를 장교 78.3%, 준·부사관 85.1%, 병 81.8%, 군무원 100%
- 구속영장 청구건수 및 발부를 감소 추세

20. 2019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3	2	1	67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	2		100

※ 기타: 증거보전 및 상소권 회복 청구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3	9	4	69
	구속적부심	10		10	0
	형사보상청구	7	4	3	57
	기 타	9	5	4	56
2015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16년	보석청구	5	5		10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017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4		4	0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3	2	1	66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3	1	2	33
	기 타	4	1	3	25
2019년	보석청구	3	2	1	67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	2		10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69%, 구속적부심 인용률 0%

21. 2019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346	38	126	172	10	
원판결확인	346	38	126	172	1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총계	1,747	178	880	632	57	0	
	원판결확인	1,744	178	879	630	57	0	
	원판결 확인율	99	100	99	99	100	100	
	감경	1/2미만	3		1	2		
		1/2이상						
2015년	총계	300	28	160	99	13	0	
	원판결확인	297	28	159	97	13	0	
	원판결 확인율	99	100	99	99	100	100	
	감경	1/2미만	3		1	2		
		1/2이상						
2016년	총계	390	38	221	118	13	0	
	원판결확인	390	38	221	118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총계	406	45	230	119	12	0	
	원판결확인	406	45	230	119	12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총계	305	29	143	124	9	0	
	원판결확인	305	29	143	124	9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총계	346	38	126	172	10	0	
	원판결확인	346	38	126	172	10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99%
- 2016년 이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원판결확인 100%

22. 2019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7	2	3	1	1	
권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2	1			1
	기타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1			1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교통법범	교통법위반	1		1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특가법위반(도주)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상법범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법범	상해, 폭행죄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23. 2019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19조1	병장	경범죄처벌법위반	과료 30,000원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1. 2019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명 (비율)	188 (100)	85 (45)	103 (55)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명 (비율)	합계 (비율)	명 (비율)	합계 (비율)	명 (비율)	합계 (비율)
5년 평균율		971 (100)	423 (44)		548 (56)	
2015년	명 (비율)	166 (100)	75 (45)		91 (55)	
2016년	명 (비율)	238 (100)	92 (39)		146 (61)	
2017년	명 (비율)	193 (100)	74 (38)		119 (62)	
2018년	명 (비율)	186 (100)	97 (52)		89 (48)	
2019년	명 (비율)	188 (100)	85 (45)		103 (5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4%, 약식사건 56%
- 2019년 전년 대비 전체 형사사건 1% 증가
- 2019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14% 감소 및 약식사건 14% 증가

2.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85	103	17	22	36	46	27	30	3	5	2	
범죄대분류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2	4	1	3	1	1					
	상관에관한죄	9		2		6		1				
	군용물에관한죄	2				2						
	초병에관한죄	5		1		1		2			1	
	성범죄(군인등)	17		5		8		4				
	기타											
범죄대분류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2	5		1		1	2	3			
	사기공갈죄	3	2	1		1	1	1	1			
	횡령배임죄	2	1	2	1							
	성풍속에관한죄											
	기타	8	15	2	4	3	6	3	5			
범죄대분류	교특법위반		4		1		1				2	
	도교법위반		1		1							
	도교법위반(음주)	9	38	2	7	5	28	1	3	1		
	특가법위반(도주)	1	1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범죄대분류	형법위반	2	1				1	1				1
	성폭법위반	8	3	1	2	4		3	1			
	아청법위반	3	2			2	1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범죄대분류	상해, 폭행죄	8	14			2	4	5	8	1	2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4	12		2		2	3	7	1	1		

○ 분석

- 2019년 접수 중 교통범죄 29%, 주요형법범 20%, 성범죄(군형법 포함) 1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및 폭력범죄 각 12%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81%
- 전체 주요사건 중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 0%

3. 2019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88 (100)	39 (21)	82 (44)	57 (30)	8 (4)	2 (1)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962 (100)	162 (17)	444 (46)	298 (31)	51 (5)	7 (1)
2015년	명 (비율)	163 (100)	29 (18)	68 (42)	57 (35)	9 (5)	
2016년	명 (비율)	232 (100)	37 (16)	112 (48)	67 (29)	15 (6)	1 (1)
2017년	명 (비율)	193 (100)	28 (15)	96 (50)	58 (30)	9 (4)	2 (1)
2018년	명 (비율)	186 (100)	29 (16)	86 (46)	59 (32)	10 (5)	2 (1)
2019년	명 (비율)	188 (100)	39 (21)	82 (44)	57 (30)	8 (4)	2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6%, 병 31%, 장교 17%, 군무원 5%
- 연도별 분석결과 2016년도 이후 사건 감소 추세
- 2019년 접수 중 준·부사관 44%, 병 30%, 장교 21%, 군무원 4%, 민간인 1%
- 2019년 전년 대비 장교 5% 증가

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85 (100)	17 (20)	36 (42)	27 (32)	3 (4)	2 (2)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39 (100)	74 (17)	179 (41)	159 (36)	21 (5)	6 (1)
2015년	명 (비율)	82 (100)	15 (18)	32 (39)	31 (38)	4 (5)	
2016년	명 (비율)	101 (100)	19 (19)	37 (37)	41 (40)	4 (4)	
2017년	명 (비율)	74 (100)	7 (9)	35 (47)	25 (34)	5 (7)	2 (3)
2018년	명 (비율)	97 (100)	16 (17)	39 (40)	35 (36)	5 (5)	2 (2)
2019년	명 (비율)	85 (100)	17 (20)	36 (42)	27 (32)	3 (4)	2 (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1%, 병 36%, 장교 17%, 군무원 5%, 민간인 1%
- 2019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12% 감소
- 2019년 접수 중 준·부사관 42%, 병 32%, 장교 20%, 군무원 4%
- 2019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 증가

5.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82 (100)	81 (45)	14 (8)	30 (16)	32 (18)	3 (2)	2 (1)	101 (55)	21 (12)	46 (25)	30 (16)	4 (2)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비율)	1,006 (100)	438 (44)	73 (7)	176 (18)	165 (17)	20 (2)	4 (=0)	568 (56)	97 (10)	283 (28)	154 (15)	33 (3)	1 (=0)
2015년 명 (비율)	172 (100)	81 (47)	15 (9)	32 (19)	30 (17)	4 (2)		91 (53)	17 (10)	38 (22)	30 (18)	6 (3)	
2016년 명 (비율)	251 (100)	101 (40)	19 (7)	37 (15)	41 (16)	4 (2)		150 (60)	22 (9)	79 (31)	36 (14)	12 (5)	1 (1)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7 (4)	31 (17)	23 (12)	4 (2)		122 (65)	19 (10)	68 (36)	30 (17)	5 (2)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2)	18 (8)	46 (22)	39 (19)	5 (2)	2 (1)	104 (49)	18 (8)	52 (24)	28 (13)	6 (3)	
2019년 명 (비율)	182 (100)	81 (45)	14 (8)	30 (16)	32 (18)	3 (2)	2 (1)	101 (55)	21 (12)	46 (25)	30 (16)	4 (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준·부사관 46%, 병 32%, 장교 17%, 군무원 5%
- 2019년 처리 중 준·부사관 41%, 병 34%, 장교 20%, 군무원 4%, 민간인 1%
- 2019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26% 감소, 약식사건 3% 감소

6. 2019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182 (100)	81 (45)		2 (1)	22 (12)	28 (15)	13 (7)	5 (3)		10 (6)	1 (1)	101 (55)	92 (50)	9 (5)

* 약식 기타: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등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비율)	1,006 (100)	438 (44)	0 (0)	20 (2)	134 (13)	144 (14)	56 (5)	26 (3)	5 (1)	37 (4)	16 (2)	568 (56)	521 (52)	47 (4)
2015년 명 (비율)	172 (100)	81 (47)		6 (3)	20 (12)	33 (19)	11 (6)	3 (2)	2 (1)	5 (3)	1 (1)	91 (53)	84 (49)	7 (4)
2016년 명 (비율)	251 (100)	101 (40)		6 (2)	35 (15)	24 (10)	14 (5)	7 (3)	3 (1)	6 (2)	6 (2)	150 (60)	134 (54)	16 (6)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2 (1)	16 (9)	22 (12)	7 (4)	6 (3)		10 (5)	2 (1)	122 (65)	112 (60)	10 (5)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1)		4 (2)	41 (19)	37 (17)	11 (5)	5 (2)		6 (3)	6 (3)	104 (49)	99 (47)	5 (2)
2019년 명 (비율)	182 (100)	81 (45)		2 (1)	22 (12)	28 (15)	13 (7)	5 (3)		10 (6)	1 (1)	101 (55)	92 (50)	9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4%, 약식사건 56% 처리,
공판사건 중 재산형 33%, 집행유예 31%, 선고유예 13%, 무죄 6%, 자유형 5%
- 2019년 공판사건 중 재산형 35%, 집행유예 27%, 선고유예 16%, 무죄 6%, 자유형 2%
- 2019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37%→27%) 대폭 감소

7. 2019년 형사사건 범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82	81		2	23	27	13	5		10	1	101	92	9
관형법 범법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6	2		2							4	4	
	상관에관한죄	6	6		3		2			1				
	군용물에관한죄	2	2		1		1							
	초병에관한죄	4	4		1		3							
	성범죄(군인등)	11	11		1	4	1	3			2			
	기타													
주요형법 범법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1	1		1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6	2			1				1		4	3	1
	사기공갈죄	5	3		2	1						2	2	
	횡령배임죄	2	1		1							1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9	4			2	1	1				15	14	1
교통법 범법	교통법위반	4										4	4	
	도교법위반	1										1	1	
	도교법위반(음주)	42	8		2	5				1		34	32	2
	특가법위반(도주)	1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법 범법	형법위반	3	2							2		1	1	
	성폭법위반	16	12		1	2	7		1		1	4	3	1
	아청법위반	5	3			1	2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 범법	상해,폭행죄	24	10		3	3	3				1	14	13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24	10				5		3		2		14	13	1

○ 분석

- 교통범죄 26%, 성범죄(군형법 포함) 19%, 주요형법범 18%, 폭력범죄 13%,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
- 군형법범 중 성범죄 38%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83%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36%, 선고유예 27%

8. 2019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82	81	0	2	22	28	13	5	0	10	1	101	92	9
장 교	장성	0	0									0		
	영관	9	2		1	1						7	7	
	위관	26	12			4	6	2				14	13	1
준·부사관	76	30		1	11	11	4	2			1	46	42	4
병	62	32			5	9	7	2		9		30	27	3
군무원	7	3			1	1		1				4	3	1
기타	2	2			1					1		0		

○ 분석

- 장교 공판사건의 경우 재산형 50%, 집행유예 29%, 선고유예 14%
- 준·부사관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37%, 선고유예 13%, 무죄 7%, 자유형 3%
- 병 공판사건의 경우 재산형 28%, 선고유예 22%, 집행유예 16%, 무죄 6%
- 군무원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재산형·무죄 각 33%

9.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81	43	19	12	6	1					
구 속	8	7			1						
불구속	73	36	19	12	5	1					

○ 분석

- 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10%, 불구속 사건 90%
- 구속사건 중 120일 이내 88%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92%, 121일 이상 8%

10. 2019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81	14	30	32	3	2
확 정	소계	42	9	15	17	1
	유죄	41	9	14	17	1
	무죄	1		1		
	면소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상 소	소계	29	5	15	6	3
	쌍방향소	11	3	8		
	피고인향소	13	2	5	4	2
	군검사향소	5		2	2	1
이송	10			9		1

○ 분석

- 공판 사건 중(이송 제외) 1심 확정 59%, 상소율 41%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8%
- 신분별 상소율 장교 36%, 준·부사관 50%, 병 26%, 군무원 100%

11.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2 (100)	0 (0)	0 (0)	0 (0)	0 (0)	2 (100)	0 (0)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0 (100)	0 (0)	0 (0)	2 (10)	4 (20)	9 (45)	5 (25)
2015년	명 (비율)	6 (100)	0 (0)	0 (0)	0 (0)	1 (17)	2 (33)	3 (50)
2016년	명 (비율)	6 (100)	0 (0)	0 (0)	1 (17)	0 (0)	3 (50)	2 (33)
2017년	명 (비율)	2 (100)	0 (0)	0 (0)	1 (50)	0 (0)	1 (50)	0 (0)
2018년	명 (비율)	4 (100)	0 (0)	0 (0)	0 (0)	3 (75)	1 (25)	0 (0)
2019년	명 (비율)	2 (100)	0 (0)	0 (0)	0 (0)	0 (0)	2 (10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30%, 1년 이상 3년 미만 45%, 1년 미만 25%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
- 2019년 1년 이상 3년 미만 100%

12.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71 (100)	37 (52)	10 (14)	27 (38)	34 (48)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08 (100)	219 (54)	75 (18)	144 (36)	189 (46)
2015년	명 (비율)	82 (100)	53 (64)	20 (24)	33 (40)	29 (36)
2016년	명 (비율)	108 (100)	53 (49)	11 (10)	42 (39)	55 (51)
2017년	명 (비율)	56 (100)	32 (57)	16 (28.5)	16 (28.5)	24 (43)
2018년	명 (비율)	91 (100)	44 (48)	18 (20)	26 (28)	47 (52)
2019년	명 (비율)	71 (100)	37 (52)	10 (14)	27 (38)	34 (4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46%,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18%
- 연도별 분석결과 2015년도 이후 군법무관 선정률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 증가, 민간국선변호사 및 사선변호인 선임률 계속 변동
- 2019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48%,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14%, 군법무관 선정률 38%
- 2019년 전년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률 증가, 사선변호인 선임률 감소

13. 2019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27	1	2	1	1			1	4	6	1				1	3	1	1					
군형법위반	11	1	2		1				1	1	1				1		1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2			1				1	2	3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177	6	9	5	2	4	0	0	4	30	23	7	3	0	5	5	25	21	7	2	1	13	0	4	0	1	0	0	0
	군형법위반	83	5	9	0	2	0	0	0	1	20	1	7	2	0	3	0	16	0	7	0	0	6	0	3	0	1	0	0	0
	형법위반	21	1	0	1	0	2	0	0	1	1	0	0	1	0	0	2	2	6	0	1	0	2	0	1	0	0	0	0	0
	성폭법위반	54	0	0	3	0	1	0	0	2	8	14	0	0	0	1	0	4	15	0	1	1	4	0	0	0	0	0	0	0
	아청법위반	18	0	0	1	0	1	0	0	0	1	7	0	0	0	1	3	3	0	0	0	0	1	0	0	0	0	0	0	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년	소계	30	3	1	1	0	1	0	0	2	6	4	0	0	0	0	3	8	0	0	0	1	0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0	2	1						1		4					2													
	형법위반	5	1														1	3												
	성폭법위반	13			1		1			1	4							5				1								
	아청법위반	2									2																			
	기타	0																												
2016년	소계	53	1	1	2	0	2	0	0	1	11	4	1	1	0	4	2	9	6	3	0	1	3	0	1	0	0	0	0	0
	군형법위반	26	1	1						9		1	1			3		5		3			1			1				
	형법위반	6			1		1			1	1						1	1												
	성폭법위반	15			1					1	3					1		2	5			1	1							
	아청법위반	6					1				1						1	2					1							
	기타	0																												
2017년	소계	25	1	0	0	0	1	0	0	0	4	3	0	1	0	0	2	5	2	3	1	0	2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3	1							4			1				3		3				1							
	형법위반	4				1													1		1		1							
	성폭법위반	4									2						1	1												
	아청법위반	4									1						2	1												
	기타	0																												
2018년	소계	42	0	5	1	1	0	0	0	2	9	4	1	1	0	1	1	7	2	0	0	0	3	0	3	0	1	0	0	0
	군형법위반	23		5		1				1	5		1					5					2			2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10								1	4	2					1	1					1							
	아청법위반	3			1						1					1														
	기타	1									1																			
2019년	소계	27	1	2	1	1	0	0	0	1	4	6	1	0	0	0	0	1	3	1	1	0	4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1	1	2		1				1	1	1					1		1				2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2			1					1	2	3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47%, 성폭법위반 31%, 형법위반 12%, 아청법위반 10%, 신분별 병 42%, 준·부사관 41%, 장교 14%, 군무원 3%, 처분별 집행유예 38%, 재산형 28%, 자유형 11%, 선고유예 8%, 무죄 5%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성범죄 사건 수 계속 변동
- 2019년 전년 대비 군형법위반 사건 감소
- 2019년 성폭법위반 44%, 군형법위반 41%, 아청법위반 11%, 형법위반 4%
- 2019년 준·부사관 44%, 병 37%, 장교 19%
- 2019년 재산형 37%, 집행유예 26%, 선고유예 11%, 자유형 7%, 무죄 4%

14. 2019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2 (100)		1 (50)				1 (5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 (100)		2 (50)	1 (25)			1 (25)
2015년	명 (비율)	0						
2016년	명 (비율)	0						
2017년	명 (비율)	0						
2018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19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사건 처리 중 집행유예 50%, 선고유예 25%
- 최근 5년 민간인 사건 처리 총 3건
- 2019년 민간인 재판 1명

15.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81 (100)	29 (36)	42 (52)	10 (12)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48 (100)	170 (38)	240 (54)	38 (8)
2015년	명 (비율)	82 (100)	27 (33)	50 (61)	5 (6)
2016년	명 (비율)	100 (100)	39 (39)	54 (54)	7 (7)
2017년	명 (비율)	75 (100)	27 (36)	38 (51)	10 (13)
2018년	명 (비율)	110 (100)	48 (44)	56 (50)	6 (6)
2019년	명 (비율)	81 (100)	29 (36)	42 (52)	10 (1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확정 54%, 항소 38%, 이송 8%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확정, 이송 사건 수 각 계속 변동
- 2019년 확정 52%, 항소 36%, 이송 12%
- 2019년 전년 대비 항소 감소, 이송 증가

16. 2019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21 (100)	9 (43)	3 (14)	9 (43)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62 (100)	38 (23)	38 (23)	86 (54)
2015년	명 (비율)	27 (100)	5 (18)	7 (26)	15 (56)
2016년	명 (비율)	39 (100)	9 (23)	10 (26)	20 (51)
2017년	명 (비율)	27 (100)	5 (19)	10 (37)	12 (44)
2018년	명 (비율)	48 (100)	10 (21)	8 (17)	30 (62)
2019년	명 (비율)	21 (100)	9 (43)	3 (14)	9 (43)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쌍방 항소 54%, 피고인 및 군검사 항소 각 23%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항소 건수 모두 계속 변동
- 2019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증가, 군검사의 항소율 감소

17. 2019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101 (100)	92 (91)	9 (9)	0 (0)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68 (100)	521 (91)	44 (8)	3 (1)
2015년	명 (비율)	91 (100)	84 (92)	7 (8)	
2016년	명 (비율)	150 (100)	134 (89)	15 (10)	1 (1)
2017년	명 (비율)	122 (100)	112 (92)	8 (6)	2 (2)
2018년	명 (비율)	104 (100)	99 (95)	5 (5)	
2019년	명 (비율)	101 (100)	92 (91)	9 (9)	0 (0)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1%, 공판절차 회부 8%
- 2019년 약식명령 91%, 공판절차 회부 9%
- 2019년 전년 대비 약식명령 감소, 공판절차 회부 증가

18. 2019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3	8	5	62
체포영장	2	2	0	100
압수·수색영장	46	41	5	89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79	62	17	78
	체포영장	21	19	2	90
	압수·수색영장	182	168	14	92
2015년	구속영장	17	14	3	82
	체포영장	7	7		100
	압수·수색영장	27	25	2	93
2016년	구속영장	23	19	4	83
	체포영장	6	4	2	67
	압수·수색영장	55	51	4	93
2017년	구속영장	11	7	4	64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25	24	1	96
2018년	구속영장	15	14	1	93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29	27	2	93
2019년	구속영장	13	8	5	62
	체포영장	2	2	0	100
	압수·수색영장	46	41	5	8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8%, 체포영장 90%, 압수·수색영장 92%
- 연도별 분석결과 각종 영장 청구율 및 발부율 계속 변동
- 2019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62%,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89%
- 2019년 전년 대비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 건수 감소,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증가

19. 2019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3	10	2	1	8	5	
장 교	3	2	1		1	2	
준·부사관	7	6		1	7		
병	3	2	1			3	
군무원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 계	82	70	5	7	65	17
	장 교	18	14	2	2	13	5
	준·부사관	27	22		5	25	2
	병	35	32	3		25	10
	군무원	2	2			2	
	민간인						
2015년	소계	17	15	0	2	14	3
	장 교	5	4		1	4	1
	준·부사관	4	3		1	4	
	병	8	8			6	2
	군무원						
	민간인						
2016년	소계	26	22	1	3	22	4
	장 교	4	3		1	3	1
	준·부사관	7	5		2	7	
	병	13	12	1		10	3
	군무원	2	2			2	
	민간인						
2017년	소계	11	10	1	0	7	4
	장 교	3	3			2	1
	준·부사관	4	4			3	1
	병	4	3	1		2	2
	군무원						
	민간인						
2018년	소계	15	13	1	1	14	1
	장 교	3	2	1		3	
	준·부사관	5	4		1	4	1
	병	7	7			7	
	군무원						
	민간인						
2019년	소계	13	10	2	1	8	5
	장 교	3	2	1		1	2
	준·부사관	7	6		1	7	
	병	3	2	1			3
	군무원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병 43%, 준·부사관 33%, 장교 22%, 군무원 2%,
발부율 군무원 100%, 준·부사관 93%, 장교 72%, 병 71%
- 2019년 청구율 준·부사관 54%, 장교 및 병 각 23%,
발부율 준·부사관 100%, 장교 33%, 병 0%

20. 2019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		1	
구속적부심	2		2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3		3	

※ 기타: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7	1	6	14
	구속적부심	8	2	6	25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8		8	0
2015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16년	보석청구	3	1	2	33
	구속적부심	4		4	0
	형사보상청구				
	기 타	2		2	0
2017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기 타	3		3	0
2019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3		3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14%, 구속적부심 허가율 25%, 형사보상청구 인용 100%
- 2019년 보석청구 및 구속적부심 기각률 100%,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100%

21. 2019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26	28	57	36	4	1
원판결확인	126	28	57	36	4	1
원판결 확인율	100	22	45.2	29	3	0.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682	119	340	184	38	1
	원판결확인	682	119	340	184	38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5년	소계	118	23	49	37	9	0
	원판결확인	118	23	49	37	9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6년	소계	162	25	85	39	13	0
	원판결확인	162	25	85	39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7년	소계	136	22	76	32	6	0
	원판결확인	136	22	76	32	6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8년	소계	140	21	73	40	6	0
	원판결확인	140	21	73	40	6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9년	소계	126	28	57	36	4	1
	원판결확인	126	28	57	36	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9년 무죄 선고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5		2	2	1	
권 형 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기타						
주 요 형 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교 통 법 범 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성 법 범 죄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 력 법 범 죄	상해, 폭행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4		2	1	1	

23.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 명	결 과
공본 2019조1	중사	실화	벌금 100,000원
유탄사 2019조1	중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등	청구기각 결정
전투사 2019조1	상병	폭행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19조2	상병	절도	벌금 200,000원
전투사 2019조3	하사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000원
전투사 2019조4	병장	공문서부정행사	벌금 200,000원
전투사 2019조5	일병	절도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9조6	병장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벌금 100,000원
유탄사 2019조2	상병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벌금 200,000원
전투사 2019조7	대위	절도	벌금 100,000원
기동사 2019조1	상병	절도	벌금 50,000원
작사 2019조1	대위(진)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벌금 100,000원
기동사 2019조2	일병	절도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9조8	이병	절도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19조9	일병	절도, 사기미수	벌금 20,000원
전투사 2019조10	상병	절도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19조11	소령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200,000원
공본 2019조2	공사생도	공문서부정행사	벌금 50,000원
기동사 2019조3	상병	절도	벌금 50,000원
유탄사 2019조3	일병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150,000원
전투사 2019조12	중위(진)	절도	벌금 200,000원
공본 2019조3	중령(진)	절도	벌금 100,000원
기동사 2019조4	일병	절도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9조13	상병	재물손괴	벌금 200,000원
전투사 2019조14	중사	재물손괴	벌금 50,000원
전투사 2019조15	일병	사기	청구기각 결정



2019년
주요 판례



2019년 주요 판례

□ 고등군사법원

○ 2018노238 근무기피목적위계 [2019. 1. 2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어머니가 입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연가 또는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허위진단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 휴가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군검사는 '위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일부파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거짓말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해 근무기피목적 위계를 인정**
항소심은 피고인의 총 12회 휴가사용 중 9회의 휴가사용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청원휴가나 지휘관 위로 휴가를 기대하고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가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긴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보급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청원휴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청원 휴가사유를 보강할만한 또 다른 취지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 점, ④ 일부 휴가는 청원휴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행정보급관들이 피고인의 연가일수를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근무기피 목적으로 청원휴가 사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940 판결)**

○ 2018노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범위반(치사) [2019. 1. 2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약 3.2톤에 달하는 군용물이 적재된 군용트럭의 운행책임관으로서,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 속도의 가감속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속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지시만을 한 과실로, 위 트럭 차량에 적재된 군용물의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위 트럭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도로방벽에서 안전통제 중이던 피해자(41세)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아닌 운전자의 직접적인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피고인의 방향지시에 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파기(벌금 15,000,000원): 운행책임자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
항소심은 ① 피고인은 운행책임관으로 운전병의 운전 전반을 통제하고, 운전병과 함께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과 운전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목적지를 고지하지 않고, 방향과 속도 가감속 지시만 한 점, ③ 운전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위 지시에 따라 운전만 한 점, ④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러 운전자에게 갑자기 우회전을 지시한 점, ⑤ 운전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차량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우회전을 지시한 과실과 사고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914 판결)**

○ 2018노274 사기 [2019. 2. 1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 일병)은 ① A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다음, A가 인적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쿼서비스로 교부받은 체크카드 2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과 A가 나누어 취득하고, ②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안하여, B가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한 다음,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정 장소로 유인하고, B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나누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재물을 취득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범행에 대해 자백 보강의 법적 위반, '②'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에 관한 본질적 행위 분담 합의가 부존재하고, 사기죄의 불가벌적 실행행위 해당하며, 자백보강법칙에 위반됨에도 유죄로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일부 무죄, 징역 1년 6월): 공모공동정범 성립 및 자백보강법칙 위반여부 판단**

항소심은 '①'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내용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진술한 적이 없는 점, A가 교부받은 상자에 체크카드가 2장이 들어있어 피해자가 2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상 체크카드의 명의자가 현금의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피해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②'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와의 공모를 인정하는 점, 자신의 휴대전화를 B에게 넘겨주어 B와 조직원을 연결해 준 점,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와의 순차적 공모의 내용에 따라 현금 수거행위라는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송금을 하여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직 금전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현금수거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은 공범B의 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진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범B에 대한 판결서 등으로 보강되어 자백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상고 취하하여, 항소심 확정됨**

○ 2018노243 점유이탈물횡령 [2019. 2. 2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은 시내버스 안 맨 뒤 좌석에서 피해자(이병)가 분실한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위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물을 횡령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이나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피해물품을 피고인이 습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법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 기각: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

항소심은 ①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통상적으로 분실물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이 했을만한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을 이탈한 장면이 목격되는 점, ② 피고인은 버스터미널 관리사무소에 분실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분실물을 전해준 사람의 신원 및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분실물 처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지갑을 주웠다는 것만으로 피해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3463 판결)**

○ 2018노264 준강간 [2019. 2. 2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병장)이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여, 20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심신상실상태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

항소심은 ① 사건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 이하의 술을 마신 사실, 주점, 모텔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외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고 지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각 CCTV 영상에 기록된 정황상 피해자가 외관상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및 준강간의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군검사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4093 판결)

○ 2018노232 무단이탈 [2019. 3. 2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경계작전명령서 및 경계명령지침서에 따라 A(중사)는 근무간부, 피고인(하사)은 대기간부, B(병장)는 순찰병으로 명령을 받은 자들이며, ① 피고인, A, B는 게임을 하기 위해 소초를 이탈하기로 공모하고, 3시간 26분 동안 근무지 및 지정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 및 지정장소를 이탈하고, ② 피고인과 A는 게임을 하기 위해 소초를 이탈하기로 공모한 다음, 4시간 1분 동안 근무지 및 지정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 및 지정장소를 이탈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전반야 근무자가 후반야 근무자의 근무 시 소초에 대기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명령 또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가 소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은 소초를 이탈하여 10분 거리에 위치한 PC방에 있었으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성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3,000,000원): 소초대기간부가 허가 없이 소초를 이탈한 행위는 무단이탈

항소심은 ① 경계작전 지침서, 인사명령, 제2경비단 작전과의 회신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전반야 근무자들의 역할, 당시 근무에 투입되었던 인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할 때, 전반야 근무자에게는 후반야 근무자의 근무시간인 경우에도 유사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초에 대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대기하는 병력의 임무 중에는 상황발생 시 즉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PC방에서 소초까지 복귀하는데 최소한 10분의 시간이 걸리는 점, 피고인이 이탈 당시 PC방에서 게임을 하여 유사시 연락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지체 없이 응답하여 소초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 오해의 주장을 배척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탈 횟수 및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주도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상고 취하하여, 항소심 확정됨

○ 2018노209, 209-1 업무상과실치사 [2019. 3. 2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A(대위)는 사격통제관으로 사격도로에 배치된 경계병들에게 경계임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확히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B(소위) 및 피고인 C(중사)는 전투진지 공사 후 사격장 인근 전술도로를 이용하여 복귀하는 병력의 각 인솔책임자로 제대의 최선두 및 후미에서 인솔 병사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격 훈련의 종료여부 확인 및 이동 중 사격 훈련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전투진지 공사 복귀 중이던 피해자(상병)가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사망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하였으나, ① 피고인 A는 사고 발생의 자체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교육 임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고, ② 피고인 B와 C는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고, 총성을 들은 시점에는 적절한 지시를 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없음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함을 이유로, 군검사는 각 피고인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쌍방 항소기각: 사격통제관 및 인솔책임자의 업무상 공동과실을 인정**

항소심은 ① 피고인들이 전술도로가 사격장 인근에 위치하여 사격 훈련 중 총탄에 의한 사고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은 인식하고 있던 점, ② 사격통제관뿐만 아니라 주변 전술도로를 이동하는 병력의 인솔을 책임지는 자에게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③ 피고인 A가 타인에게 2차 경계병 선발 및 교육을 일임하였음에도 교육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C는 총성을 듣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격장 인근을 지나면서 사격훈련이 중단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도 재차 총소리를 들었음에도 즉시 병력을 앞드리게 하거나 사격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 B는 사고 전날에도 위 도로를 내려오던 중 함께 병력을 인솔하던 E(하사)가 사격 소리를 듣고 병력이동 중단 및 사격중지 요청을 한 뒤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여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공동과실 및 위 공동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의 정도, 과실의 사고 발생 기여도,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배척함.

• 피고인들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4445 판결)**

○ 2018노322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2019. 3. 2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이 ①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군인인 피해자(여, 21세)의 팔뚝 안쪽을 쓸어내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②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에 전동드릴 소리를 내면서 군인인 피해자(여, 21세)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약 2-3초씩 3회 전동드릴을 작동시키고, 전동드릴의 날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에 접촉시켜 전동드릴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 전동드릴의 사용시간, 접촉 부위, 접촉 정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위 전동드릴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전기드릴을 이용한 폭행행위와 이어 추행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 이외에 별도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위험한 물건 및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과 양형부당이 있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험한 물건 및 죄수 판단에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범행 당시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도 목격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① 전동드릴이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인 점, 용법에 따라 사람에게 직접 고통 또는 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전동드릴의 날을 접촉 시킨 점,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전동드릴은 객관적인 성질, 형상,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의 신체부위에 접촉시킬 경우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폭행행위와 추행행위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추행행위로서 접촉한 신체 부위가 폭행행위로서 접촉한 신체 부위와는 달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두 행위는 시기와 방법, 범행의도를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4448 판결)

○ 2018노259 사기 [2019. 4. 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브로커인 A를 통해 '세팅보험'에 대한 설명 및 제안을 듣고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B로부터 소개받은 C를 통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면, C는 B에게, B는 A에게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것으로 공모한 다음, 위 공모 내용에 따라 C가 소개한 병원으로 가,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위 허위진단서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여 7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발급1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모관계,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 및 선고형에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세팅 보험'의 공모관계, 기망행위, 고의를 인정

항소심은 ①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설명 및 제안을 듣고 보험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과 진단서 발급받은 병원이 다른 점, 수술병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C가 피고인이 A를 통하여 B와 C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어깨수술을 받게 된 때부터는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A, B, C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이 어깨 수술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C가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를 받기 전 피고인에게 어깨를 제한적으로 움직이라고 조언을 한 점, 피고인이 보험브로커인 C에게 수수료 이외의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의 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장애가 영구적 장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재진단을 받아보기를 회피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진단서를 발급 받을 당시에는 진단서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이미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③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어깨 수술 자체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단되어 진단서 발급신청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은 해치는 범죄인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때,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5184 판결)

○ 2018-31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2019. 4. 1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대령)는 기무사령부 2부 2처보안처장으로, 피고인 B(대령)는 기무사령부 2부 보안처 6과 사이버 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기무사령부의 지휘계통을 통해 순차 공모하여, ① 2011. 11. 28.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특정 정치인, 대통령 등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② 직권을 남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청와대 측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직원들로 하여금 첩보보고서 파기 지시를 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의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이라고 함) 부분 및 '②'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③'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①'의 공소사실 중 정치관여에 대한 부분을 면소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사이버 대응활동은 직원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순차적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유죄판단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군검사는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행위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공모행위이고, 그 중 정치관여행위는 포괄 일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첩보 보고서 파기 지시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지시인 동시에 자신들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무죄 및 면소 판단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일부파기(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지휘계통을 통한 사이버 대응활동 및 인터넷 방송 녹취 등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 판단

항소심은 직권남용 중 대응활동을 지시한 부분에 관하여 ① 기무사령부 직무기술서에 활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법령상 의무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일부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순차적 공동정범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지시에 의하여 직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점, ④ 피고인들이 대응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시점에는 자신이 하달하는 이슈가 정치 또는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⑤ 구체적 직무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되며, 헌법상 의무 위반 및 균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보기 어려워 유죄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부분에 관하여, 첩보철 등이 최종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로 성립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종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곧바로 공공기관의 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무죄로,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관하여, 직원들이 문서를 파기한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관여죄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정범인 직원들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실제 문서를 파기한 직원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정치관여 부분에 관하여, 정치관여죄는 즉시범에 해당하여 구 균형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각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직권남용 중 팟캐스트 녹취 및 보고를 지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개된 팟캐스트를 녹취 및 요약을 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는 행위가 기무사령부의 고유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시를 받은 직원들도 업무 범위내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기무사령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 쌍방 상고: 대법원 진행 중

○ 2018노3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9. 4. 1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A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A, B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자들에게 총 23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함)의 객체인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로 해석하여, ① 피고인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불상의 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이 사건 법조항의 '다른 사람'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2,000,000원):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

항소심은 ① 이 사건 법조항이 '다른 사람'의 의미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금지의무의 행위 주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한정하여 이 사건 법조항의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법조항의 개정유이가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인 점, 이 사건 법 조항의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조항의 '다른 사람'의 의미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개인정보'의 의미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하여 해석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자들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쌍방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확정됨

○ 2018노303 업무상과실치사 [2019. 5. 3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하사), 피고인 B(하사), 피고인 C(중사)에게는 방탄문 폐쇄 절차규정에 따라 방탄문을 폐쇄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우측 방탄문을 폐쇄한 피고인 B가 다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좌측 방탄문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위 방탄문 작동범위 내에 있던 피해자가 위 방탄문 사이에 압착되어 사망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는 각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A, B는 주의의무위반,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부존재 함에도 유죄판단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군검사는 피고인 C에게 공동의 주의의무위반,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무죄판단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쌍방 항소기각: 피고인들의 방탄문 폐쇄절차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

항소심은 ① 피고인 A, B에 관하여, 방탄문 폐쇄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에게는 방탄문 폐쇄 절차규정에 따라 감시인을 배치한 다음, 먼저 일정 간격만을 폐쇄시킨 후 방탄문 사이에 사람이거나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폐쇄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 중인 방탄문 사이에서 압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며, 피고인 A, B가 위 절차규정을 준수하였더라면 최소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② 피고인 C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우측 방탄문만을 폐쇄할 의사로 우측 방탄문 폐쇄를 지시하였을 뿐 좌측 방탄문 폐쇄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좌측 방탄문 폐쇄에 관한 피고인 C의 공동행위 및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에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우측 방탄문을 폐쇄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좌·우측 방탄문에 끼어 사망할 위험은 이미 우측 방탄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좌측 방탄문을 폐쇄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점, 피고인 C가 방탄문 폐쇄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우측 방탄문을 폐쇄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 A, B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8248 판결), 군검사 상고하지 않아, 피고인 C 항소심 확정됨

○ 2019노9 준강간(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예비적 죄명 준강제추행) [2019. 6. 13.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모텔에서 피해자(여, 21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간음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있음을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있음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년 6월): 간음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준강간 미수만 인정

항소심은 피고인, 참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의 진술 외 독자적인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삽입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출혈, 통증,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자세를 근거로 삽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삽입 시점부터 대략 7시간에서 10시간 뒤까지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가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혈액의 색만으로 성관계에 의한 출혈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믿기 힘든 점, 당시 피해자가 생리 기간 중이었던 점, 음부 부위의 통증은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기억 내지 판단은 자신의 추측이나 확신에 부합하도록 왜곡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간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준강간미수죄만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쌍방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확정됨

○ 2018노398 군인등강제추행, 특수공갈, 공갈, 강요, 폭행 [2019. 6. 2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TOD 소대장으로, 피해자들(하사)의 상급자인 바, ①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성기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하고, ②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진급, 장기 선발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갈취하고, ③ 피해자들에게 진급, 장기 선발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허위의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④ 피해자들의 복부, 팔 등을 수 회 폭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군인등 강제추행의 점은 추행행위 또는 고의가 없고, ② 공갈 및 특수공갈의 점은 해악의 고지 및 인과관계가 없고, ③ 강요의 점은 해악의 고지가 없으며, ④ 폭행의 점은 폭행행위 및 고의가 없음에도 유죄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년 6월): 상급자의 위력을 이용한 강요, 공갈 등의 범행을 엄단

항소심은 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 행위 태양,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분명히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② 특수공갈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자들이 술값 등을 대신 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갈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해액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③ 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허위의 사실은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④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본인의 위치와 계급을 이용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청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9974 판결)

○ 2019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허위보고 [2019. 6. 2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소속 부대의 대대장으로, ① 성범죄 피해를 당한 자신의 부하인 A(중사)에게 과거 사건을 언급하고, 성적 수치심과 처벌의사에 대하여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위 A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위력을 사용하고, ② A에 대한 두 차례의 성범죄 혐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중 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보고 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③ A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목격한 자신의 부하인 B(중사)에게 압박감을 주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게 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력행사, 고의가 부존재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군검사는 '②', '③' 공소사실에 관하여 '거짓보고' 및 위력행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선고형에 양형부당이 존재함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쌍방 항소기각: 성폭력 피해자인 부하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내용의 진술 등을 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한 행위는 강요에 해당**

항소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휘관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면담 후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성적 수치심과 처벌의사가 없다'고 말하여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군경력에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대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여부, 처벌의사를 묻는 것이 정당한 지휘권한 내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②'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단순한 '보고누락'의 경우도 '거짓보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죄 판단하고, '③'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A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이하 'C'라고 함)로부터 자신도 A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A와 C사이에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고, 강압적인 것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C의 부탁을 받고 A와의 합의자리를 마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자유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하여, 군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

• **쌍방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9058 판결)**

○ 2019노41 모욕 [2019. 7. 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이 흡연장에서 동기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병사)가 실외에서 슬리퍼를 신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목을 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짐승에게 쓰는 표현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것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규정위반행위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친 표현에 불과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모욕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목을 탄다."라는 발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을 탄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의 '목', '턱', '목다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활용례를 고려할 때, 짐승에게 쓰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한 것일 뿐,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군검사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0633 판결)**

○ 2019노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2019. 7. 1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으로 입시 및 평가업무 총괄 업무를 하는 자인바, ① 자기소개서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담당인 A에게 B의 자기소개서 추가로 제출 받을 것을 지시하고, A로 하여금 추가로 제출받은 B의 자기소개서를 서류평가 위원들에게 제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위 자기소개서에 대한 서류평가가 진행되게 하여, 서류평가위원들의 서류평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 각 범행 고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고의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해석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2,000,000원): 사관학교 입시담당자가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특정 지원자의 서류를 서류평가위원회에 제출시킨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

항소심은 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특정 지원자에게만 미제출 서류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방식이 아닌 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평가 자료가 되어, 평가점수 부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특정지원자에 대한 서류만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보완시켰음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서류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인원들 중 B만이 1차 시험성적 합격권에 있어 B의 자기소개서만 추가제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류평가는 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 평가위원들이 B만 추가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위원들이 B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B에게 높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가 불합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들의 평가업무 방해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관련 예규는 피고인을 선발시험 업무의 총 책임관(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서류 접수담당에 관한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입시요강에도 서류접수기관만 명시되어 있는 점, A가 당시 모집 담당자가 부재중 이어서 자신이 대신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A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군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함.

• 쌍방 상고: 대법원 진행 중

○ 2019노35 초소침범 [2019. 7. 25.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이 있는 피고인(민간인)이 초소 근무를 하고 있는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초소를 통과한 사안임

* 원심 범죄사실에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동),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초소침범의 점만 분리이송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민간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초소침범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병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음에도 유죄판단을 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민간인이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에 침범

항소심은 ① 초소침범죄에서 말하는 ‘초병을 속여서’의 의미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초병근무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에 해당 초병근무자의 부주의 내지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바, 사건 당시 초병근무자 및 조사자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초병 근무자에게 “국방부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초병을 속여 초소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초소침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날 저지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동장애 및 조증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정신감정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은 점, 피고인이 같은 날 범한 다른 죄로 체포될 당시 및 체포 이후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군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초소침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음에도 위 죄와 같은 날 공소제기 된 다른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쌍방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확정됨

○ **2018노231** 군인등강제추행[일부 변경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등에의한추행)], 무단이탈 [2019. 7. 25.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이 ① 피해자(하사, 여, 24)에게 '업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올리려 하면서 업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계곡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뒤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끌어당기고,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키를 재보자'면서 자신의 등 뒤에 피해자를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② 피고인은 병과 주관 워크숍에 참석할 의사가 있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워크숍 오후 일정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무단이탈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무죄): 추행행위 및 무단이탈의 고의 불인정**

항소심은 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상황, 범행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됨직한 정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행위들은 그 경위에 있어 자연스러운 신체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로 예상되고, 위 행위들이 각 상황에 등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신체적인 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② 무단이탈의 점에 관하여, 워크숍 참석 지시 공문을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를 부여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출장지에서 부대로 바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출장계획에 따라 워크숍에 참석한 점, 출장지에서 부대로 오는 예상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점, 이탈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대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단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군검사 상고: 대법원 진행 중**

○ **2019노24**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2019. 8. 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이 소속 중대 생활관에서, 타 중대 소속인 피해자(하사)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 허벅지 등을 10회 때려 폭행하고, ②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얼음조각을 손에 쥐고서 갑자기 있던 피해자의 가슴 양쪽 젖꼭지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③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손 곡괭이의 날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기습추행 인정**

항소심은 ① 행위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및 군 경력 차이, 행위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용인하였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더러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흥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후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범행 수단,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대 단합 및 화합의 저해를 초래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2089 판결)**

○ 2018노269 군인등강제추행[일부 인정된 및 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9. 8. 1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자로, ① 피해자와 출장을 갔다가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남자친구가 참을 수 없을거야, 다른 남자가 건드릴 때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세게 건드린다.”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 손등을 3회 만져 추행하고, ②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손금을 보자거나 지압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양 손 및 손목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함

* 군검사는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 예비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 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를,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강제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적 징표를 가지는 부위에 대한 접촉이 아니고,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3,000,000원): 손등을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성립을 부인

항소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인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내 여자’,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것임을 피해자가 이해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이성으로 보거나 성적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행위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어 전방을 주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회피가능함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할 여유 없이 피해자의 손등을 두 차례 더 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화 중에 상대방의 손을 터치한 행위가 단지 이성간의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함.

• 쌍방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2540 판결)

○ 2019노75 모욕 [2019. 8. 1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여성회원이 10명에 불과한 ○○동아리에 대한 게시글에 A가 위 동아리를 지칭하며 페미니스트 동아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쁜 여자 한명쯤 있지 않겠냐? 사귀어서 내 좆방맹이로 페미니즘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지 않냐”라는 댓글을 남겨,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를 모욕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모욕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피고인의 댓글 작성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항소심은 피고인이 페미니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의미는 피고인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무례하고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표현은 부적절하나,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함.

• 군검사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확정됨

○ 2019노107 명예훼손,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모욕 [2019. 9. 19.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이 ① 독신자 숙소에서 피해자 A(중사)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②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③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용 철봉 및 철제 아령을 이용하여 독신자 숙소 방 출입문 및 유리 베란다 출입문을 손괴하고, ④ 독신자 숙소에서 피해자 A가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오해하여, B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선배가 죽은 것이 부각되어서 장기가 된 거 아니냐. 쫓보새끼가 할 말 있으면 앞에서 얘기해라. 89년생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양형 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5,000,000원): 명예훼손 및 특수폭행의 성립을 부인

항소심은 직권으로, ‘④’ 공소사실에 관하여, 문구상 피고인의 발언을 단정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혹 또는 의문의 제기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에 의존하여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래건조대를 던진 후 경멸의 의사표시와 함께 이 부분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알루미늄 빨래건조대가 매우 가벼운 점,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맞았으나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맞출 목적으로 던진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쌍방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확정됨

○ 2019노181 강요미수, 폭행 [2019. 9. 2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피해자들의 상관인 자로, ①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피해자 A의 성기를 2~3차례 쏘시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하고, ② 소속부대 내 훈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힘껏 집어 던져 폭행하고, ③ 피해자 C의 허위보고 사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너 내가 헌병대에 넘기면 그때는 내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전출 보내버릴거다.”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의로 추가 기재한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명하지 아니하여 강요 미수에 그치고, ④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을 5차례에 걸쳐 모욕하고, ⑤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과 관련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면담을 강요한 사실임

• 원심 및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및 강요미수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은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는 위 명령을 실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징계나 헌병대 조사 의뢰 및 전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던진 장갑이 날아온 속도 및 강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요미수 및 폭행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파기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폭행 및 강요미수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상고심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1심 판결선고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2심으로 환송함

• 환송 후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2,000,000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판단을 하지 아니함

항소심은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상고심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부분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균형법 제60조의6의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분명하여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해 판단함을 밝히고,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 진행 중

○ 2019노156 강제추행 [2019. 10. 2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이 ① 피해자(대위)와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신 뒤, 위 카페 근처 길가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으로 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약 10초 정도 끼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고, ②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가서 앉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듯이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훑으며 맞은 편 자리로 이동하고, ③ 카페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후배 올 때까지 너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약 5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15초 정도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 및 ‘③’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습성 또는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원심판결에 추행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과 달리 기습추행을 인정

항소심은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짧은 시간 동안 어깨 및 머리카락을 만진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끌어안듯이 손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및 ‘③’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식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최대한 인적이 있는 밝은 곳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한 발짝 정도 거리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끼안는데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끼안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끼안은 방법으로 기습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쌍방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6014 판결)

○ 2019노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 10. 3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7급)이 적색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교차로에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황색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도로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피해자(민간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부존재 하거나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공소기각): 적색등화 점멸신호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

항소심은 피고인이 적색점멸 등화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교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보다 먼저 진입한 점, 피해자의 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경험칙에 부합하는 교차로 진입 운전자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훨씬 상회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차량이 황색점멸 등화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예상하면서 일시정지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운행 방향,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 군검사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6851 판결)

○ 2019노186 강간치상 [2019. 11. 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 이병)이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끌고 허리나 배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간행위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항거불능 정도에 이르는 폭행 내지 협박이 없었으며, 강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결과와 강간행위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징역 3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끌고 허리나 배를 누르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점, 간음 이후 피해자가 곧바로 울면서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되고,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그 치료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해서 새로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세가 더욱 중화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강간행위와 우울장애 등의 상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도우울에피소드'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2019도17428 판결)

○ 2019노192 근무기피목적상해 [2019. 11. 2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이 소속대 화장실에서 군생활에 대한 염증을 느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상해를 가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근무기피 목적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살을 하려다 중도 포기한 것이므로 근무기피 목적 또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근무기피목적상해죄의 '근무기피 목적'을 인정

항소심은 ①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선임병과 불화 및 위병조장근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 소속 부대의 다른 인원들에게 자신이 세운 구체적인 자해계획을 알리고 자신의 자해 사실을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이 자해행위 직전 자해행위 장소를 소속 부대의 다른 인원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이 화장실 대변기 칸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소속 부대의 다른 인원에게 손목을 아무리 그어도 안 죽는다는 발언을 한 점, 자해 위치 및 출혈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상처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해 행위 직후 입소한 그린캠프에서 복무의지는 없으면서도 평소와 다를 없이 운동을 하거나 웃으면서 생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전 자해 시도 후 및 해당 자해행위 이후 도움을 요청하였던 인원들에게 입단속을 하는 등 자신의 계획된 자해행위가 알려질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군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근무기피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확정됨

○ 2019노164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업무상과실치상 [2019. 12. 19.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준위)은 CH-47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 주임무조종사로,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킨 이후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제작한 기술교범에 따라 착륙 후 필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항공기의 조종간을 위 교범에 따른 조종간 중립 위치보다 2.5인치 가량 전방에 위치시키고, AFCS(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OFF 점검을 누락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항공기가 활주로에 전도되게 하여,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항공기의 날개 파손, 유조차 등 군용물을 손괴함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항공기 착륙 후 필수점검 사항을 누락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무죄판단을 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항공기 전도 사고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항소심은 항공기 내 조종사석 녹화파일에 대한 감정축탁 회신문에 해상도 부족 및 낮은 조도를 이유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참고인이 이 사건 항공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사건 당시 비행 후 조정간의 위치가 중립간에서 2.5인치 앞에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조정간의 위치가 2인치나 3인치 이내에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추가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이상 항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뒷바퀴가 들리는 것은 양력증가와 관련된 부분이지 AFCS의 ON 또는 OFF 상태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고원인 감정 축탁 회신서에 조정간이 중립위치보다 2.5인치 전방에 위치하고, AFCS가 ON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항공기 상태나 외부환경 요인 등 조건에 따라 항공기 후방이 부양하거나 기수가 좌측으로 회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이 사건 항공기 기체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기의 중립위치보다 2.5인치 가량 전방에 위치시켰다거나, 이로 인하여 항공기의 후방이 부양하여 전도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함.

• 군검사 상고: 대법원 진행 중

○ 2019노261 폭행 [2019. 12. 2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령)이 미군 군사기지 내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상병)가 피고인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려 폭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미군기지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공소기각):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항소심은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함)은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외국군의 기지를 위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사시설보호법의 입법목적, 법 규정 간 체계 및 법률 문언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군의 군사기지 등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정의하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의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1심 판결 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 군검사 상고: 대법원 진행 중

○ 2019노183 공무집행방해 [2019. 12. 2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부축을 받으며 파출소에 들어오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 및 근무복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피고인을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데려간 경찰관에 대해 저항한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다른 경찰관을 대상으로 침을 뱉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찰관의 상황근무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보호조치로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가려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방위위사가 있는 방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후 술이 깨고 나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④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공무집행의 장애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 상고: 대법원 진행 중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2019고15 초소침범, 군용물손괴 [2019. 10. 1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초소침범]

피고인(예비역 소령)은 2019. 4. 4. 13:24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문서고 관리대 앞 부근에서 허○○, 강○○, 임○○가 탑승하고 있던 군용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하여 동사령부 남문 위병소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병장 전○○가 검문을 하며 위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간부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자신은 육군 헌병 수사임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가지고 있던 검은색 '육군헌병 수사관' 배지를 전○○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전○○가 피고인이 탑승한 동 자동차가 동 위병소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여 초소를 침범함

[군용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5. 04:2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미결수용실 내 진정·보호실에서 벽에 설치되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고무스펀지를 손으로 뜯고, 바닥에 설치되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양변기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부수고 동 양변기와 연결되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수도관을 부수고, 이로 인하여 솟아오른 물로 천장에 설치되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천장 텍스 일부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체포된 상태인 피고인(헌병 장교)이 초병에게 '육군 헌병 수사관' 배지를 보여주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한 행위가 초병을 기망한 행위인지 여부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불상의 경위로 수사관 코트를 착용하였고, '육군 헌병 수사관' 배지는 이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차량에 동승하는 과정에서 탑승자들을 속인 후, 위병소에 이르러서도 초병에게 '육군헌병 수사관' 배지를 제시하며 "빨리 빨리"라고 외친 점, ③ 피고인의 복장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초병은 피고인이 부대 내의 헌병 특임대원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을 통과시켜 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해당 부대의 수사관 코트를 입은 채 '육군 헌병 수사관' 배지를 제시하며 "빨리, 빨리"라고 소리침으로써 초병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인 피고인이 출입증을 휴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문 위병소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를 통과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쌍방 항소: 고등군사법원 진행 중

○ 2019고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12. 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00:40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하팔당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 02:1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팔당삼거리로 진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서 주행하던 차가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박○○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박○○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윤○○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박○○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승자인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그 동승자인 진○○, 전○○, 김○○에게 각 약 2주, 3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① 피고인의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차선침범, 급정차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 박○○ 등에게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상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쫓아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③ 피해자 박○○과 윤○○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을 만나보니 눈이 풀려 있었고,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평지의 직선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운행에 장애가 될 만한 외부적인 요소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박○○의 승용차는 예상수리비가 승용차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에 이른 점, ⑦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운전능력이 정상에 비해 떨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 쌍방 항소: 고등군사법원 진행 중

○ **2018고37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9. 12. 2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공동범행: 허위공문서행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17.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위수령·계엄에 관한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이하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를 작성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면서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을 연구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계엄검토 업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인 '미래 방첩 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 계획'(이하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을 작성하여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를 첨부한 뒤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행사함

[피고인 기○○: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피고인 기○○은 2017. 3. 6.경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이 훈련 기간 중 생산 및 접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위장하기 위하여 제목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변경한 후 2017. 3. 하순 및 2017. 5. 초순경 2차례에 걸쳐 전○○에게 훈련비밀로 생산할 것을 지시하였고, 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3.경 백○○에게 훈련비밀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서류 구비를 지시하여 2017. 5. 10.경 백○○이 기안한 계엄검토 문건을 17KR 연습에서 훈련비밀로 생산하는 내용의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 2건(이하 '이 사건 각 훈련비밀 생산 전자문서')을 각 결재함으로써 피고인은 각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도록 교사함

[피고인 전○○: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전○○은 기○○의 지시에 따라 2017. 5. 10. 백○○이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KR연습에서 훈련비밀로 생산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이 사건 각 훈련비밀 생산 전자문서를 결재하여 각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들이 특근매식비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함에 있어 공전자기록등위작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는 실제 TF기간 중 피고인 전○○이 이에 관하여 결과물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②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TF명을 가명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거나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가 허위의 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① 당시 피고인 전○○이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TF에 참가 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을 연구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당시 TF에 투입된 국방보안연구소 3실장, 613부대 3과장은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위해 투입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의 분량, 작성 방법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위해 11명이 약 14일가량 참여하는 TF 구성은 불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미래 방첩 업무 발전 연구' 등에 관한 업무 계획은 허위의 것이라고 판단함.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가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우선 구 군사보안업무 훈령상 가제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TF명을 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 구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22조는 비밀생산과 관련된 조항인 점,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에서는 '한시조직의 명칭을 업무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간결한 명사형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TF의 명칭을 가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업무상 정당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당시 보안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가제목과 예산내역만을 기재하여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승인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와 같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소 과잉한 행위인 것으로 보여 업무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다만, ① 당시 TF 참여자의 진술, 기무사령부에서 매년 훈련 때마다 계엄을 검토한 점,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 작성이 당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엄검토 업무를 위법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22조는 비밀생산에 관하여 가제목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당시 TF 사람들은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군사 2급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기무사령부에서는 보안을 요하는 업무에 관하여 가명칭을 사용하는 업무상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가제목이나 가명칭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가제목과 가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방법상 제한을 둔 규정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⑤ 당시 TF의 특근매식비를 위하여 신청된 예산이 실제 이 사건 TF의 야근과 휴일근무를 위한 특근매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당시 보안을 위하여 TF명을 가명칭으로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TF 구성원 이외의 기무사령부원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업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착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다음으로 피고인 기○○의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기○○은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의 제목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위장할 의사 역시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우선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의 제목변경은 2017. 3. 6. 작전조직과장 김○○의 부탁으로 KR연습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한 백○○의 메모를 살펴보면 피고인 기○○이 지시한 내용인 몇몇 순번 자료를 제외하라는 부분의 필기구와 제목변경에 관한 부분의 필기구가 다른 점, 백○○은 권○○로부터 직접적으로 제목변경 지시를 받은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기○○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 기○○에게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위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 피고인 기○○은 처음부터 훈련에 활용할 의사로 기무사령관에게 훈련비밀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은 후 이와 같은 지시를 전○○등에게 하였고, ㉡ 피고인 기○○이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 작성업무를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 기○○이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하도록 지시할 당시 실제 훈련에 활용한 후 훈련기간 중 훈련비밀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기○○에게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위장할 의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함.

나아가 ③ 피고인 기○○이 훈련비밀로 생산하도록 지시한 것이 구체적으로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위를 의도한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피고인 기○○은 전○○에게 단지 훈련비밀로 생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지, 어느 시기의 훈련에 어떤 방법으로 비밀을 생산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백○○ 역시 전○○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훈련에 관한 내용을 들은 것이 없어 임의로 '17년 KR연습'을 근거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기○○의 훈련비밀로 생산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백○○이 어떻게 행위하였는지에 따라 피고인 기○○의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기○○이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를 의도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교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마지막으로 피고인 전○○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에 대하여 피고인 전○○은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할 동기가 없었고, 훈련기간이 아닌 때에도 훈련비밀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훈련비밀 생산 전자문서를 결재하였을 뿐 허위의 내용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① 우선 TF 종료 즈음하여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의 처리에 관해 피고인 전○○은 보존을 주장하였던 점,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의 제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전○○이 참여한 점이 전혀 없는 점, 은폐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기안하고 결재하였다는 사정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2018. 7. 16.경 피고인 전○○이 이 사건 USB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전○○에게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 은폐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다음으로 피고인 전○○이 백○○에게 17년 KR연습을 근거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방첩정보기획담당 전○○ 등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훈련기간 중 생산한 비밀만이 훈련비밀로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훈련비밀 생산 전자문서를 기안한 백○○는 자신이 군사보안업무훈련 등을 찾아보지 않고 기안한 점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전○○이 이 사건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이 사건 각 훈련비밀 생산 전자문서를 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전자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의도하였다거나 사무를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

• **군검사 항소: 고등군사법원 진행 중**

□ 육군 군사법원

○ 제2작전사령부 2018고142 사기 [2019. 5. 1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경 피해자 현대저축 은행에 전화로 3,5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해자 은행과 이율 27.5%, 상환기간 60개월로 하는 3,500만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다른 3개 은행에 대출을 각각 신청(총 4,900만원)하여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① 쟁점

- 대출 계약 시 동시대출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기망행위(동시대출 미고지)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 여부

② 판단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위한 전화 심사 당시 동시대출 확인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 동시대출에 대한 확인 및 경고를 반복적으로 하였음. 이와 같은 확인 및 경고의 취지가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이 부담할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여러 회사로부터 4,900만원을 대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을 현저히 감액하였을 것이라고 보임.

- 기망에 의한 착오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동시대출사실 전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여 기망과 착오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님. 그러므로 피해자 은행이 NICE 지키미 또는 올크레딧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시대출 여부를 보다 빨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조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 해군 군사법원

○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고1 직무수행군인등협박 등 [2019. 1. 2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 위치한 해병대 6여단 본부 정문위병소에서 피해자 상병 홍○○(20세)과 위병소 주간 3직(12:30~15:30) 근무를 서던 중, 장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포탄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포탄은 남에게 임의로 양도가 불가합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날 가르치냐? 기합이 빠져서 물어본다. 안주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위병소 근무의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1심의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의 공소장 기재사실 만으로는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안주면 뒤진다’는 표현 역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그 표현이 추상적이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협박죄에서 협박은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참조하여 아직 군대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적결되지 않은 현실 하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병소에서 공포탄을 달라는 선임병의 지시를 후임병이 거절하자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니가 날 가르치냐? 기합이 빠져서 물어본다. 안주면 뒤진다.”라고 표현한 경우 선임병으로서는 후임병이 말을 듣지 않아 기분이 상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후임병으로서는 선임병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가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추상적이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한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

○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9. 1. 1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심의 판단: 무죄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신호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①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사고 직전 피해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정이 인정됨. 그렇다면 일시정지 하지 않은 신호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방향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로서는 안전에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고, 피해차량은 진행방향 교차로 도착 직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에 의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군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 주행한 시간이 약 2.74초라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과학적 검증에 의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일시정지하고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행시간이 매우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0 도주치사방조, 사고후미조치 방조 [2019. 6. 1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은 상피고인 이○○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권○○ 및 권○○의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을 때 “그냥 가보자 그냥 가”라고 말하며 사고현장 이탈을 권유하여 피고인 이○○의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방조하였다.

• 1심의 판단: 무죄

쟁점 :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가 상태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종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기수가 된 이후에는 행위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기수 이후의 모든 행위를 작위·부작위에 의한 ‘도주’, 또는 ‘조치하지 않는 행위’로 법적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상태범에 해당하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중범의 성립이 불가능함. 그리하여 ① 피고인 김○○은 사고가 난 직후에 사람을 쳤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을 뿐, 피고인 이○○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기 전까지 도주하자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가 위와 같이 사람을 쳤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는 도중에도 사고가 발생한 영산강하국도 위 도로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속도를 높이기도 한 점, ③ 피고인 이○○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1분이 넘도록 계속 진행한 후 우회전하여 총 길이 4.3km가량 되는 영산강하국도 위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점, ④ 피고인 김○○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그냥 가보자 그냥 가”라고 말한 시점은 사고 발생 후 8분 이상이 지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함.

○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17 사기 [2019. 12. 23.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자이고, 심○○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김○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이들은 2018.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심○○, 김○과 공모하여 2018. 7. 18.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김○○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우체국에 반환되어왔다. 명의를 도용된 것 같다. 금산경찰서 초과장에게 신용카드를 보낼테니까 그 사람이 잘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산경찰서 초과장입니다. 통장에서 2,000만원을 인출한 후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사를 집으로 보낼테니 2,000만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심○○은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거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과 김○에게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김○은 같은 날 15:55경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2길 3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마을입구 길목에서 망을 보고, 김○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산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돈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심○○,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1심의 판단: 무죄

쟁점: 피고인은 당시 심○○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를 통한 피해금원을 받아 오는 일이라는 점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던 김○도 심○○이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심○○도 직접적으로 보이스 피싱 관련 내용은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일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미천한 피고인이 단순히 거액을 수령하고 이에 기해 수고비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라는 점까지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김○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총책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비로소 경찰관 행세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 피고인은 김○이 경찰관 행세를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막연히 보이스 피싱 사기의 주모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생각을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 공군 군사법원

○ 기동정찰사령부 2019고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2019. 6. 1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하사)는 민간인 최○○, 문○○, 이○○과 고등학교 친구로 2019. 3. 2. 05:50경 피고인은 최○○, 이○○과 함께 '건대 ○○○ 클럽' 인근에서 '건대 ○○○ 클럽'에서 피해자(여, 21세)를 데리고 나와 있던 문○○로부터 "저기 옆쪽 빌라에 여자(피해자)를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 안내를 받아 최○○, 문○○, 이○○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건물 계단에 도착했다. 최○○이 계단에 만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과 문○○, 이○○에게 "애 만져도 모를 걸"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자 이에 욕정을 느낀 피고인이 동조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은 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넣고 약 2~3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에 대한 특수준강제추행의 공모 및 합동관계의 성립 여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과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공모, 즉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피고인은 친구들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강제추행할 의사가 상통하고, 서로가 이미 추행 및 강간한 이상 피고인 및 최○○, 문○○, 이○○ 사이에 공모 및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 법률

- 군사법원법(2018. 12. 18. 일부 개정)
- 군형법(2016. 5. 29. 타법개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1. 6.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7. 12. 12. 일부개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8. 12. 24. 일부개정)
-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7. 9. 5. 타법개정)
- 군검찰사무 운영 규정(2019. 7. 2. 일부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1. 26. 일부개정)
- 군법무관 임용법 시행령(2014. 11. 19. 타법개정)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2017. 7. 26.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2019. 8. 6. 일부개정)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2017. 3. 27. 제정)

□ 대법원규칙

- 군사법원 사무규칙(2013. 12. 10. 전부개정)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2013. 12. 10. 일부개정)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4. 9. 1. 제정)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2014. 9. 1. 개정)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2010. 6. 30. 제정)

□ 국방부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2012. 11. 9. 일부개정)
- 군검찰 사건사무 규칙(2017. 3. 27. 일부개정)
- 군검찰 보존사무 규칙(2009. 10. 5. 제정)
- 군검찰 압수물사무 규칙(2017. 8. 1. 타법개정)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 규칙(2010. 2. 17. 제정)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8. 6. 일부개정)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2018. 1. 22. 타법개정)

□ 국방부 훈령(법원)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2008. 10. 21. 제정)
-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2009. 8. 14. 제정)
-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군판사·검찰관·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2015. 6. 5. 일부개정)
- 법원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훈령(2016. 3. 4. 제정)
-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2019. 12. 19.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예규

- 고등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군사보안업무 예규(2019. 9. 10.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8. 4. 25.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행정사무 예규(2019. 7. 10.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운영 예규(2019. 7. 10.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위기조치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군판사의 면담 등에 관한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공보업무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2016. 12. 2. 제정)
- 고등군사법원 동원소요 심의위원회 운영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육군 규정 등

- 규정: 육규181 재판사무 규정(2019. 9. 1. 부분개정)
- 예규
 -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9. 4. 17.)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9. 4. 17.)
- 지침·지침서: 국선변호인 선정 및 감독에 관한 지침(2008년)

□ 해군 규정 등

- 규정: 해규15-0-1-01 해군 군사법원 규정(2018. 8. 24. 전부개정)
- 지침·지침서
 - 군사법원실무
 - 군사법원 업무처리 지시서

□ 공군 규정 등

- 규정: 공규10-02 군사법원 운영규정(2017. 7. 7. 일부개정)
- 예규
 -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업무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군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18. 2. 20.)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관할관 확인조치 업무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즉결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 정본 등의 간인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에 기재할 성범죄 피해자 성명의 익명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구속의 통지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공판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전시 군사법원 운영 예규(2019. 5. 1.)
 - 법원정보체계 입력 및 활용 매뉴얼(2019. 6. 1.)
 - 조서작성 편의 등을 위한 속기·녹음 고지 및 공판조서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2019. 9. 10.)



2019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 법령



2019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법률 제15166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아닌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형법」 상 공무원상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2017. 12. 12. (2017. 12. 12.)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018. 12. 11. (2019. 6. 12.)
법률 제15974호	변호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2018. 12. 18. (2018. 12. 18.)
법률 제16037호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 퍼센트에서 0.03 퍼센트로 강화함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18. 12. 24. (2019. 6. 25.)
대통령령 제29400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의 「작전사령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 및 4부의 소재지를 각각 종전의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제6군단사령부에서 제2군단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제6군단사령부로 변경함 	2018. 12. 24. (2019. 1. 1.)
법률 제1644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2019. 8. 20. (2019. 8. 20.)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대통령령 제30213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장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만 군미결 수용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일부 부대의 지휘관이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에도 군미결수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019. 11. 26. (2019. 12. 1.)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함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등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산정방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록기간의 산정방법이 통일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 	2019. 11. 26. (2020. 5. 27.)
법률 제167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併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2019. 12. 3. (2019. 12. 3.)
법률 제16830호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2019. 12. 24.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019. 12. 24. (2020. 3. 25.)
법률 제16850호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 	2019. 12. 31. (2019. 12. 31.)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p>법률 제16849호</p>	<p>통신비밀보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 및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 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함 	<p>2019. 12. 31. (2019. 12. 31.)</p>
<p>법률 제16852호</p>	<p>병역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면서,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p>2019. 12. 31. (2020. 1. 1.)</p>

2019 군사법원 연감

발행일 2020년 4월 27일

발행처 고등군사법원 1육·해·공군 군사법원

인 쇄 국군인쇄창 재경지원반 M200440290



신고유형
불간행/테러범, 보안사고(위반)
외국(대)·발상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상금내역
국법상·민법: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본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t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